

#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 포럼

Forum on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y  
Displaced to Japan During Occupation or War

일 시 : 2007년 4월 27일 9:30 ~ 17:3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

# 회의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 ):30	◦ 등록	
09:30~10:00	◦ 개회식 · 개회사: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 축 사: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	사회: 김귀배 문화팀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00~12:00	<b>[발표 및 토론]</b> · 발표 1: <b>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동향</b> - 아미레스와르 갈라 (호주 퀸즈랜드대 박물관학 교수) · 발표 2: <b>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b> - 조부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무국장) · 토론 1: 성재호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2: 서헌제 (중앙대 법학연구소 소장)	사회: 앤드류 호밧 교수 (일본 게이자이대)
12:00~13:30	◦ 오 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3:30~15:30	<b>[발표 및 토론]</b> · 발표 3: <b>일본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b> - 하야시 요꼬 (일본 소비자대 예술경영학부 교수) · 발표 4: <b>조선왕조실록 환수 과정을 통해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b> - 혜문스님 (전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간사) · 토론 3: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 토론 4: 이광표 (동아일보 기자)	사회: 이근관 교수 (서울대 법학부)
15:30~15:50	◦ 휴 식	
15:50~17:30	<b>[발표 및 종합토론]</b> · 발표 5: <b>한국문화재 반환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대안</b> - 앤드류 호밧 (일본 게이자이대 교수) · <b>종합토론</b> · 토론 5: 채수희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계속
17:30	◦ 폐 회	

# Programme

## Forum on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y Displaced to Japan During Occupation or War

27 April 2007, Seoul, Republic of Korea

### Thursday, 26 April

- Arrival of Participants

### Friday, 27 April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09:50 **OPENING CEREMONY**

- Opening Address by Dr. Samuel LEE,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 Opening Address by Mr. YOU Hong-June,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 Congratulatory Remarks by Mr. KIM Won-wung, Chairman,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gratulatory Remarks by Dr. KIM Hongnam, Director, National Museum of Korea

09:50 – 10:00 Group Photo and Break

#### **PRESENTATION & DISCUSSION**

10:00 – 10:40 **Presentation 1.**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International Grounds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Displaced During Occupation or War"  
Prof. Amareswar Galla, Museum Studie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Vice President, Executive Council & Chairperson, Cross Cultural Taskforc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10:40 – 11:20 **Presentation 2.** "Reflections on the Limitations of and Overcoming Measures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1965"  
Dr. CHO Boo Keun, Executive Director, Korea Publishing Foundation

11:20 – 12:00 **Discussion**  
Prof. SUNG Jae-ho,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Dr. SUH Hun-je, Director, The Legal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12:00 – 13:30 Welcoming Luncheon hosted by Secretary-General of KNCU

13:30 – 14:20 **Presentation 3.** "The Issue of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rts Management"  
Prof. Yoko Hayashi, Graduate Program of Arts Management, Shobi University, Japan, President, Artwoods Co.Ltd.

14:20 – 14:50 **Presentation 4.**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Negotiations at the Civil Level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Cas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Rev. Hyemoon, Bongseonsa Temple, Former Executive Officer, Committee for the Restitution of Joseon Wangjo Sillok

- 14:50 – 15:30 **Discussion**  
Prof. CHUNG Woo-taek, Arts History, Dongguk University  
Mr. LEE Gwang-pyo, Staff Reporter, Donga-Ilbo
- 15:30 – 15:50 Break
- 15:50 – 16:30 **Presentation 5.** "Tainted Treasures - Korean Art and Cultural Objects in Japan: Opportunities for New Thinking and Pragmatic Solutions"  
Prof. Andrew Horvat, Economics, Tokyo Geizai University, Japan
- 16:30 – 17:30 **General Discussion**  
Ms. CHAE Soohee,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CHA
- 17:30 Closing

**Saturday, 28 April 2007**

Departure of Participants

# 차 례 Contents

## 발표문 / Presentations

- [발표]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동향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International Grounds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Displaced During Occupation or War"  
— 아마레스와르 갈라 Amareswar Galla ..... 7
- [발표] 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Reflections on the Limitations of and Overcoming Measures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1965"  
— 조부근 CHO Boo Keun ..... 28
- [발표] 일본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The Issue of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rts Managements"  
— 하야시 요코 Yoko Hayashi ..... 41
- [발표] 조선왕조실록 환수 사례를 통해서 본 민간 차원의 문화재 반환협상의 과제와 대응방안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Negotiations at the Civil Level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Case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 혜문스님 Rev. Hyemoon ..... 77
- [발표] 한국문화재 반환 및 교류증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대안  
"Tainted Treasures- Korean Arts and Cultural Objects in Japan: New Thinking and Pragmatic Solutions"  
— 앤드류 호밋 Andrew Horvat ..... 103

## 토론문 / Discussions

- [토론] 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 서헌제 SUH Hun-je ..... 121
- [토론] 일본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정우택 CHUNG Woo-taek ..... 125
- [토론] 조선왕조실록 환수 사례 - 이광표 LEE Gwang-pyo ..... 129

## 부록 / Appendices

- 문화재 반환 관련 유네스코 협약 UNESCO Conventions Related to Return of Cultural Property ..... 133
- 참가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 169

[Presentation]

## 불법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 동향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International  
Grounds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Displaced During  
Occupation or War

•

아마레스와르 갈라

Amareswar Galla

호주 퀸즈랜드 대 박물관학 교수

Professor, Museum Studie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한일문화재 전쟁 및 강점 시 약탈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적 발전 및 미래 전망

### 반환, 상환, 그리고 화해 (Return, Restitution and Reconciliation)

존경하는 참가자 및 전문가 여러분,

이와 같이 뜻 깊은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과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총장님께서 지난 2월 제가 근무하는 퀸즈랜드 대학교에 잠시 방문하셨을 때, 지난주에 개최된 파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총장님을 만나게 되어 올해에만 모두 다른 대륙에서 3번째 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호주 퀸즈랜드 대학이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 국가, 지역, 국제 차원에서 정부간 기구와 전문단체 그리고 주요 해당 공동체들에게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오늘의 담론은 유산을 보존하고 설명하며 해석하는데 있어서 진정한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식민통치와 탈 식민통치 상태의 유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는 목록화 작업, 소장품과 유산 지역 관리, 유산의 해석과 관람객 개발에 중점적이었던 종래의 태도를 벗어나고, 이에 별도의 의미를 더하여 발전시켜 왔다. 전문적인 보호관리 노력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보다 자유로이 이뤄지게 되었으나, 문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의미 있는 연대와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는 수단 개발에 있다.

현재, 문헌이나 기록 자료에 대한 까다로운 접근 절차로 인해 많은 이들의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신속히 세계화가 이뤄지는 탈식민지 환경에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문화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문화적 교화(cultural reclamation)라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알파벳 "R"로 구성되는 몇 가지 원칙들을 다루게 된다. 반환(Return) 상환(Restitution) 송환(Repatriation) 화해 (Reconciliation)가 그것이다. 참고로, 이 원고가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률적인 관점이나 한-일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은 아니다. 본인은 지난 5년 간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활용에 중점을 두고 아태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한 여러 회의에서 사회를 진행하였다. 이들 회의에서 본인은 문화유산과 지역의 탈 식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관계 발전과 함께 문화적 민주주의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9.11 테러사건 이후 2001년 11월 2일 에 유네스코 총회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선언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고이치로 마쓰우라(Koichiro Matsu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현 국제상황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유네스코 제 31차 총회를 소집하여 문화간 대화가 평화를 향한 최상의 보장책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하고, 문화 및 문명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사고를

단언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을 오늘 표결을 통해 채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자연 분야에서 종 다양성(bio-diversity)이 인류에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윤리적 책무이자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인류 공통의 유산"의 반열에 문화다양성을 올려 놓는 계기로서, 최초로 국제사회가 포괄적인 국제규약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이제 유네스코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주창하는 새로운 윤리의 기본 텍스트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것이 언젠가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문화간 대화의 바람직한 성과인 화해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제규약 안에서 반환, 상환, 송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54년 헤이그 협약(the 1954 Hague Convention) 이후, 우리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여러 국제협약이 성안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대중의 인식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들 협약과 그것의 중요 목적에 대한 사회화(socialisation)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유산의 중요성 평가에 기초한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른 문화 간 이해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세계 전역에서 민간인들의 분쟁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반환 내지 상환에 대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문화유산을 원산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문화유산은 그 것이 만들어진 지역 주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는 문화재를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유산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여러 개의 관련 협약이 개발되어 국제차원에서 채택되었다.

1. 일명, 1954년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f 1954)이라 불리는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its Protocol.)'
2. 일명, 1970년 불법 문화재거래 협약(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Illicit Traffic)으로 불리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 수입, 수출, 소유권 이전 방지 수단에 관한 협약(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3. 세계유산협약(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으로 알려져 있는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 도난 및 불법 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Unidroit협약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Objects (1995)>.

5. 2001년 수중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The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그러나, 1970년 유네스코 협약과 UNIDROIT협약으로, 문화재 반환을 청구하는 모든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몇몇 경우에는, 약탈문화재의 반환과 회복에 대한 문제들이 "불법 전유(專有)의 경우 동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 또는 상환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and other Remedies" 혹은 다른 구제책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례를 검토하면서, 프로트(Prott) 교수와 오키프(O'Keefe) 교수가 몇가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가들이 문화재 반환을 위해 개입하는 경우는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식민통치 기간에 지방 주민이 약탈을 방지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문화재 약탈이 이뤄진 사례
2. 1970년 또는 1995년 협약에 해당하지만, 소급되지 않고 이들 규약 보다 선행되었던 사례
3. 이들 규약에 해당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례
4. 비록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의 가망이 없거나 혼란스럽지만 국가가 정의 구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

최근에 가장 명백한 두 가지의 사례는 2차 대전 중이거나 그 직후에 약탈된 인간의 유골과 문화재와 관계된 것이었다. 토착민의 문화재나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문화재의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 사례는 위의 두 교수가 그들의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 원용하는 사례들이다:

한국의 기록물 외규장각 도서(The Korean Archives- Oe-kyujunggak Books)

외규장각은 고대 왕실의 정책과 의전에 관한 문서와 기록물을 포함하는 귀중한 필사본과 문화 예술품을 위한 안전한 보관소로서 한국의 왕실도서관(규장각)의 분소로서 18세기 후반에 강화도에 설치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에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천주교 전도가 왕성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봉자들을 극형에 처했다. 이러한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의 전도활동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발각되어 1866년에는 9명의 프랑스 신부가 처형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해군은 강화도를 공격하고 외규장각을 파괴하고 은과 외규장각의 귀중한 책자와 필사본 등을 약탈했으며 6천여 권의 책자와 건물들을 불태워 없앴다. 고의적인 문화재 파괴로 인해 100여년 이 넘도록 외규장각 기록물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연히 잊혀졌던 170여 점의 약탈기록물이 한 한국 학자에 의해 프랑스국립박물관에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들 기록물이 국가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정부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1년 프랑스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구 임대와 교환(loan in perpetuity and exchange)"을 제안한 반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한국 정부가 동일 가치의 문화재로 교환해 줄 것과 외규장각에 대한 프랑스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프랑스의 무력침략 기간 중에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기록물의 반환은 정당한 것이라고 한국은 판단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15년

간의 외교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불법 전유(專有)의 경우 동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 또는 상환 촉진 유네스코정부간위원회에 제소되어 지지 않았다. (1970 또는 1995년 협약이 실효적이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들 협약 가입국이 아닌 사례)

### 프라삿 힌 카오 판놈 룡(Prasat Hin Khao Phanom Rung)의 프라 나라이 (Phra Narai) 상인방 돌(lintel) (태국)

1970년 문화재반환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태국이 자국의 지정 기념물 지역에서 약탈된 조각된 상인방돌(lintel)의 반환을 요청한 사건이다. 이 돌이 시카고 예술박물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발견되었고, 이 연구소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다른 문화재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태국이 동 사건을 관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1980년대 까지 태국 정부와 박물관 사이의 이뤄진 협상과정에서 동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태국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미국인 학자의 노력으로, 미국 재단(a United States Foundation)이 다른 태국 문화재를 박물관 측에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이 상인방 돌을 태국에 반환할 수 있었다.

### 이란(Iran) v. 울프케리어스( Wolfcarius) 여사

이 사건의 당사국 중 이란은 1970년 유네스코협약 가입국이었으나 벨기에는 아니었다. 울프케리어스(Wolfcarius) 여사는 수년간 이란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귀중한 도자기 소장품을 수집하였다. 1965년에, 그것들이 이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교행낭에 실려 세관 검색 없이 이란을 빠져 나갔고, 1971년 연구 목적에서 개최된 겐트 대학(University of Ghent)의 벨기에 컬렉션(a Belgian collection)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울프케리어스 여사는 이란의 반환 요구를 두려워하여 도자기류를 회수하려 했다. 두 해 동안의 정부간 협의가 있는 후에, 1981년 이란 정부는 벨기에 사법체제 내에서 도자기류의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다. 주재국의 법률을 위반한 벨기에 외교관의 행위는 국제 소송이나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란은 그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 유물들은 소송기간 중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당시의 위치에 보관되도록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다. 이란 정부도 불법적으로 수출된 유물을 밀수나 몰수의 개념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란은 울프케리어스 여사가 소유자라는 점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것들을 자국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적 해결책이 고갈될 때까지 위원회가 처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에 어떠한 진전사항도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다.

### 제 2차 대전 중 약탈된 예술작품 (Artworks looted during World War II)

제 2차 대전 직후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예술작품의 약탈이 폭 넓게 이뤄졌고 이것이 오늘날 문화재 반환문제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의 주요 유대인 소장품을 빼앗았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소장품도 탈취 당했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나치의 손에 죽어 간 유대인들의 다른 물품도 모두 빼앗겼던 것이다.

이러한 예술품들이 거래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연합국들도 예술품 약탈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종전 후에 이렇듯 약탈된 예술품들을 회수하기 위해 런던 선언(the Declaration of London)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나치만이 약탈을 자행한 유일한 세력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점령지역에서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그 후 연합국이 전범국들이 점령했던 지역에 진입했을 때에 더 많은 약탈이 이뤄졌다. 소비에트 연방은 독일군이 파괴했던 것을 보상받기 위해 독일 내 예술품을 강탈하는 특별팀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문화재 약탈도 있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미군의 문화재 약탈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진 사례가 있다. 연합국 종사자들에 의해 값싸게 거래된 예술품이 도난품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전쟁 말기에 독일은 유럽의 여러 나라로부터 약탈된 예술품 창고와도 같았다. 미국과 유럽 내 연합국이 공동으로 기념물, 미술품, 기록물 부서(The 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Unit, MFAA)를 설치하고, 전시 강점으로 고통을 입은 국가들의 흩어진 유산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이는 연합국이 나치 정책으로 발생했던 문화재 약탈에 대해 진지하게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약탈 문화재가 수집되어 그것들의 원산지 국가에 배분되었지만 몇몇 사례에서 개인 소장품의 경우 개인 소유자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립박물관에 문화재를 보관하기도 하였지만, 8,422점의 회화, 조각, 가구 등은 창고에 넣어 두었다. 프랑스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이 매각된 후, 2,058점이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었다.

연합국이 약탈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전후 복구와 그 후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냉전시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작업에 대한 점차 흥미를 잃어 갔다. 문화재 반환 청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들이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반환 청구 사례가 일어났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중의 의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제 2차 대전 당시에 예술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박물관 큐레이터와 수집가 세대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더욱이, 어떤 약탈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종래의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 2차 대전 시 예술품과 관련되어 벌어진 일들에 관한 정보 기록이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예를 들면, 1991년에는 대다수가 종전 시에 파괴되었다고 믿었던 엄청난 분량의 예술품이 소비에트의 승리군단의 약탈로 인해 모스크바와 세인트 피터스버그(St. Petersburg)의 보관소에 있다는 것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자국의 문화재를 찾으려는 당사국들에 의해서 정부를 통한 반환청구가 이어졌지만, 유럽과 미국 등의 대중 인식이 제고되면서, 이들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술품 상환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특히 약탈을 겪은 연로한 생존자들과 유대인학살의 희생자 가족들이

그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의 출현으로 약탈 문화재를 확인하고 추적하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유네스코는 문화재 반환을 청구하려는 국가들에게 유네스코가 관련 지원을 계획하고 관련 정부 간 위원회에서 국가간의 분쟁을 다룰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해당 국가들 모두가 우선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1995년 까지 그들의 양자간 협상에 별 진전이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분쟁해결을 위해 일정한 원칙을 세워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반환 문제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강력한 압력과 홍보가 이뤄진 후에서야, 1966년도에 오스트리아 정부의 경우, 마우에르바흐(Mauerbach)에 남아 있던 약탈 예술품들을 경매하여 1,440만불의 기금을 조성으로 유대인학살의 생존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문화예술부 장관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 박물관과 주 소장품들에 관한 출처를 조사케 하였다. 아울러, 오스트리아는 연방재무부 장관이 원 소유자들과 사망한 소유자들의 후손들에게 예술품들을 돌려주는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25년 간 국가단독 소유의 경우 문화재의 자발적 이양에 관한 기념물 보호법과 및 문화재 수출 통제법률(the Monument Protection Act on voluntary transfer of objects in the sole ownership of the State and the export control legislation) 규정들에 우선하여 적용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인터넷에 올렸다. 몇몇 문화재는 원소유주 확인이 되어 반환이 이뤄졌으며, 1997년에는 마테올리 위원회(The Mattéoli Commission)가 설치되어 반환에 관한 모든 문제를 조사하였다. 관련 보고서는 2000년 7월에 배포되었으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9년 9월 10일 에 문화재 회복 청구문제를 다루는 배상위원회를 설치하는 포고령이 발동하였다.

영국의 경우, 1988년에 국립박물관장 회의에서 "유대인학살과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약탈된 예술품에 대한 원칙과 권고 조치에 관한 성명서(a Statement of Principles and Proposed Actions on Spoliation of Works of Art during the Holocaust Era and World War II Period)"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박물관과 전시관, 도서관 등에서 1933-1945년 사이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수집된 소장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2000년 2월에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었다. 동 시기에 국립박물관들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350여 점의 문화재가 확인되었고 출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더 많았다. 1999년 4월, 박물관 및 전시관 위원회가 민간박물관들에게 위와 유사한 원칙을 보급하였다. 약탈자문위원회 (The Spoliation Advisory Panel)가 설치되어,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박물관 소장품들에 대해 유대인학살 기간에 잃어버린 예술품에 관해 검토하고 자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 위원회가 현 법률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체코와 리투아니아 등에서도 관련 조치가 취해졌으며, 미국에서는 이용된 방법론 상 일관성이 부족했지만

다수의 박물관들이 그들의 소장품들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필요한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진보적인 방안

문화재 거래는 주요 국제사업이 되었지만, 이러한 거래에는 불행히도 불법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의 가격이 변동할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그것은 항상 값이 올라가는 것이며 그에 대한 국제수요는 탐욕에 가까운 정도이다. 예술작품, 공예품, 골동품, 고고학적 발굴 유물 등은 원산국에서 끊임없이 유출되어 국제 예술품 시장에 옮겨지고 있다. 은밀히 또는 강제 또는 금전에 의해 원산지에서 유출되어 서구 사회의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 하에 귀속되는 고고학적 및 문화적 중요성이 큰 문화재에 관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러한 문화재 불법거래가 우리가 막아야 할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점차 인식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태도의 변화로 인해 거래의 본질적인 부분이 불법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반환 및 상환에 관한 미래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며,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국가 간 반환 문제의 해결 사례가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법률 서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서화된 사례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퀸즈랜드 대학의 Prott 교수와 O'Keefe 교수는 사례연구집과 문화유산 분야 국제법에 중점을 둔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문화유산의 반환과 상환과 관련된 문제와 가능성에 대해 역량 형성과 대중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거시적인 접근방식에서 문화재 반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정책 중심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박물관들이 새로운 활력으로 변성하고 있고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 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박물관은 많지 않다. 건전한 국가 문화정책에 기초할 수 있다면, 박물관의 발전과 문화재반환의 문제가 제대로 이행될 것이다. 행동강령을 도출해 낸 1998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정부간회의에서도 우리 노력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책에 기초한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서 양자 간의 정책과 문화 간 대화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2001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문화유산 보호 동남아시아 워크숍에서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환, 상환, 송환 등의 문제는 양자뿐만이 아닌 다자적인 관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국경에서의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최소화하지는 캄보디아와 태국 왕정 간의 양자 합의는 그러한 거래를 다자간 의제로 검토할 때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제 돈황 프로젝트(International Donhuang Project)와 같은 사업들이 다자 간 협력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은 현재 아마라바티 디지털 박물관사업(the Amaravati Digital Museum Project)을 개발 중에 있다. 아마라바티 혹은 단야카타카(Dhanyakataka)라는 고대 도시는 불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불교가 복인도 지방에도 발생했지만, 대승불교의 창시자인 나가르주나(Nagarjuna)가 태어나고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은 남쪽의 아마라바티(Amaravati)이다. 그곳은 지난해 대승 달라이라마가 칼라차크라

(Kalachakra) 의식을 행한 대승불교의 발생지인 것이다.

이 곳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리탑들 중에 하나가 있다. 하지만, 200여 년 전에 이 사리탑에서 조각과 건축적인 요소를 지니는 주요 부분이 영국의 웰링턴 공작 (the Duke of Wellington)의 개인 정원으로 옮겨지게 됐다. 그의 소장품들은 이제는 엘진 마블과 함께 주요 소장품의 하나로 대영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다. 유산지역의 박물관에는 주요 조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소규모의 소장품이 인도의 국립박물관인 마드라스 정부 박물관(Madras Government Museums)에 있고 기메박물관(Musée Guimet) 같은 곳에도 자리하고 있다. 문화재 지역에 관한 기록유산의 경우도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지역의 출신으로서 본인은 박물관, 정부, 지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불행히도,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재를 본 적이 없다. 유사한 사례로, 대영박물관을 방문하는 대중들도 박물관의 문화재의 원산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렇듯 복합적인 국제 관객들 사이에서 대화를 유도하고 문화유산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이다. 이러한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접근성 제고에서뿐 아니라 반환에 관한 미래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마라바티 디지털 박물관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화 사업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 디지털 접근을 추진했고 캠브릿지 대학에서도 인도의 나가스(Nagas)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제공한 바 있다. 돈황 유적지에 대한 영국도서관과 중국 간의 협상에서도 디지털화가 논의되었다. 유럽과 일본에서 국제 돈황 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onhuang Project)를 통해 중앙아시아 유적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반환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특정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제협약은 공동 작업을 위한 대화와 절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협약의 사회화와 국제적 관심의 제고 그리고 문제해결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중한 기회가 될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 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풍성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Return, Restitution and Reconciliation

**Dear Distinguished Guests and experts.**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 address this august gathering.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acknowledge Dr Samuel Lee, the Secretary General of KNCU. We met on the University of Campus in February and then again last week in Paris during the Executive Board sessions of UNESCO in Paris. We meet here for the third time this year, on yet another continent. It bodes well the continuing and future engagements between the UQ and Korea.

The theme for the discussion of this gathering continues to acquire greater significance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intergovernmental bodies, professional bodies and primary stakeholder communities. The discourse is impregnated with legacies of colonial and post-colonial positions where we are rethinking the very nature of heritage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has taken a different meaning beyond or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focus on inventorisation, collections or site management, interpretation and audience development. The professional and custodial endeavour has become a detente between the stake holders. The questions are the extent to which we have developed tools for meaningful engagement and productive relations in the business of safeguarding our cultural heritage in the world.

The literature and archival material is now increasingly becoming legalistic and inaccessible to the majority of people. So how do we facilitate an intercultural dialogue to work towards reconciliation in our post-colonial but rapidly globalizing environment? We are dealing with several principles that can be clustered as the 'R' Principles for facilitating the processes of cultural reclamation: Return Restitution Repatriation Reconciliation. My paper is not given from a legal point of view or as an expert on the Korea Japan situation. I have facilitated meetings between almost all the countri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in the past five years focussing on the use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My emphasis is as an advocate of cultural democracy and reconciliation through negotiating partnerships for dealing with the post-coloniality of our collections and places.

On the 2nd of November 2001, in the post-September 11 environment, UNESCO's governing body the General Conference adopted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 Director-General Mr Koïchiro Matsuura declared: "At a time when some might see a clash of cultur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UNESCO's Member States, convening for the Organization's 31st General Conference, adopted by acclamation today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reaffirming their conviction that intercultural dialogue is the best guarantee of peace, thus categorically rejecting the idea that conflicts between cultures and civilizations are inevitable.

"This is the first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dowed itself with such a comprehensive standard-setting instrument, elevating cultural diversity to the rank of 'common heritage of humanity - as necessary for the human race as bio-diversity in the natural realm' and makes its protection an ethical imperative, inseparable from respect for human dignity.

"This Declaration now counts among the basic texts of new ethics UNESCO is advocating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 hope that it will one day acquire as much force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y argument is that we need to rethink Return, Restitution and Repatriation within the new standard setting framework focussing on reconciliation as a desired outcome of intercultural dialogue. Since the 1954 Hague Convention we have witnessed the drafting of several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formal processes of applying the standard setting instruments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a focus on public awareness. It is the socialization of these instruments and their intent that has become critical. This would involve greater emphasis o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particular needs of interest groups based on assessing th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under focus.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mentality with which we engage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protection of our cultural heritage is imperative.

The recent armed conflicts in Afghanistan and Iraq and continuing escalations of civil strif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ill continue to mak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return or restitution a continuing concern. At the same time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of the inalienability of cultural property from its place of origin. It is now widely understood that certain cultural artefacts are the property of the people of the place in which they have originated and hence should not be removed without permission by the official representatives of these people. Such recognition has convinced governments and professionals of the urgent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study ways and means to implement concrete actions to this end.

To assist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several corresponding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developed and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1.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 also called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and its Protocol. The 1954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as been adopted together with a Protocol concern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llegally exported during an armed conflict (for the text, please see Section 3: Reference Document 29). Under this Protocol, the export of cultural property from an occupied territory is prohibited. In case it would have been exported illegally, it must be returned to the territory where it came from. The Protocol also expressly forbids the appropriation of cultural property as war reparations. As of 15 June 1996 , 75 States were parties to the Protocol to the 1954 Hague Convention. Among these, 24 are not parties to the 1970 UNESCO Convention. This means that although they are not bound by the obligations of restitution under the conditions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these countries may under the Protocol to the 1954 Hague Convention have to return cultural objects that were exported in situations of occupation.

2.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 often called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Illicit Traffic).

3. Th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known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4.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Objects (1995).

5. The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the UNIDROIT Convention do not cover all the cases where claims are made. In some cases, the return and recovery of displaced cultural objects has been attempted by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and other Remedies. In reviewing the overall situation, Professors Prott and O'Keefe make some clear distinctions. They argue for at least four different cases where States may intervene to have objects returned:

1. Cases where objects were taken during colonial times when the local people were unable to prevent this, but which never had their real consent.
2. Cases which would have fallen within the 1970 or 1995 Conventions but which antedated those instruments, which are not retroactive.
3. Cases which do fall within those instruments (which we have already dealt with) and, most recently,
4. Some exceptional cases where States feel that, even though the legal ground for claims is unpromising or confused, justice requires particular action. The two clearest cases in recent years in this area have concerned human remains, and objects looted during and immediate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Other indigenous property and sacred and secret objects are also difficult issue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cases that these eminent professors use to further their argument. These case studies are taken from the course on International Heritage Law referred to in the Conclusion.:

*The Korean Archives (Oe-kyujunggak Books)*

The Oe-kyujunggak was a branch of the Korean Royal Library (the Kyujunggak) established in the late 18th century on the island of Kanghwa as the safe repository for precious manuscripts and cultural artefacts including documents and archives on ancient Korean royal policy and protocol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concerned about Christian missionary zeal in Asia, prohibited all missionary activity in the country and made it punishable by death. However, despite these prohibitions, French missionary activity continued, and in 1866 nine missionaries were executed. In retaliation, French naval forces attacked and razed the Royal Archives on Kanghwa Island, plundering silver, priceless books and manuscripts, destroying around 6000 books and buildings which were burnt to the ground.

For over 100 years the Oe-kyujunggak Archives were believed irretrievably lost due to this wilful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by chance over 170 of the plundered archives were located by a Korean scholar in the French National Library where they had lain forgotten.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ir return to Korea by the French as items of significant national cultural importance. Whilst the French government in 1991 was positive and offered a "loan in perpetuity and exchange", the French National Library disagreed, insist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equally precious cultural artifacts in exchange, thus legitimating French ownership of the Oe-kyujunggak Books. Diplomatic negotiations have since continued

unsuccessfully for 15 years (since 1992) as Korea has felt justice demands the return of these irreplaceable cultural records unlawfully pillaged during the "punitive raid" by the French. The case has not been brought before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Case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1970 or 1995 Conventions but where one or both States are not party to those instruments)

*Phra Narai lintel from Prasat Hin Khao Phanom Rung (Thailand)*

This is a case where the requesting State Thailand was not a Party to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requested the return of a carved lintel looted from a registered monumental site. The lintel was found in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which was unwilling to return the object, insisting it had been legitimately purchased, until a means was found to replace the item with another "of similar value". Though Thailand brought its claim before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s above), the UNESCO Committee does not seem to have had any input into the process and negotiations continued between the Thai government and the museum during the early 1980s. Eventually, thanks to the intervention both of the Thai government at the bilateral level and of an American scholar who engineered a solution, a United States Foundation gave the museum another Thai piece to replace the lintel and the latter was then returned to Thailand.

*Iran v. Wolfcarius*

In this case, Iran was party to the UNESCO 1970 Convention, but the requested State, Belgium, was not. Mme. Wolfcarius had lived for many years in Iran and acquired a large collection of ceramics of great value. In 1965 they were exported from Iran, without an export permit as required by Iranian law, in the baggage of a Belgian diplomat, and were not therefore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 The objects were deposited in 1971 in a Belgi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Ghent for study, and in 1979, Mme. Wolfcarius sought to retrieve them, fearing that they would be claimed by the Iranian government.

In 1981, after two years of discussion with the Belgian government, the Iranian government commenced an action in the Belgian court system for the return of the collection. Though the breach of diplomatic practice by a Belgian diplomat in violating the law of the host country could possibly have bee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itigation or arbitration, Iran has not taken

that route. The goods were sequestered by court order to prevent dealings in them during litigation: the collection was left in its current location and was to be conserved. The Iranian government claimed that illegally exported antiquities could be regarded by the State as contraband and forfeited. It did not, however, for the purposes of the litigation, deny that Mme. Wolfcarius was the owner of the collection, and did not seek title to the collection, but only its return to Iran. The case was brought to the notice of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1985. However as litigation was pending, the Committee, according to its Statutes, decided to wait until all national remedies had been exhausted. No developments in this litigation have been recently reported to the Committee.

### *Artworks looted during World War II*

Widespread looting of artworks occurred throughout Europe and Asia during and immediate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which still has major ramifications for restitution today.

When the war began, Germany lost no time in stripping the major Jewish collections of Austria, Belgium, France and the Netherlands. Non-Jewish owned art was also taken but to a much lesser extent. Other items were taken from Jewish owners, many of whom perished at the hands of the Nazis. Art was also purchased, but overall the Allies were disturbed by the degree of systematic looting and developed the Declaration of London intent on recuperating these takings when the war was over. However, the Nazis were not the only forces involved in looting. In Asia, Japan engaged in significant looting of the countries it occupied. As Allied forces moved into areas formerly under Axis control more looting occurred. The Soviet Union sent special teams into Germany to seize art in compensation for what had been destroyed by German forces. It also took objects from other countries where it was in occupation. There are documented instances of looting by American forces in Germany and Japan. There are also cases where art was purchased for very little by Allied servicemen and later found to have been stolen.

At war's end Germany was the depository of vast quantities of art from the other countries of Europe. The 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Unit (MFAA)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accompanied allied troops into Europe and began to reassemble the dispersed heritages of the countries which had suffered wartime occupation. This showed that the Allies were serious about undoing the displacement which had occurred as a result of the Nazi policies. "Collecting points" were established where the art that was found stored was brought for identification and distribution to the State from which it had been taken, however in some cases

this proved impossible as individual works were not known or the owner could not be found. States were left with collections of this material. Austria put some of the works into the national museums while a further 8,422 objects paintings, sculpture, furniture were placed in storage. In France, what were then regarded as unimportant items were sold and the remaining 2058 pieces were placed in the national museums where they were kept under the heading MNR (for musées nationaux récupération).

Although the Allies began undoing the dispossession with enthusiasm, they gradually lost interest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n Cold War of the 1950s and 1960s. Despite the fact that no overt action was being taken by States to finalize claims, cases continued to arise and were litigated from time to time, but these had little impact on public consciousness. A generation of museum curators and collectors came into being with no detailed knowledge of what happened to the art world during World War II. Furthermore, some of these looted objects had by then passed through a number of subsequent transactions.

This attitude began to change in the 1990's as these unresolved issues were brought to public attention. Another factor was the opening up to researchers of previously unavailable archives containing information on what happened to art during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such as in 1991 when it was revealed that a vast hoard of art, much believed to have been destroyed at the end of the war, had actually been appropriated by Soviet "trophy brigades" and was stored in depositories in Moscow and St. Petersburg. This brought claims from governments, mainly seeking restitution of art taken from their countries. However they soon saw that, with the raising of awareness among the public in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question of art restitution had to be dealt with as a whole, especially since aged survivors of despoliation and families of Holocaust victims began to insist on proper compensation for their losses. Finally, the advent of better information service, data bases and distribution of sale and auction catalogues made it much easier to detect and track looted material, much of which had been publicized immediately after the war, but the provenance of which had not been properly researched by its later acquirers.

In the early 1990s UNESCO made it discreetly known to those States making and receiving claims that it was ready to assist and that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would have jurisdiction to handle such disputes. Without exception, they all replied that they would prefer first to seek to resolve such claims at the bilateral level.

By 1995, however, it was clear that most of these bilateral negotiations were making no headway.

Despite several efforts at setting up some principles to enable resolution of the disputes, little has happened, although a number of States took positive steps internally to improve the prospects of restitution. After intense pressure and publicity the Austrian Government in 1996 agreed that the remaining art held at Mauerbach be auctioned, which raised \$14.4 million which was to be used in aiding Holocaust survivors. The Austrian Minister of Culture and the Arts created a commission of experts and asked them to look into the provenance of works of art in federal museums and in State collections. In addition, Austria passed legislation empowering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to give back to their original owners, or successors in the case of death, cultural objects from the Austrian Federal Museums and Collections without payment. This legislation overrides, for a period of 25 years, the provisions of the Monument Protection Act on voluntary transfer of objects in the sole ownership of the State and the export control legislation for cultural objects.

In France, details of the MNR Collection were put on the internet in the hope that this would enable people to recognize what it contained. Some items have been recently recognized and returned. The Mattéoli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1997 to investigate all aspects of restitution in France, including that of art. A Report was released in July 2000. Following a recommendation from this Commission, an edict was issued on 10 September 1999 setting up an indemnification commission to handle recovery claims.

In the United Kingdom, the National Museum Directors' Conference in 1988 adopted a Statement of Principles and Proposed Actions on Spoliation of Works of Art during the Holocaust Era and World War II Period. Following this, each national museum, gallery or library was to examine its collection to identify objects whose provenance was unknown for any point during the years 1933-1945. The results were made publicly available on the internet at the end of February 2000. There were 350 objects in national museums with doubtful provenance for the relevant period and many more without any known provenance. In April 1999, non-national museums were issued with comparable principles by the 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 The Spoliation Advisory Panel was established to consider and advise on claims for art lost during the Holocaust and "now in the possession of a UK national collection or in the possession of another UK museum or gallery established for the public benefit". However, concern has been expressed as to how effective the Panel will be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ther European States taking action include the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The former passed legislation on 23 June 2000 providing for the transfer to the original owners or their heirs of art held by the State as a result of appropriation during the period 29 September 1938 to 4 May 1945. On 3 October 2000 the Parliament of Lithuania passed a Law on the Transfer of Religious Manuscripts Copi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Observance (Toras) to Jewish Religious Communities and Societies. As the name indicates, the legislation establishes a procedure for transferring Toras kept in State depositories into the ownership of Jewish communities or socie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number of museums are researching their collections although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methodology used. One problem is the lack of persons trained in the necessary techniques.

#### The Griffer Case

In 1999 the Tate Gallery received a formal claim for restitution of a painting "A View of Hampton Court Palace" by Jan Griffer the Elder. The claimant alleged that the painting in question had been bought by his father -a German Jew - in about 1932, but that in 1939 the mother sold the Griffer "for an apple and an egg" to a gallery in Brussels during the German occupation of Belgium. The claimant produced an authenticated negative of the painting which had been donated to the Tate Gallery in 1961. The claimant identified the painting in 1990 but did nothing for nine years. The British Spoliation Advisory Panel concluded that the sale by the claimant's mother in Brussels to buy food as a "forced sale at an undervalue". The claimant wanted compensation not restitution. Three valuations were sought and the Panel decided on £140,000 judged by the standards of 1961 when the Tate acquired the painting, deducting £15,000 for conservation and storage by the Tate Gallery plus insurance premiums the claimant would have had to pay. At that time the Gallery made inquiries as to its provenance which proved inconclusive, and the Panel stated that were "satisfied that the scope of the Tate's inquiry was reasonable by the standards of the time, when museum buyers were characteristically concerned with the history and importance of the picture rather than any considerations of spoliation. Furthermore, at that time, there were no grounds for suspicion that there was anything amiss with the picture's provenance". The Tate had no moral blame and the Panel recommended that payment of £125,000 be made by the Government out of public funds and that a plaque be mounted beside the painting indicating its history.

## The way forward

Trade in cultural property has become a maj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so has, unfortunately, what we have come to call illicit traffic or illicit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Prices of objects of cultural property may fluctuate but is ultimately always rising and international demand seems insatiable. Works of art, handicrafts, antiques and archaeological finds are increasingly taken from the places where they originated to end up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There are far too many examples of vast archaeological or other cultural riches, which have been taken away by stealth or force or just by money from their place of origin to end up in museums or private collections in the West.

The only good news is that such illicit trade in cultural property is increasingly acknowledg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unethical, as something we should try to prevent from happening. The change in attitude internationally recognised that a substantial part of the trade is illicit. The future prospects of return and restitution are challenging, and one hopes that with greater intercultural dialogue we will witness an increasing number of resolutions to claims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ir governments.

There are few documented case studies that are not locked away in legalistic tomes. For this reason, two of our Museum Studies faculty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Professor Lyndel Prott and Professor Patrick O'Keefe who are eminent barristers; are working on developing a case study volume and also establishing a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and on-line program focussing on international heritage law. We need greater capacity building and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s and possibilities centred around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macro approach would call for systematic policy-based professionalization of the processes which provide the context for return and restitution. While museums are thriving with new-found vigour; witness the proliferation of new museums across the world; few countries have located their museums within their national cultural policies. Museum development and the claims for return and restitution would do well if they were grounded in sound national cultural policies.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in 1998 in Stockholm leading to an Action Plan emphasised the significance of policy-based coordination to ensure effectiveness in our endeavours.

Then there are the bilateral policies and intercultural dialogue between countries which would



also facilitat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my personal experience of Chairing the Southeast Asian Workshop on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Hanoi 2001 leads me to argue that concerns of return, restitution and repatriation are not only bilateral but of multilateral concern. For instance, the bilateral signing of an agreement between the Royal Governments of Cambodia and Thailand to minimize cross border trade in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can only function effectively if such trade is considered a multilateral agenda.

In other words, projects such as the International Donhuang Project provide an avenue for multilateral collaboration. I am currently working on developing the Amaravati Digital Museum Project. Amaravati or the ancient city of Dhanyakatak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ces of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Buddhism. While Buddhism took birth in northern India, it was in Amaravati in the south that Nagarjuna, the propounder of Madhyamika philosophy, was born and lived for most of his life. Amaravati is the birth place of Mahayana Buddhism where last year in January His Holiness the Dalai Lama performed the Kalachakra ceremony.

The place has one of the largest stupas in South Asia. However, the substantive part of the sculptural and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stupa were dug up and transported to the private garden of the Duke of Wellington in England more than 200 years ago. The collection is now housed in the British Museum as a major collection along with the Elgin Marbles. There are very few remains of the major sculptures at the site museums. Smaller collections are in the Madras Government Museums, the National Museum of India and also places such as Musée Guimet. Documentary heritage associated with the place is also spread over several continents. As a local from this place, I am working on creating a dialogue so that everyone concerned the museum,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y groups come together and work out a way forward. Unfortunately the local people have never seen the collection. Similarly, the public visiting the British Museum has no idea about the place of origin of this collection. My ambition is to bring about a dialogue between these multiple international publics and raise their awarenes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I am working on the Amaravati Digital Museums only as a means of access, but by no means a substitute for any future dialogue on return or restitution.

Such digitization projects are not uncommon. First Nations in Canada have sought digital access, recently misunderstood in the Paris debate on Universal Museums, prior to negotiations. Cambridge University has similarly provided digital access to the Nagas in India.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British Library and the Chinese leading to the keeping of the

Donhuang collection (or Stein Collection) digitizing it for global access is another case. There is also the International Donhuang Project aims to catalogue and digitize all Central Asian material in Europe and Japa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affirm that there are no formulae for dealing with return and restitutio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facilitate a dialogue and processes for working together. Ultimately the socialization of these instruments and global awareness of the concerns and the possibilities to see resolutions are critical. I wish this august gathering a fruitful dialogue today to find a way forward between the two countries.

[Presentation]

## 한일 협정의 한계(限界)와 과제(課題)

Reflections on the Limitations of and Overcoming Measures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1965

•

조부근

CHO Boo Keun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Korea Publishing Foundation

## 1. 한국 문화재의 해외 유출 경과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약탈을 경험한 관계로 우리 문화재의 수난의 역사도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문화재의 해외유출은 약탈을 포함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경우가 많다. 해외유출 우리 문화재의 시대적 구분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임진왜란(1592 - 1598) 중 일본군이 약탈해간 문화재로서 안건의 몽유도원도<sup>1)</sup>, 가토(加藤)에 의해 방화, 파괴 및 약탈된 불국사의 불상과 불경<sup>2)</sup>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에 전래되고 있는 신전본(神田本), 덕천본(德川本)<sup>3)</sup>은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약탈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한말 이후 일본 지배시대(한일 합방 전후)에 도굴되어 유출된 것을 들 수 있다. 일제시대의 문화재약탈은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의 사고와 정신을 공동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sup>4)</sup> 따라서 이 당시의 문화재 약탈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과 보관된 것만 보더라도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수집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 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약탈행위임이 분명하다.<sup>5)</sup>

### 가. 일본의 고적 조사 출토품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이루어졌고 발굴된 출토품을 일본으로 반출했지만 명확하게 강탈한 것으로 1차적으로 선의의 기증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유네스코(UNESCO)협약에 의거 반환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 ① 1909년 10월 제2차 고적조사[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다니(谷井), 구리야마(栗山)]
  - 대동강 남단 고분 2기 발굴, 일본 반출-
  - 1910년 가을 고분 2기 발굴
- ② 1911년 10월 제3차 고적조사(사리원 인근)
  - 사리원 인근 대방태수 장무이(張撫夷) 무덤과 토성
- ③ 1913년 9월 제4차 고적조사
  - 진남포 부근, 봉산리 유적 고분[한(漢)대의 와당, 복식, 동기 등]
- ④ 1916년 10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발굴팀 고적조사
  - 대동강 남쪽 낭랑고분 10기 발굴[제9호 고분에서 국보 제89호 금제교구(金製餃具, 중박소장) 출토]
- ⑤ 1911년 3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발굴팀 가야시대 유적 발굴
  - 진주 옥봉 출토유물(동경제대 공대기증)
- ⑥ 1915년 총독부 위촉 신라고분 조사 발굴
  - 경남 황남리 고분에서 칠검, 철장, 토기 출토

1) 林容子, “在日朝鮮文化財問題のアーネージメントの観点よソの考察” 『尙美學園大學藝術情報學部紀要』 第5號,(2004년 12월), 61쪽

2) 林容子, 위의 책, 60쪽

3)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서울 : 돌베개, 1996), 166쪽

4) 한영대, 박경희 옮김, 『조선미의 탐구자들』 (서울 : 학고재, 1997년), 17쪽

5) 정순훈, 김형만, 김민서,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그 해결방안 -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대의 문제』 (정신대 연구소,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 광복 50주년기념 학술대회, 1995년 6월 30일), 151쪽

- 같은 해 보문리 부부총 발굴, 순금, 팔찌, 귀고리, 반지 출토
- ⑦ 1918년 경주 명활산 고분 발굴
  - 순금, 귀고리, 금은팔찌, 반지, 기타 옥류의 장신구 출토
- ⑧ 1925년 동경제대의 낙랑 고분 발굴 출토품
- ⑨ 1921년 경주남문 밖 고분 발굴 문화재
- ⑩ 1924년 금령총 발굴 문화재
- ⑪ 조선고적 연구회의 발굴 문화재

#### 나. 일본인이 수집한 대규모 도굴품

대규모 수집자의 소장품으로 이 중 일부는 조선인이 도굴하여 일본인에게 매도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① 초대총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집품(고려자기류 수천점)
- ② 오쿠라(小倉) 컬렉션
- ③ 가루베(輕部慈恩) 컬렉션(백제유적)
- ④ 이치다 컬렉션
- ⑤ 아마요시(山古盛末)도자기 컬렉션 수백점(주한 일본 공사관 근무자) - 도쿄재실 박물관 보관[세키노 타다시(關野貞), 『한국건축 조사보고』, 1904]

#### 다. 유출된 서지류

이중 일부는 정당하게 취득한 수집품도 있을 것이다.

- ① 가와이(河合)수집품  
가와이 문고(河合文庫) - 교토대학 부속 도서관
- ② 마에마(前間恭作) - 정족산성사고에서 반출된 도서 - 동양문고(일본 국회 도서관 산하)
- ③ 아사미 (瀧貝倫太郎) - 마쓰이 문고(三井文庫) - 2차대전후 미국 버클리대학교에 매매됨
- ④ 가네자와(金澤庄三郎) - 탁족문고(濯足文庫) - 2차대전 중 미군공습시 불탐
- ⑤ 도쿠도미(德富蘇峰), 경성일보 주필 - 성기당 문고(成箕堂文庫)
- ⑥ 이마니시(今西龍), 경성제대 교수 - 오사카 시립 도서관의 한국고서
- ⑦ 이토 히로부미가 1911년 가져간 규장각 귀중본(1965년 서울대도서관 백린 열람 과장이 밝힘)
  - 정치, 역사, 인물, 문집, 읍지 등 33부 563책
  - 궁내청 서릉료(書陵寮)에 보관중
- ⑧ 오대산 사고본 서책 150점 - 동경대 부설 도서관으로 반출되어 (1914년3월 3일 - 3월 11일) 1923년 관동대지진때 소실됨
  - \* 교수들이 대출해간 20책은 2006년 국내환수
- ⑨ 헤이하라(幣原壇)수집품, 구한국 학부(學部)고문6)
  - 1945년 이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그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던 일본인들은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6) 林容子, 앞의 책, 60- 62쪽. 이구열, 앞의 책, 62-222쪽 참조

문화재를 대량으로 유출하게 한다. 일부 일본인들은 평소 친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뒷날 적당한 시기까지 물건을 맡아 보관해 달라고 은밀히 교섭하거나 싼값이라도 모두 처분하러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집 속에 어느 정도의 문화재를 가지고 갈 수 있었고, 그 안에는 국보급의 문화재도 포함되었을 것이다.<sup>7)</sup>

셋째, 미 군정기에 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꼽을 수 있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우리 문화재는 이제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sup>8)</sup>하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해 우리 문화재가 어떠한 법적장치를 피하여 합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되기도 하였다.<sup>9)</sup> 이 협정의 제9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5항에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우리문화재의 유출에 대한 우리자신의 자주적이고 당연한 권리행사는 원초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해방 후 한국에서 일본국내로 유입, 구입된 것도 있을 수 있다.

해방 후 국내에서 상당한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sup>10)</sup>되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한일 문화재 반환협상의 배경과 과정

###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

한국과 일본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두 나라의 협상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그 해 10월 도쿄에서 한일(예비)회담이 열린 것이 공식적인 출발이었다. 한일회담의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 한국과 일본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오히려 미국의 조정에 의한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한일회담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회담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소극적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1950년대에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협정을 둘러싼 일련의 일시적 상황은 보이지 않는 당사자로서 북한문제가 유보되었다.

해방된 한반도에서는 즉각 문화재 반환운동이 시작되었다. 민간 역사가의 단체인 진단체회는 1945년 10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에 약탈당한 도서의 반환을 미군정청을 통하여 맥아더 사령부에 제의할 것”을 결의하고, 12월에는 일본인이 약탈한 도서 및 보물 목록을 완성하여 군정청에 제출하였다. 이 목록은 1949년 3월 15일에 한국의 대일배상 심의회가 ‘대일배상 요구조서’ 제1권에 포함되었는데 서적 212종, 미술품 및 골동품 837종이었다.<sup>12)</sup>

7) 이구열, 앞의 책, 224~233쪽 참조

8) 이구열, 앞의 책, 234쪽

9) 이 협정의 제9조 5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우편 경로에 있는 제1종, (다) 합중국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10) 이구열, 앞의 책, 231 ~ 234쪽 참조

11) 박동철, “청구권 협정 I”, 민족연구소편, 「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5), 162 ~ 163쪽.

12) 森田芳夫 「韓日における日語日史教育-朝鮮王朝期日本統治期解放後」(原書 -, 1987), 386쪽.

## 한일 회담의 진행과 협상과정

한일회담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교섭이었다. 첫째, 이 회담은 세계외교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협상이 장기화되어 타결되기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4년간의 마라톤 교섭기간 중 1,500여회를 넘는 각종의 회담이 열렸다. 둘째, 한일회담은 회담 시작 이래 타결을 보기까지 한일 양당사국 이외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한미일 3자회담 성격의 협상이었다. 미국은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회담촉진 압력을 행사하였고, 때로는 표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회담타결을 이끌었다. 셋째, 한일회담에서는 복수의 의제가 동시에 다루어졌다. 기본관계, 청구권 문제, 어업·평화선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 문화재 반환협상 등 복잡한 현안이 동시에 토의되었다. 회담의 채널도 실무교섭과 정치회담, 공식접촉과 비공식회의 등 복잡한 양태로 이루어져 있었다.<sup>13)</sup>

앞의 한일회담 전의 문화재 반환운동에서 살펴보아도 일본이 조선의 보호국화(1905년)와 합병(1910년)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의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해 간 것은 지울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이 아세아 각지에서 타민족의 문화재를 약탈해 온 것이 밝혀져 반환이 실시되고 있다. 조선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약탈은 엄하게 제지하였으며 오히려 종전에 파괴되었던 문화재를 존중하는 정신을 양양하고 그 보호시설을 충실히 하고, 연구 자료를 정비하였다.<sup>14)</sup>

“조선의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조선 내에서 보존하고 조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삼는다라고 한 테라우찌(寺内)총독의 방침은 엄격하게 지켜졌고 그 결과 오늘날 일본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신을 가져 오기에 이르렀다.”<sup>15)</sup>

“오늘날 일본에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같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인 테라우찌 총독이 본인의 고향 야마구찌(山口)현에 조선의 문화재를 모아서 조선관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만 들어도 충분할 것이다.

16) 앞으로 서술하는 문화재 반환협상을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 저변에는 이러한 일본 통치시대의 조선문화재 정책, 나아가서는 조선합병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의 대립이 깔려있는 것이다.

한일협정 중에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먼저, 동 협정은 지금도 유효하면서도 일본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 협정이 체결되었을 당시 합의된 「의사록」에는 “한국 측 대표는 일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과 유래되는 문화재를 한국 측에 기증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말했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국민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이들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한다는 것은 양국간의 문화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하는 바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이 사유하고 있는 한국과 유래되는 문화재를 일본국민이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할 것을 권장한다고 약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는 북한 문제가 유보되어 북한 지역에서 출토되어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가 인도품

13)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5), 62쪽.

14)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朝鮮篇, 第3分冊(發行年不明), 94쪽

15)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黑板博士記念會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吉川弘文館, 1953), 358쪽.

16) 이구열, 「한국 문화재 비화」(서울: 한국미술관사연구회, 1973), 58쪽.

목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의 북한-일본간 국교 정상화 교섭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문화재 반환문제가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

## 가. 한일회담의 협상 의제화 과정

가) 제1차 회담(일본동경, 1951.10.20 ~ 1952.4.21) : 역청구권 논쟁과 회담결렬

한일회담이 열린 것은 미국의 알선에 의해서였다. 미국이 한일회담을 추진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951년 7월경이었다. 1951년 7월 「강화조약」에 한국의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결정이 정부에 전해지자,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직접교섭을 희망하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이 회복되기 전에 일본과 직접교섭을 통하여 모든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였던 것이다.<sup>17)</sup>

한편 일본의 요시다(吉田茂) 정부는 「강화조약」이 다가옴에 따라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회담의 개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재산 청구권 등의 의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당국(SCAP)은 일본정부에 10월 20일에 한일회담의 개최를 종용하고 결국 일본도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제1차 회담에서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는 청구권 문제와 기본관계의 수립에 있었다. 청구권위원회의 제1차 회의(1952.2.20)에서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하여 「한일간 재산,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하였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이 요강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에서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 지은을 반환할 것.
- ②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액을 반환할 것.
-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을 반환할 것.
- ⑤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 ⑥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그 외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 ⑦ 전기(前記)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것.
- ⑧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고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sup>18)</sup>

1952년 2월에 시작한 제1차 한일회담에서는 먼저 한국 측이 제출하고 있었던 「재산 및 청구권 요강」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 측에 대한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기본요강」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한일본인 재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했었기 때문에 같은 해 4월에 회담자체가 결렬되었다.<sup>19)</sup> 따라서 조선문화재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거의 토의되지 않았다.

17) 유진오,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일회담(14)”, 『중앙일보』 연재, 1983.8.30.

18)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 출판부, 1996), 52쪽

19) 「한일회담」, 『한일문화재의 반환문제』, 『문화유산』(1985, 9월호), 102 ~ 103쪽 참조.



## 나) 제2차 회담(일본 동경, 1953.4.15 ~ 1953.7.23) : 제네바 협정체결관계로 순연

1953년 5월에 제2차 한일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5월 19일 재산 및 청구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한국국보, 역사적 기념물(미술공예품, 고서적, 그 외)의 즉시 반환청구에 관한 건’ 등 4항목의 청구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제2차 한일회담이 열리기 직전의 5월 13일에 열린 비공식회담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의 목록을 제출해 이러한 문화재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일본 측에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업무의 진전에 대해서 질문했으나 일본 측은 지금 조사 중이며 곧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sup>20)</sup>

6월 15일에 열린 동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한국 측이 다시 한번 진전 상황을 묻는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은 ‘한국의 국보, 고서적, 미술품에 관해서는 외무성에 전임 담당사무관을 두는 한편, 문화재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조사 중’<sup>21)</sup>이라고 대답했다. 쌍방의 대화의 결과 ‘그 실체가 명백하게 되는 데로 반환과 지불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제2차 한일회담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전쟁 휴전 후 한국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네바협정 체결관계로 휴회하였기 때문에 제2차 한일회담에 있어서 문화재 반환협상은 그 이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 다) 제3차 회담(일본 동경, 1953.10.6 - 1953.10.21)

문화재 문제는 이전과 같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되게 되었다. 동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쌍방위원의 소개가 있었고, 10월 15일의 제2차 회의에서 먼저 일본 측은 같은 해 봄에 열린 제2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문화재 반환 요구목록의 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이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었다.’<sup>22)</sup>고 보고했다. 그리고 ‘의무로서 반환은 할 수 없으나 특히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는 증정의 형식으로 별도로 고려한다.’<sup>23)</sup>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는 ‘전부 36년간 계속된 일본의 권력기구를 통해서 불법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고 반론했다. 제3차 한일회담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토의 후에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다(久保田)의 이른바 ‘구보다발언’으로 결렬되었다. 결렬 직후에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 측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대표단은 일본이 한국에서 약탈했다고 주장하는 수천 점의 반환품목 목록을 제출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러한 미술품은 원래 정당한 가격으로 보통의 시장에서 구입된 것이다<sup>25)</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 라) 제4차 회담(일본 동경, 1957.12 ~ 1960.4) : 역청구권, 구보다 망언의 철회, 북송문제

구보다 망언 이후의 한일회담은 전면 중단되어 한일관계는 점차 험악해졌다.

20) 외무부정무국, 「한일회담관계 참고 문제집」(서울: 외무부, 1960), 169쪽.

21) 외무부정무국, 「한일회담 약기」(서울: 외무부, 1995), 138쪽.

22) 외무부정무국, 위의 책, 198쪽.

23) 외무부정무국, 앞의 책, 199쪽.

24) 외무부정무국, 위의 책, 199쪽.

25) 「日韓新聞」, 1953.8, 29쪽.

한일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일본과 한국 간에는 이승만 라인을 침범하여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의 송환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 일본인 억류 어부의 송환과 한일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수단으로 일본정부는 약간의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주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7년 2월에 수상이 된 기시(岸信介)는 같은 해 3월 김용식 주일한국대표부공사에게 문화재 일부의 반환을 약속했다.<sup>26)</sup> 동건은 같은 해 6월 중순 한일 실무급회담에서 합의되었다. 6월 30일자 「동아일보」는 “미술품일부 반환, 일본, 한국에 문서 통고(通告)를 준비”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이 새어나가 1958년 1월 5일자 「아사히신문」은 ‘한국정부관계지인 서울신문이 4일 보도한 것에 의하면’ “일본은 구한국왕실의 묘소에서 발굴한 국보 459점을 한국에 반환하는 내약(內約)을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보 459점’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 돌려받게 된 것은 도제고배 50개, 도제뚜껑 24개, 도제완 10개 등, 계 106점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해 2월 이러한 사실을 한국정부에서 알게 된 미술사가 황수영(당시 한국국보보존회 약탈된 문화재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은 “쌍방간에 문화재 반환의 원칙과 품목에 관한 토의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일본이 돌려준다고 해도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문교부에 제시했다.<sup>27)</sup> 황수영은 후에 ‘재일문화재의 반환문제’라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 측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 106점을 돌려주었다고 하나 이것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면 교동 출토의 일괄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1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또 단순히 106점이라는 표현은 ‘상당수의 국보급 미술품도 포함하고 무려 106점에 달하는 보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고고학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술품이라고 한 것은 ‘외교의 정직성’을 벗어난 것이다. 셋째, 이것이 일괄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때의 목록에 그 취지를 명기하지 않았던 것은 성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sup>28)</sup> 그러나 도제고배 5개 등 106점의 문화재는 제4차 한일회담 개시 다음날인 1958년 4월 16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되었다. 이와 관련 4월 24일자 「도쿄신문」은 “구한국왕실의 財寶 정부, 반환을 밀약” “어부송환과 교환, 일부 이미 인도되었음”이라고 크게 보도하고 “한국에서는 이 財寶는 국보급으로 459점에 달한다.” 등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쓰여졌고 “이 문화재는 한국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기 위해 일본에 가지고 온 것으로 약탈하지 않았다.”는 노마(野間) 국립박물관 학예부장의 인터뷰만을 게재하여 문제있는 기사였다.

또한 그 해 5월 13일자 「마이니치 신문」 사설 ‘너무 양보하는 한일회담’에서 제4차 한일회담의 어업문제에 관한 위원회가 ‘어업 및 평화라인분과위원회’로 바뀐 것과 ‘구한국 왕실의 財寶반환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일본이 그 정도로 계속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up>29)</sup>

5월 31일 문화재 문제가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사회당의 모리모토(森元)가 문화재를 돌려주고 싶다는 편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외무성 아시아국장 이타가키(板垣修)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한국 측으로서는 역시 일본에 있는 문화재는 약탈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돌려달라는 요구였던 것이다. 일본 측으로는 약탈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거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예비회담에 있어서, 앞으로 한일간 국교정상화에 대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본정

26) 박실, 「중보-한국외교비사」(서울: 정호출판사, 1984), 330쪽.

27) 황수영, “재일 문화재의 반환문제”, 「사상계」(1960년 7월), 142쪽.

28) 황수영, 위의 책, 143~144쪽.

29) 高崎宗司, “日韓交渉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日韓交渉』(1986.3), 41쪽.

부는 그것을 반환한다는 법적근거는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의 독립에 대한 하나의 전별(餞別)로서 일본측의 호의로 약간의 문화재를 증여한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6점의 증여가 이뤄졌던 것입니다.”<sup>30)</sup> 1958년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밝혀진 것은 없었다. 그보다는 사회당 의원 이마즈(今燈勇)는 6월 24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문화재문제에 대해 후지야마(藤山)외무성장관에게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약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여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sup>31)</sup>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한국측에 너무나도 양보했다는 이유로 일본 여론의 집중공격을 우려하여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을 비밀로 하고 있던 것이었으나 그 후 그것이 우려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6월 4일에 열린 문화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1905년(일본에 의한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이후에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탈취된 고문서, 미술품, 골동품, 그 밖의 문화재 및 지도원판과 일본측 이 한국에 반환 준비가 완료된 문화재의 목록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0월 4일 열린 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이미 한국 측에 반환한 106점의 문화재에 대해서 일본 의회의 반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취급”<sup>32)</sup>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한국 측은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문화재 반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회담 전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더욱이 “문화재를 그 원산국에 반환한다고 하는 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sup>33)</sup>고 주장하며 재차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카와이(河井彌八) 위원장은 10월 19일 「마이니치신문」 지면을 통해 “일본 측에서는 반환해야 할 문화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정부에서 잘 알고 있다. 이전에 한국에 돌려준 문화재는 1회에 한한 증여이기 때문에 결코 반환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소위원회는 10월 11일, 18일에도 열렸으나 진전은 없었다. 10월 25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양산부부총 출토의 489점을 즉시 반환하라. 중요문화재중요미술품 등 1015점을 반환하라.”며 구체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반환할 생각이지만 “개인 소유물은 그 소장지가 분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 소장지를 알아도 반환하는 것은 곤란하다”<sup>34)</sup>고 주장했다. 결국 문화재소위원회는 12월 13일까지 12차에 걸쳐서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4차 한일회담 전체도 뚜렷한 진전 없이 재일조선인의 복송 문제를 둘러싸고 휴회되었다. 그 후 재개되었으나 직후에 한국에서 4·19혁명으로 중단되었다.

## 나. 구체적 협상과정

가) 제5차 회담(일본 동경, 1960.10.25 ~ 1961.5.15) : 청구권 문제의 실질토의, 경제협력방식의 등장

1960년 10월 25일, 예비회담이 도쿄에서 시작되었다. 11월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기본관계, 한국청구권, 어업 및 평화라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등, 이상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청구권 위원회 밑에서 일반

30) 일본국회, 「제28회 국회계속참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동경: 국회, 1958) 7~8쪽; 高崎宗司, “日韓交渉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41쪽에서 재인용.

31) 일본국회, 「제29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3호(동경: 국회, 1958) 5쪽; 위의 책, 42쪽에서 재인용.

32) 외무부정무국, 「한일회담관계 참고 문제집」(서울: 외무부, 1960), 177~178쪽.

33) 외무부정무국, 위의 책, 178~180쪽.

34) 외무부정무국, 앞의 책, 180~182, 218쪽.

청구권, 선박, 문화재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5·16 군사정변으로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7개월간 진행된 이 회담은 50년대의 회담과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문화재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11일에 열려 한국 측으로부터 다시 문화재 반환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11월 14일에 열렸던 비공식회의에서 문화재 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3원칙을 제시했다.

① 국유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의미가 아니고 ‘기부 한다’라는 의미이다. 국제적인 선례를 조사해 봤으나 문화재를 반환했던 것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했던 것 이외에는 없고,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에 전보로 문의해 보았으나 인도의 예는 약간 있었으나 반환한 예는 없다. 인도도 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국립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약 300점이 된다. 국립대학은 정부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국립대학 소장의 것은 돌려주기 어렵다.

②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③ 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문화적 고려에 기초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에 토대를 둔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은 이때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반론하고, ‘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토의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다.<sup>35)</sup>

1961년 2월 1일에 열렸던 문화재 소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와 별개로 비공식의 전문가회의를 여는 것이 합의되었다. 그때까지 일본 측 위원에는 문화재문제의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전문가회의는 3월 7일에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문화재조사 소위원회위원 황수영, 일본 측에서는 문화재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마쓰시다(松下隆童)와 동위원회 문화재조사회의 사이토가 출석했다. 황수영은 이 자리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불법반출’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했다. 설명은 5월 8일의 전문가회의 제2차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뤄졌다. 전문가회의 제3차 회의는 5월 16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서울에서 박정희 등에 의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은 본 회담에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었다.<sup>36)</sup>

#### 나) 제6차 회담(일본 동경 1961.10.20 ~ 1964.4) :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청구권 타결

1961년 10월 6차 회담이 개시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적 토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담의 중심은 고위급 정치회담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11월에는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는 길에 도쿄에 들러 이케다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조기타결에 돌짜구를 열었다. 이즈음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에 ‘경제협력방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마련된 것이 김종필 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간의 회담이었다. 1962년 10월 21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두 사람만의 단독회담에서 예비절충에서 대립되었던 두 견해가 조정되어 최종적인 합의가 달성되었다. 이 합의가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였다.

추가 실무접촉에 의해 확정된 합의문서에는 “일본의 무상, 유상 자금 제공의 수반적인 결과로서 청구권

35) 외무부정무국편, 「제5차 한일예비회담회의록」(서울: 외무부, 1961), 451 ~ 460쪽.

36) 외무부정무국편, 위의 책, 451 ~ 460쪽.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여 년 간의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었던 청구권 문제가 이처럼 한일간의 역사청산이라는 본질과는 괴리된 채 ‘경제협력’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다.<sup>37)</sup>

제6차 한일회담은 1961년 10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한일외상회담의 결렬에 의해서 제6차 한일회담 전체가 중지되기까지의 문화재소위원회는 7차에 걸쳐서 또한 전문가회의는 6차에 걸쳐서 열렸다. 이때의 문화재소위원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반환요구가 반복되어 그것에 대해서 일본 측도 반환의 의무는 없다고 반복했다. 한국 측은 반환요구의 근거가 되어 있는 반출의 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들면서 설명했다. 그것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 번째로 부당·불법인 수단에 의해서 입수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국 측은 몇 가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한국 측의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확실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웠다. (중략) 다음에 문화재를 출토국에 귀속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전에도 누차 설명했던 것처럼 문화재는 출토국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국제법상의 원칙과 관례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sup>38)</sup>

또한 문화재소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문화재를 많이 되돌려 줄 수 없는 태도를 합리화하고, 또 애매모호하게 만들기 위하여 양국의 문화협조 문제에 화제를 옮겨갔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sup>39)</sup>

1962년 11월 8일 주일본대사에게 내려진 정부훈령의 제5항에는 “1957년 12월 31일의 구두성명(oral statement)의 실례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한국 측에 인도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sup>40)</sup>

또한 1962년 11월 19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5차 회의 회의록에는 주일대사관의 최영택 참사관이 “문화재 문제와 선박 문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청구권 문제와는 별도의 것이며,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이 문제도 토의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된다.”고 일본 측에 제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1)</sup>

1962년 3월 제6차 한일회담은 일시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11월의 김종필·오히라(大平)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어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회의가 재개되었다. 1963년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6차에 걸쳐서 열렸던 전문가회의에서도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요구를 반복했다. 한편 일본측은 2월 13일에 열렸던 전문가회의 제1차 회의에서 문화협력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 이것은 결국 1965년에 한일회담이 타결되었을 때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로서 “일본국 정부 및 한국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도서관 그 외의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에 연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편리를 주는 것으로 한다.”로 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그때까지 한일회담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김종필이 정권내의 반대파에 의해서 실각되어 한일회담은 다시 정체되었다. 그리고 1964년에 들어서 김종필의 복귀와 함께 한일회담도 또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런 와중에 3월 21일 오랜만에 문화재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석상에서 일본 측은 다시 문화협력협정의 체결을 제안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한국 측은 “보자기는 물건을 보고 나서 만드는 것인데 물건을 보기 전에 보자기를 만들라니 무슨 말인가”<sup>42)</sup>라고 면박했다. “문화재 반환이 선결이다”라고 한 것이다.

37) 「동아일보」, 1992년 6월 22일자.

38) 외무부 정무국, 「제6차 한일회담 회의록」Ⅱ(서울: 외무부, 1961), 416~417쪽.

39) 이홍식, 「一史家の 流薫」(서울: 通交館, 1972), 313쪽.

40) 이도성편,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서울: 한송, 1995), 137쪽.

41) 이도성편, 위의 책, 346쪽.

42) 「한국일보」, 1964년 3월 21일자.

재개된 제6차 한일회담은 그 직후(1964년 3월 하순)에 일어난 한국학생의 연일 계속된 반대데모로 중단이 되었다. 그런데 문화재 소위원회가 열렸던 3월 21일 「마이니치신문」의 사설은 첫째, “한국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고문화재는 어느 것이나 도굴하거나 강탈하거나 해서 손에 넣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시에 정식의 루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뿐이다.”는 것. 둘째, “국제관습에 의해서도 지금에 와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들어서 한국의 요구를 ‘사리에 어긋남’이라 보도하고 있다.<sup>43)</sup>

#### 다) 제7차 회담(일본 동경, 1964.12.3 ~) : 기본관계의 타결

김-오히라 메모이후의 한일회담은 군사정권 내부의 혼란과 한국내의 회담 반대운동의 격화라는 사태에 봉착하여 2년간의 정체상황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한일회담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1964년 12월에 재개된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회담의 초점은 기본관계 문서의 작성이었다.

1964년 11월 23일 외무부가 주일본대사에게 보낸 한일회담 재개 훈령 제5항 문화재 문제의 이측 주장에 관하여 문화재의 반환은 일측 주장에 대해 “1905년 이래 불법부당하게 일본으로 반출된 모든 일본 국유 및 사유의 한국 문화재를 반환할 것”이며 문화협정은 “원칙적으로 문화협정체결에 동의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44)</sup>

또한 1965년 3월 24일 보고한 이동원 외무장관과 사토 수상 간 회담결과 보고에는 “일측은 동「김-오히라 메모」로써 문화재와 선박반환 문제가 소멸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고 하나 김종필씨 자신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가령 일측의 주장과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고 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동경에서 서명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비준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안의 타결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문화재 문제와 선박반환 문제를 별도로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토 수상은 문화재에 관하여서는 민간에게 반환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예 : 호시지마 닛트 의원) 사유 문화재에 대하여서도 전망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으로 기술되어 있다.<sup>45)</sup>

위 보고와 관련하여 1965년 3월 27일 주일대사는 문화재 문제에 관한 김-오히라 메모의 해석 차이에 대해 “연호 전문 제5항의 문화재 문제에 관하여는 일측 주장은 김-오히라 메모에 의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한국 문화재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인 바, 일측은 김-오히라 메모에 관한 양해는 한국문화재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따라서 금번 이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간의 청구권에 관한 합의사항 문안 제5항에서는 한일간의 청구권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고 해결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한국문화재 청구권을 제6항으로 해결하자는 타협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제6항이 가지는 의의는 어디까지나 한국문화재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견지에서 ‘문화재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되, 일본국으로서도 또한 문화협력을 증진한다는 견지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문화재 인도에 관한 기초적인 원리가 한국이 청구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과 일본은 권리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쌍방의 기본적 자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양자의 견해 차이를 근본적으로 명백히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재 문제에 관한 아시이나

43) 「毎日新聞」, 1964년 3월 21일자.

44) 이도성편, 앞의 책, 247쪽.

45) 이도성편, 앞의 책, 355 ~ 356쪽.

양해사항의 문화재에 관한 제6항과 같은 표현으로 타협이 된 것이오니 결과적으로 문화재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에 있어서 아측이 일본 측의 우호적인 협조를 추구하고, 권리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으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sup>46)</sup>

1965년 3월 31일 주일본대사는 청구권에 관한 합의문상의 유의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문으로 보고하였다.  
(중략)

##### 5. 문화재 문제에 관하여는

일본측 주장은 「감.오히라 메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며, 아측은 5항과는 관계없다는 의미에서 6항이 신설된 것임. 아측은 어디까지나 「문화재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일본국으로부터 한국문화재를 인도받아 온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취지이나 상반된 양국정부의 견해 차이는 상급(尙今) 완전 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결국 인도를 위한 협의에 있어서 쌍방의 기본적 자세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최악의 경우, 인도받을 종류와 양에 관하여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으리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람(JAW-03716의 제6항에 아래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sup>47)</sup>

이어 동년 4월 3일 주일본대사는 합의사항 보고에서 “6. 한일간의 문화재 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에 관련하여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본국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문화재를 인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48)</sup>

아울러 1965년 4월 13일 주일본대사는 제11차 수석대표회담 결과보고에서 금후 회담진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보고 한 바가 있다.

(중략) 라. 문화재에 관하여는 문부성 대표 1명을 추가하겠음

문화재에 대해서는 1965년 6월 21일 합의사항에 관한 최종승인 요구시까지 일체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한일 양국간에 합의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49)</sup>

이처럼 제7차 한일회담은 1964년 12월에 시작되어 1965년 4월 3일에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 주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 어업의 3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가조인이 이루어졌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의 제6항으로 “품목 그밖에 대해서 합의한 후 일본국에서 한국에 대해 한국문화재를 인도한다.”고 하는 간단한 규정이 마련되었을 뿐이었다.

한일양국 정부는 한일회담의 타결을 너무 서둘러서 그때까지 계속 쌓여 온 문화재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의 논의조차 무시하고 단숨에 타협한 것이다. 이에 관해 한일 회담기간 중 초기부터 약 7년간 문화재 협상실 무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미술사가 황수영(85세)씨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협상에서의 방침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본인은 주로 실무 자료를 챙겼지요, 외무부의 협상방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외무부와는 갈등은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회담초기부터 혼자서 문화재 협상 실무자로 약 7년간 참석하다가 회담의 종반에 이홍식씨가 참석하기도 했어요. 회담 초기에는 일본 측 문화재 협상파트너가

46) 이도성편, 앞의 책, 358 ~ 359쪽.

47) 이도성편, 위의 책, 362쪽.

48) 이도성편, 앞의 책, 363쪽.

49) 이도성편, 위의 책, 364쪽.

임명되지 않아 회담장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았지요. 회담 초기부터 일본 측은 한국문화재를 돌려줄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제출한 유물반환 목록은 전부 사유 문화재이니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와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제시나 시민 제보 등이 별로 없어 신문기사를 찾아보다가 일제시대부터 있던 국립박물관 유물대장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양산부부총 출토유물 약 500점과 창녕 교동 출토품이 동경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 이중 창녕교동 출토품 106점을 돌려받았으나 양산 부부총 유물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회담 후반에 나온 일본 측의 문화재보호위원회 미술공예 과장 마쓰시타(松下隆章)와 사이토는 일일이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실무급이었어요. 그때에는 한국의 전문가 집단의 인원이 작아 목소리가 약했어요. 국민들이나 문화재 기관 직원들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많이 반출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일본 측이 요구하는 구체 반출 근거를 제시해오는 경우는 없었지요.<sup>50)</sup>

따라서 합의사항에서는 부당하게 반출된 것을 돌려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반환’이라는 말과 정당하게 반출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증여’라는 말을 동시에 제외하고 ‘인도 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4월 24일~28일의 문화재 소위원회와 5월 중순의 전문가회의에서 약간의 토의를 거쳐, 일본 측으로부터 ‘인도품목안’이 제시되었던 것은 6월 11일에 열렸던 문화재 소위원회 제3차 회의로 미술품 363점, 전적류 852종이었다.

6월 15일 열렸던 제4차 회의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한일간의 협정안」이 제시되어 한국 측에서는 「한일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협정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이 제시되었다.<sup>51)</sup> 그 후에 정식 조인된 협정은 이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협정의 명칭에 대해서 일본측의 원안에 ‘문화재’의 용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이러한 문화재를 한국 측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한일 우호관계의 증진을 고려해서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 한국 측의 요망에 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52)</sup>라는 오히라(大平) 외상의 연설에서처럼 문화재 문제를 문화협력 문제의 일환으로 왜소화하려고 하는 일본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6월 18일에 열렸던 제5차 회의에서는 한국측의 요망에 응해서 인도품목에 72점이 추가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 제2조에는 “일본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에서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협정의 효력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 부속서에는 도자기·고고자료·석조미술품·장신구 등 176건 434점, 서적 163부 852권, 체신자료 20건이 열거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1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한때는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던 양산부부총의 출토품도 제외되었다. 일찍이 문화재 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고 당시 문부성 사회국장을 하고 있었던 미야지(宮地茂)는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던 이유를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알려진 임나(任那)시대의 고분출토품은 이 부부총 고분출토품 일괄이 유일한 자료<sup>53)</sup>’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하여 미야지(宮地茂) 문부성 사회교육국장은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래되는 문화재의 일부를 한국에 인도하는 것이 이의 취지이다. ‘인도한다’는 의미는 빼앗은 것을 의무적으로 반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의 기분으로서 시종일관하여

50) 미술사가 황수영씨와의 면담, 서울시 강남구, 자택, 2002년 11월 12일

51) 녹도 평화연구회 편, 「일본외교사」 제28권(동경: 녹도연구회출판회, 1973), 136쪽.

52) 일본국회, 「제46회 국회중의원 회의록」 제15호(동경: 국회, 1958), 23쪽; 高崎宗司, “日韓交渉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46쪽에서 재인용.

53) 미야지, “日韓交渉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 「日韓交渉」(1965년 9월호), 4쪽.



기증한다는 뜻이지만 한국 측의 사정도 있는 만큼, 결국 쌍방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고고학자인 곤도(近藤義郎)는 조선에서 조선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얻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지화……조선 사람의 열악한 생활과 교육사정……이라는 조건하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발굴·남굴(濫掘) 또는 그런 결과로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조장된 도굴이, 유적으로부터 격리시킨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조선사학자인 하타다(旗田巍)도 이와 똑같은 논지를 폈다.<sup>54)</sup>

더욱이 부속서의 리스트에는 한국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사유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문화재 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3원칙<sup>55)</sup>이 관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낙랑의 왕오묘 출토유물 등 조선반도 북부에서 출토된 것도 제외되었다. 한국은 조선반도 전역이 한국 영토이다 하는 입장에 서서 그것들도 한국에 반환하도록 요구했었으나 일본은 그 입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도’ 품목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관계의 제3조에 있어서 한국이 ‘국제연합총회결의 제195호9Ⅲ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에 있는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인 것은 확인했으나 한국영역이 휴전선 이북까지 미치는데,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남북분단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3월 20일, 범국민쟁위원회가 주최한 대일 굴욕외교 강연회에 4만 명이, 다음날인 21일에 열린 야당 주최의 조기타결 저지집회에도 3만 명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반대운동도 3월 26일의 동국대학생 데모를 시작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갔다. 한국의 신문들도 비판을 전개하였다. 대부분의 신문이 “과거 일본의 한국지배가 국제법에 위반된 실력행사에 의한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선언케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지고 있는 부채를 지불케 하며, 우리나라로부터 가져간 문화재를 찾아오라”든가, “청구권은 우리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는 너무도 적은 액수다.”고 주장하였다.<sup>56)</sup>

4월 3일에 3대 현안이 가조인되자, 학생들은 ‘가조인 무효화’, ‘리 라인 사수’ 등을 요구하여 데모를 벌였다. 10일의 서울대학 학생의 데모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데모가 확산되었다. 조인을 눈앞에 둔 6월 9일, 서울시내 11개 대학의 학생들이 데모를 재개하자 정부는 또다시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고, 12일에는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였다. 조인하는 날인 22일에는 계엄령하임에도 불구하고, 약 2만 5천명이 데모에 참가하였지만 조인을 저지시킬 수는 없었다.

일본에서의 반대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총(사회당·총평)계와 일본공산당계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한일조약보다는 오히려 원자력 잠수함 기항 반대운동에 뒤이은 베트남 반전(反戰) 투쟁의 주역을 떠맡았다는 감을 깊게”해 주었다.<sup>57)</sup>

한국의 신문은 한일조약의 조인과 비준에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6월 25일부터 12회에 걸쳐 “현해탄에 파도 높다-한일협정 정식조인 후에 오는 것”을 연재하여 한국이 일본의 시장화 될 일 등을 경고하였다. 또한 7월 28일부터는 9회에 걸쳐 “한일 투시도-비준이나, 저지나”를 연재하여 또다시 ‘일본의 재지배’를 우려하였으며, 「조선일보」는 6월 23일부터 5회에 걸쳐 “한일 협정의 문제점과 주요 항목별 내용” 제하의 분석

54) 「世界」, 1965년 9월호, 3, 7, 86쪽.

55) 외무부 정무국, 「제5차 한일예비회담 회의록」, 451 ~ 460쪽.

56) 한국공보부 조사국 편발행, 「한일 3대 현안 가조인에 관한 신문논조 종합분석」(서울: 공보부, 1965), 3, 9쪽.

57) 高崎宗司, 「검증한일회담」, 196 ~ 197쪽.

특집을 게재하고, 6월 29일에는 “문화재 오지 않는 와야 할 것, 철저한 무성의 철저한 양보” 부제의 김원룡 서울대 교수의 반환문화재의 점수계산 방식과 민간소장문화재 반환권장에 대해 우려하는 요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종합 월간지들도 신문에 뒤지지 않고 비판적이었다. 「사상계」는 7월에 긴급임시 중간호를 발행하여 “한일협정문의 분석”을 보도하였다.

김원룡은 문화재의 ‘반환’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인도’라고 한 것과 민간인의 소장품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sup>58)</sup>

「신동아」 8월호도 “비준반대의 절규”라는 제목의 기사 24쪽과 강원룡의 “이대로는 비준할 수 없다” 등 비준을 반대하는 논문 4편을 게재하였다.

비준국회(제51회 임시국회)는 1965년 7월 12일에 소집되었지만 야당측의 반대로 혼란에 빠졌다.

8월 3일에는 ‘한일간 조약과 제협정 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려 이동원 외무장관이 제안설명을 행하였다.

특별위원회는 11일에 불의습격으로 심의를 중단하고 비준안을 일괄해서 가결하였다. 야당은 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저항했지만, 14일의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심의로 비준안을 가결하였다.

일본 중의원에서 비준은 1965년 10월 5일, 제50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13일에는 사토 수상은 양원(兩院)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행하였다. 야당주장에 반론을 펴면서 이번의 한일조약은 “평화와 우호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우려성”은 “단연코 있을 수 없는 일”, “어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 온 어업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등을 언명한 것이었다.<sup>59)</sup>

중의원 본회의가 11월 8일, 의장 직권으로 재개회 되었으며 11월 12일 의장의 발의(發議)라는 전례없는 형태에서 비락치기로 가결하였다.

12월 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가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1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한일조약제협정과 이와 관련되는 국내 3개 법안을 가결하였다.

“매스컴의 논조 및 여론은 한일조약에 대하여 대략 중립적, 또는 얼마간 호의적”이었다.<sup>60)</sup>

### 3. 협상의 결과: 1965년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회담의 목적은 본래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유래하는 ‘과거문제’를 처리,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1951년 회담개시 이래 1965년 기본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14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식민통치 평가를 둘러싼 쌍방의 인식 차이에 있었다.<sup>61)</sup>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을 타결한 그릇된 한일 협정의 체결 조인으로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은 회담초기부터 계속 논의된 내용과는 상이하게 「1965년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sup>62)</sup>의 부속서

58) 「사상계」(1965년 7월호), 50, 66, 73, 79, 85쪽.

59) 「朝日新聞」, 1965년 10월 13일자.

60) 内閣官房内閣調査室, 「日韓 条約締結をめぐる内外の動向」一九六六年, 18쪽.

61) 이원덕, 앞의 책, 293쪽.

62)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체결되었고, 1965년 12월 18일 발효되었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에 열거된 도자가·고고 자료·석조미술품·장신구 등 176건 434점, 서적 163부 852권, 채신자료 20건을 돌려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시에 과거의 식민지배에 따른 법적 문제를 다섯 항목에 걸친 조약 및 협정에 의해 해결하려고 의도한 한일 협정은 한일간의 구식민 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고 앞으로의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협정체결 후 37년 간의 국제환경과 한일간의 국내사정은 「1965년의 문화재협정」을 비롯한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파생하였다.<sup>63)</sup>

「1965년 문화재협정」은 모두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딸린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이 추가되었다.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의 전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국민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한국 측 대표는 일본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 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본 협정은 전문에 간접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과거 한국유출 일본소장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2조 규정은 「1965년 문화재협정」의 핵심내용으로서 일본정부는 부속서에 열거된 반환대상의 문화재를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한국정부에 인도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 1,432점(품목)만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동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문화재와 관련하여 제2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sup>64)</sup> 그러나 본 협정의 일부분인 「합의의사록」에는 양국대표의 뜻을 표명하는 형식을 통하여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의 반환에 관해 향후 기본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즉 일본국민이 사유하고 있는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기증의 형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의 희망과 이러한 문화재가 자발적으로 기증되도록 일본정부가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정부의 “권장(勸奨)” 노력의 표명은 합의의사록(同合意議事錄)에서 향후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한 조약,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 어업에 관한 협정, (4)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5)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5)까지의 각각의 협정에는 각 항목에 대한 합의의사록이 추가되었고,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덧붙여졌다. 金楨健 外, 前掲書 982-1004쪽 참조. 이후는 ‘1965년 文化財協定’으로 표기함.

63) 예를들면, 1970년의 UNESCO 협약, UN 총회에서 문화재반환논의, UNESCO 정부간위원회 발족, 최근의 일본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UN 인권위원회에서의 배상책임, ILO 내에서의 정신대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北·日 修交協商의 可視化 등이다.

64) 白忠鉉, 「日本所藏韓國文化財返還研究」(서울:문화재관리국, 1984년 12월), 5쪽.

반환(返還)이 양국간의 문화협력(文化協力)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무성을 갖고 있음을 내포하였다.

이는 본 협정 제 1 조에서 천명한 “문화관계증진(文化關係增進)을 위한 가능한 협력(協力)”에 합치(合致)하는 것이고, 1965 年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條約)의 전문(前文)과 제 4 조의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合意)한 정신에 비추어 UN -특히 UNESCO-를 중심으로 전개될 문화재(文化財)의 반환(返還)에 관한 국제법질서(國際法秩序)의 발달에 부응하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해석 된다.<sup>65)</sup> 중요한 점은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양국간에 합의되지 아니한 일본정부차원의 소장품인 한국문화재의 처리문제인데, 본 협정 제2조의 규정으로 그 반환이 종결되었거나,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협정의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협정의 제목에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표현이 없다. 「1965년 문화재협정」은 “양국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라는 피상적 표현으로 일본의 문화재반출 및 약탈에 대한 불법성 천명을 회피하고 있고, 단순한 문화협정으로 완화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소극적인 문언규정이다. 협정 제1조는 ‘문화재의 반환’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합의의사록’의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일본국민의 사유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한다는 것이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권장하겠다는 뜻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1965년 문화재협정과 동 합의의사록」의 추후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본정부의 ‘권장’ 표명은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증되어도 좋다는 것임을 언급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우리는 일본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쪽으로 해석해왔다.<sup>66)</sup>

셋째, 본 협정 제2조의 부속서에 열거된 반환대상품목 이외의 국·공유 문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정부가 자발적 기증을 권장한다는 사유문화재에 대해서 본 협정은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해외유출 문화재는 총 20개국 75,000여점으로 이중 일본에 약 절반에 달하는 34,000여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고미술 중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공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1할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정설이고 그것에 의하면 이는 컬렉터에 의해서 소장되어지고 있는 한국문화재는 실로 그녀가 지적한 대로 30만점 가까이 달하고 있다.<sup>67)</sup>는 사실이다.

한일 문화재 반환협상은 1960년대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경제발전 수준으로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폐쇄적으로 이끌며 협정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 언론과 야당을 힘으로 억압하고 한일협정을 체결·비준하였다. 한일 문화재 반환협상은 냉전과 경제의 논리라는 미국의 개입에 의해 국내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자금도입이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을 타결한 그릇된 국제협상의 결과로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계속 요구된 일제강점기 36년 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반환 받지 못하는 회환을 남겼다. 이러한 배경으로

65) 백충현, 앞의 논문, 5~6쪽.

66) 배재식, 백충현, 이상면, “한일 간의 법적 제문제-1965년 제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法學」 제35권 2호 (1994년 10월), 11쪽.

67) 林容子, 앞의 논문 59쪽

협정체결 후 42년간 국제환경과 한일간의 국내사정은 ‘1965년 문화재협정’을 비롯한 ‘한일 협정’을 둘러싸고 정신대논의, 한일 역사교과서 왜곡시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4. 일본 개인 소유 한국 문화재에 대한 “권장” 증진방안

### 기증 및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상의 환경 변화

1965년 4월 3일 이동원-시이나 한일 양국 외무장관 간에 합의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

#### 5. 청구권의 해결

“관계협정의 성립 시 존재하는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조항에 근거하여 재일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 측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한차례 일본 정부가 한국의 궁중유물 전시관 설립을 위해 1991년 4월 “영친왕비의 복식양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영친왕과 왕비의 복식유물 227점을 한국에 기증한 사례가 있다. 그 밖에 민간차원에서 2006년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한 일본의 개인 소장자는 총 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2003년 12월 9일 그동안 30년 이상 가입을 미루어 왔던 유네스코(UNESCO)의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 수단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재일 한국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라는 증거가 있다면 동문화재를 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일본의 문화재 공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재일 한국문화재의 약 90%를 개인소장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내 전문가들에게는 주지의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특히 아시아권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나 일본 내 불교 미술 문화재의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정부도 우수한 미술품들이 미술관에서 공개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998년 “미술품의 미술관에서의 공개촉진과 관련된 법률”이 공포되었지만 미술품의 보유에 관한 과세 문제에 있어 문화재가 토지, 가옥 등과 같은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간주되어 고정 자산세가 부과되며, 중요미술품에 대해서만 고정자산세, 특별 토지 보유세, 도시계획세가 면제 된다는 점, 미술품의 공개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없다는 점, 미술품을 미술관에 기증 시 자산 매각 소득은 비과세이지만 과세소득 공제 가능 금액은 미술품의 취득가격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일본 내 사유문화재의 비장(秘藏)과 사장(死藏)을 초래하고 있다<sup>68)</sup>는 일본 내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1965년 한일 회담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되는 ‘과거문제’를 처리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

68) 林容子, 앞의 논문. 69-73쪽 참조

립하는데 있었으나 국내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그릇된 협상의 결과로 일제강점기 36년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수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03년 12월 9일 일본이 유네스코(UNESCO)의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 수단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한일간 문화재 반환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상의 환경이 조성된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가. 한일 민간 차원의 협의체 신설

재일 한국 문화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양국 문화재 연구자간의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내 한국 문화재의 일본 유출에 깊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 한국 내 문화재 전문가가 상호 협력하여 협의체를 구성, 문화재의 소유력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명백히 하는 창구로서 한일간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 나. 문화재청의 앞으로의 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꼬 교수는 일본소재 한국문화재가 약20만점에 달하며 이중 90%가 민간소유 문화재임을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본 내 민간소유 한국문화재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아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의 환수협상에 새로운 물꼬를 틀 것을 제언한다.

- ① 일본에서의 문화재의 조세 제도와 공개제도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전문가용역)의 추진
- ② 위의 연구결과에 대해 「1965년 문화재협정」의 합의의사록 “일본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행 조치 촉구
- ③ 기증 권장유도를 위한 대일본 민간 소장 문화재에 대한 심층 홍보의 추진 및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되찾기 범국민적 운동전개

# Reflections on the Limitations of and Overcoming Measures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1965

## I. The Process Under Which Korean Cultural Properties Flowed Out to Japan

1. Cultural properties plundered during Toyotomi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1592-1598), including Mongyudowondo by An Kyon Buddhist statues and scriptures, Sinjon-bon and Dokchon-bon, that were plundered following an arson set by troops of Kato Kiyomasa, kept at Bulbuksa Temple.
2. Cultural properties illegally excavated and taken to Japan after Korea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in 1910, including the following:
  - A. Artifacts excavated in Japanese-conducted surveys of Korean historical remains
  - B. Articles from large-scale excavations illegally conducted by the Japanese
  - C. Bibliographies
3. Cultural properties legally acquired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4. Cultural properties purchased and taken to Japan following the end of colonial rule in 1945

## II. Background and Process of Korea-Japan Negotiations for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Displaced to Japan

### Background of Korea-Japan Negotiations for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Displaced in Japan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U.S.-Japan Peace Treaty in San Francisco in September 1951, Korea and Japan held preliminary rapprochement talks in Tokyo in October 1951. On October 30, 1945, the Chin-Tan Society adopted a resolution proposing the return of books plundered by Japan to the U.S. Far East Military Headquarters via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Seoul. In December the society submitted a list of plundered books and treasures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On March 15, 1949, the Reparation Deliberation Council to Japan published Volume 1 of its report demanding reparations for plundered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212 books and 837 art works and antiques.

## Proceedings and Features of Korea-Japan Talks

- A. Long-term talks spanning 14 years during which over 1,500 sessions were held
- B. Tripartite talks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S., with deep U.S. involvement
- C. Several complicated issues such as basic relations, claims and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ere taken up at once

## Agenda of the Korea-Japan Talks

### A. The first round of the talks

The first round of the talks was held in Tokyo from October 20, 1951 to April 21, 1952. An outline of the proposed Korea-Japan property claims agreement was submitted at the first round of the claims committee meetings held on February 20, 1952. Korea requested the return of ancient books, art works, antiques, national treasures, negative plates of maps, and ingot gold and silver that were taken out of the country. Upon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Korea requested the immediate return of the above-mentioned cultural properties to Korea and completion of the return within six months therefrom.

The first round of Korea-Japan talks soured in February 1952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opinion regarding those properties owned by Japanese in Korea. No specific discussions took place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 B. The second round of the talks

The second round of the talks was held from April 15-July 23, 1953 in Tokyo. At the second meeting of the properties and claims sub-committee held on May 19. Korea proposed four items including a request for the immediate return of and investigation into "Korean treasures, historical mementos (artistic handicrafts, ancient books and others)." Japan replied that an investigation was underway, which it said would be soon completed.

At the third meeting held on June 15, Korea inquired into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Japan replied that an investigation was underway in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Ministry's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and that an administrator was assigned to take full charge.

### C. The third round of the talks

The third round of the talks was held from October 6-21, 1953 in Tokyo. Sub-committee members from both sides were introduced at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s first meeting. A second meeting was held on October 5. Japan repor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requested by Korea revealed that "almost all of them were acquired through proper means." It added that "Japan has no obligation to return them, but will consider sending back those President Syngman Rhee is interested in separately."

In refutation, Korea asserted that all the cultural properties the return of which it requested



"were presumed to have been illegally taken out of the country through the institutions of Japanese authorities during their 36-year colonization of Korea."

In the wake of the ruptured talks, the Director-General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s Information and Culture Bureau issued a statement claiming the propriety of Japan's assertions.

#### D. The fourth round of the talks

The fourth round of the talks was held from December 1957 to April 1960. In March 1957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 Nobusuke promised the partial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to Korean Minister in Tokyo Kim Yong-shik, under an accord reached at an official Korea-Japan working-level conference in June. In February 1957 Korean art historian Hwang Su-young (a member of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 at the time) submitted an opinion to the government that "Korea should not receive cultural properties from Japan until a conclusion is reached regarding which items of cultural property are to be returned and the principles under which they are returned."

On April 16, 1958, Japan returned 106 items of remains excavated in Kyodong, Changnyong County, North Geongsang Province, including 50 ceramic vases, 20 ceramic lids and 10 ceramic plates. On April 24, Tokyo Shimbun repor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ecretly promised to return Korean royal house treasures in exchange for the repatriation of kidnapped fishermen, and that some items had already been sent back.

On May 13, Mainichi Shimbun published an editorial entitled, "Too Many Concessions in Japan-Korea Talks." On May 31, the House of Councilors' Foreign Affairs Committee took up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ies for the first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though it does not recognize legal grounds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made the decision to present items of cultural property as a gift to Korea in honor of their independence. One hundred and six items of cultural property have been presented under this decision," the House of Councilor said.

### Detailed Process of the Talks

#### A. The fifth round of the talks

The fifth round of the talks took place from October 25, 1960 to May 15, 1961. Four committees were formed, among them the basic relations and Korean claims committees. A decision was reached to place the general claims, vessel and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s under the Korean claims committee.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 opened its first session on November 11, at which Japan presented the following three principles:

a) State-owned cultural properties will in principle be returned. 'Returning' does not mean 'sending back' but 'contributing.' An investigation of foreign examples revealed those cases involving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and those of India, the latter of which involved a few cases but no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pproximately 300 items kept at national

museums will be sent back. It is difficult to send back cultural properties kept at national universities because they are reluctant to comply with government requests.

b) Privately-owned cultural properties cannot be turned over.

c) The delivery of cultural properties is based on politic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not on legal obligation.

Korea refuted Japan's stance, arguing that it is "proper for Japan to return Korean cultural properties, and expressing a wish to hold a further discussion on privately-owned cultural properties on the grounds that they involve 'complicated problems'."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 at its second session on February 1, 1961 agreed to hold an informal expert meeting separately, which took place on March 7. At the meeting, Japan was represented by Matsushida, the head of the Arts and Artistic Handicraft Department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Commission, and Saito, a staff member of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team. Hwang Su-yong of the Korean delegation explained instances of "illegal outflowing" of cultural properties as the basis of Korea's demand for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He renewed his explanation at a second meeting of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 held on May 8.

#### B. The sixth round of the talks

Korea's claims against Japan were settled under the formula of economic cooperation during the sixth round of the Korea-Japan talks held from October 20, 1961 to April 1964 in Tokyo.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 held a total of seven sessions and the expert settings convened for a total of six sessions. Korea repeatedly demanded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showing evidence that they were improperly taken out of the country. Japan repeated its position that it has no obligation to return them, arguing that: presentations from the Korean side are hardly convincing as clear-cut evidence, and no precedents can be found in international law that cultural properties must be returned to countries where they were excavated.

"In an attempt to rationalize its stance that it cannot return cultural properties to Korea as well as to obscure the whole issue, Japan shifted the subject to the issue of bilateral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bserved Korean arts historian Yi Hong-shik. Korean councilor Choi Young-taek proposed at the 15th preliminary contact of the second round of political talks on November 11, 1962 that "the cultural properties issue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because the issue along with that of vessels is separate from the claims issue, and because the cultural properties issue will remain unresolved even if the claims issue were settled." Korea repeated its demand for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at the sixth round of the experts meeting held from February 13-April 3, 1963. Japan proposed a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at the first round of the experts meeting held on February 13.

The cultural properties sub-committee held a session on March 21, 1964. Japan proposed the conclusion of a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Korea refuted the proposal: "We prepare

a package after seeing the goods to be packaged. It's illogical to prepare a package before the goods seen. The return of our cultural properties must be settled first."

The Mainichi Shimbun published an editorial on March 21, 1964 that stated: "None of the ancient cultural properties that Korea demands the return of came into our possession through illegal excavation or plundering. All of them were brought to our country through normal routes at the time," and "We find it runs against international practices for Korea to now demand return."

### C. The seventh round of the talks

Basic relations were settled during the seventh round of the talks that began on December 3, 1964 in Tokyo. The outcome of a meeting between Korean Foreign Minister Yi Dong-won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ato Eisaku was reported on March 24, 1965.

Japan asserted that the cultural property and vessel issues were resolved in a memorandum signed by Korean political leader Kim Jong-pil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Ohira. But since Kim Jong-pil himself denied the memorandum, and also because the prospects for Korea's ratification of a Korea-Japan rapprochement agreement became grim due to strong protests at home, the Korean side asserted that the issue of Japan's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dealt with separately. Japanese Prime Minister Sato Eisaku said that since the private sector mounted a campaign for the return of privately-owned cultural properties to Korea, citing the example of Rep. Hoshijima Nit, the prospects for the endeavor would soon be known.

Japan presented a compromise on March 27, 1965. The compromise called for agreement on complete termination and resolution of Korea's claims against Japan in item 5, and settlement of Korea's claims on its cultural properties in item 6. Agreements on Korea's claims against Japan and other issues were initialized on April 3, 1965. As for cultural properties, a simple provision under item 6 states: "Japan will transfer to Korea its cultural properties after an agreement is reached on the items and other matters involved."

"A proposed list of items to be transferred" was presented at the third session of the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on June 11, 1965, which was preceded by discussions at the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between April 24-28 and discussions at the experts meeting in mid-May. The list contained 363 pieces of art and 852 classical books. Seventy-two items were added to the list at Korea's request at the fifth session of the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on June 18. Japan submitted "a Korea-Japan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draft"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on June 15. Korea submitted "a draft outline of a protocol concerning the resolution of the Korea-Japan cultural property question and a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The Korea-Japan cultural property and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was concluded on June 22. Listed in the annex were 176 pieces of porcelain, archeological specimens, 434 stone art pieces and accessories, and 163 books containing a total of 852 volumes and 20 communication

materials.

National treasures and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were excluded. Artifacts excavated from a tomb in Yangsan County, South Gyeongsang Province, were exclud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the only existing relics of the Imna tribe in ancient Korea. The delivery to Korea of some Korean cultural properties kept in Japan is considered a contribution to Korea as part of the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aid Miyaji Shigenu, Director-General of the Social Educ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Delivery of privately-owned cultural properties requested by Korea was excluded. Relics excavated from Nakrang's Wang-O tomb in North Korea were excluded.

Protests in Korea against the rapprochement agreement: In the wake of street protests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gainst the Korea-Japan rapproch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a decree calling for school closures on June 9, and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 on June 12. Newspapers and periodicals were critical of the accord. The authoritarian Korean government concluded and ratified the Korea-Japan rapprochement agreement, suppressing opposition from students, citizens, the press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contrary, no protests were held in Japan. Japan paid more attention to a campaign against a U.S. nuclear-armed submarine in a Japanese port than the Korea-Japan rapprochement agreem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atified the Korea-Japan rapprochement agreement on November 11, 1965 at the urging of the speaker. The House of Councilors ratified the agreement on December 11, 1965. Press comments were favorable.

### III. Outcome of the Negotiations

#### **The 1965 Agreement Concerning Cultural Property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ereafter 'the 1965 Cultural Property Agreement')**

##### **[Full text of the 1965 Cultural Property Agreement]**

In the hopes of contributing to the academic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research regarding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articles:

Article 1: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hall cooperate to promote the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ir peoples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Article 2: The Government of Japan shall transfer to the Korean Government cultural properties enumerated in the Agreed Minutes within six months according to a mutually consented procedure.

Article 3: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hall provide conveniences so that citizens of the contracting Party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their cultural properties

housed in art galleries, museums, libraries, and other academic and cultural facilities of another Party.

Article 4: The present Agreement should be ratifie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in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present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re exchanged.

#### **[Agreed Minutes to the 1965 Cultural Property Agreement]**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d that they hoped that Korean cultural properties privately-owned by Japanese citizens could be donated to Korea. Japanese representatives stated that they would recommend the voluntary donation of these cultural properties to Korea since it sha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Review of the 1965 Cultural Property Agreement**

In light of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their cultures," the Agreement makes its main goal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to Korea. As a key article, Article 2 imposes a legal duty on the par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transfer cultural properties enumerated in the Annex to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a mutually consented procedure.

It does not make mention of how to deal with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not listed in the Annex. As can be found in the Agreed Minutes, the two countr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regard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guid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Annex.

#### **Review of the Agreed Minutes**

As found in the Japanese representatives' statement: "recommend the voluntary donation," the Agreed Minutes makes clear that the continuous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will contribute to the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estifies that Japan has the positive obligation to return Korean cultural properties.

The Agreed Minut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cooperation to promote cultural relations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under Article 1 of the Agreement. The Agreed Minutes can be interpreted as Japan's promise to cooperate with Korea while keeping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regard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led by the United Nations in general, and by UNESCO in particular.

\* It is difficult to state whether Article 2 rules the end of return (or waives claim rights) concerning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Annex and are own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upon which the two countries have not yet agreed.

## Some Problems in the Agreement

Firstly, the terms "return" or "restitutio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are not found in the title of the Agreement. It avoids pointing to the illegality of export and pillage of cultural properties, thereby making the Agreement appear to be a kind of cultural agreement.

Secondly, "Permissive" Clause. Article 1 does not make mention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Upon review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Minutes, the Japanese government's statement on "recommend" is not seen as a concrete measure. In contrast, Korea interprets the provision as a signal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ctive efforts.

Thirdly, solutions have not been made to facilitate the return of national and public cultural properties as well as for those that are privately-owned.

This Agreement is one tha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concluded under the guise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1960s, which was a period of economic difficulty, despite large-scale resistance. Following the conclusion, many problems surfaced in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dispute surrounding history textbook distortion between Korea and Japan."

### \*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Approximately 34,000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pproximately 300,000, 90% of which are held in private collections (as argued by Prof. Yoko Hayashi).

## IV. How to "Recommend" the Return of Civilian-Owned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Environment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as settled under a provision in the Agreement concerning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states, "The claims including those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igned at San Francisco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With it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December 9, 2003), Japan assumed the duty of returning any cultural properties evidenced to be illicitly import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concerning the Transfer of Crown,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returned the costume relics to Korea in the form of a donation. Princess Yi Bangja's Costume (concluded on April 1991).

##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in the Cultural Property Disclosure System in Japan**

Approximately 90%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are held in private collections, most of which are closed to the public. Japan holds the largest coll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Asia, but most Japanese Buddhist cultural properties have yet to be disclosed.

### **A. Problems: the 1998 Act on the Promotion of the Public Disclosure of Works of Art in Art Museums.**

- Tax exemption (fixed-assets tax, special land ownership tax, urban planning tax) for important works of art. No tax breaks for publicly disclosed works of art

## **Future Tasks for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to Korea**

### **A Establishment of a Korea-Japan (civilian-centered) consultative body**

The body consists of experts on the illicit import of cultural properties in each country, and is required to play a role in clarifying historical facts

### **B. Fo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 To conduct survey research into the taxation and public disclosure system of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 To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for facilitating the voluntary donation of privately-held cultural properties enumerated in the Agreed Minutes.
- To actively promote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in order to urge their voluntary donation, and to launch a national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Presentation]

#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The Issue of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rts Management

•

하야시 요코  
Yoko Hayashi

일본 쇼비대학교 예술경영학부 교수  
Professor, Graduate Program of Arts Management, Shobi University, Japan,  
President, Artwoods Co. Ltd.



#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서문

2002년부터 2004년 여름에 걸쳐 맨스필드 재단, 아시아 재단, 퍼시픽 포럼의 3개 미국 재단의 초빙으로 한일 간의 제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 참가하였다. 안전보장과 외교 분야의 전문가, NGO, 문화,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하는 각국 대표가 초빙되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각각의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논하게 되었을 때, 필자의 카운터 파트인 한국의 미술사가로부터 "일본은 식민지 시대에 많은 조선의 분묘를 발굴하여 조선 미술품을 부당하게 일본으로 가져가서는 반환을 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많은 보물을 포함하여 30만점 이상의 조선 문화재가 있고, 한국의 연구자는 자국의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본으로 보러 가야만 하며, 가더라도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나는 문화 분야를 대표하고 있기는 했지만 전공은 예술경영(art management)으로서 조선 미술의 전문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조선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한국의 미술사가가 지적한 것은 약탈 문화재 문제인데, 약탈 문화재라고 하면 그 때까지 내가 생각하던 것은 대영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별칭: 엘긴 마블)이나 나치스가 약탈해간 미술품들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조선의 미술품을 약탈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일본대표의 입장에서 변호도, 사죄도 못하고 나 나름대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 기회에 보고 하기로 약속하는 데 머물렀다. 이것이 본 원고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보자 다양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조선미술과 동양미술 전문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사정을 이야기 하자 일반인의 경우 "그렇다면 돌려주면 되잖아"라는 식으로 남의 일처럼 대답하였다. 한편 일본의 동양미술 전문가에게 말을 하자, "이 건은 이미 매듭지어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과거의 일에 대해 조사하는 겁니까? 한일 문화교류가 매우 우호적인 상황인데,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은 시간낭비이며, 왜 좀더 발전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

본 문제에 대해 양국 국민의 의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이 낮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결여 때문에, 다른 한일 역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양국의 교류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양국정부의 방침의 영향 등을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측에서도 정부 주도의 우호적인 외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적어도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조금씩이나마 우호적으로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5년 이후 일본인 수집가가 자의적으로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국교수립 이후 한국문화가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초래한 경제효과를 숫자로 분석하는<sup>1)</sup> 등 단순한 감정론을 벗어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분석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1) 서울대학경제학 교수인 이영훈은 저서인 「Colonial Modernity of Korea」에서 한국 학자로는 처음으로 식민지 정책이 초래한 경제효과를 수치로 나타냈다

조사를 하면서 본 문제는 일본의 조선식민지정책, 한일협정 등의 역사문제와 깊이 관여되고 있음은 물론 현재의 국제법상에서의 약탈 미술품 취급문제와 일본에서의 미술품 관련 세제, 공개제도의 미정비 등 국내외의 예술경영상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첫 번째로는 제일 한국문화재의 역사적 경위, 두 번째로 국제적 및 일본의 국내사정이 안고 있는 예술경영 관련 문제의 고찰, 즉 많은 제일 조선미술품의 반환과 공개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 문화재 반환, 한일협정, 문화재에 대한 접근, 유네스코

## 제일 한국문화재의 역사적 경위

### 제일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1989년 재미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1991년 재유럽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이어 1993년부터1996년에 걸쳐 일본의 국·공·사립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대학에 소장된 한국문화재의 실태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한국 이외 국가의 미술관 소장품에 한정해서 보자면 질과 양의 측면에서 한국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미국이고, 이어서 유럽,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순서이다.) 한국의 고고학과 미술 전문가를 실제로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에 파견하여 문화재 실물을 보고 정리한 상세한 조사 결과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알려진 것만으로 2만 9000점 이상의 한국문화재가 소장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쿄 국립박물관의 오후라 컬렉션 1121점,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아타카 컬렉션 약 800점, 대화문화관(大和文華館)의 95점, 민예관의 약 1500점, 교토 국립박물관, 나라 국립박물관, 네이라쿠 미술관, 이데미츠(出光)미술관, 송강(松岡)미술관, 네즈(根津)미술관, 도쿄대학 교양학부 미술박물관, MOA미술관, 고토 미술관, 도쿄 예술대학 대학미술관의 이름과 이들 시설의 소장품이 보고되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약탈된 것도 아니고, 또 다 불법으로 국외 유실된 것도 아니다. 정당한 상거래를 통해 취득된 것, 제일한국인 수집가가 기증한 것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고미술 중에 박물관과 미술관에 공개된 것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정설이며 그렇다면 개인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는 앞서 말한 한국의 미술사가가 지적한 대로 30만점에 이르는 셈이다.

### 제일 한국문화재의 유래

앞서 언급한 미술관과 박물관 컬렉션의 유래 즉 그 컬렉션이 어떤 형태로 일본에 반입되었는가는 '아스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교류 역사에 의한 것',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출병으로 약탈된 것', '일본의 조선식민지대에 도굴된 고고유물', '식민지시대에 정당하게 취득된 미술품과 고고유물', '전후 일본국 내에서 구입된 것'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작품과 고고유물에 관한 문헌 부족과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유래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일본의 사원이나 다이묘(지방 영주)가 발주하여 구입해서 반입된 것도 있고, 또 불법으로 약탈에 가까운 형태로 반입된 것도 있다. 일본에 반입된 시기는 무로마치 시대(1392~1573)이전, 히데요시의 조선침공 시기, 한일합병 이전과 그 사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뉜다. 이 중에 한국이 문제로 삼는 것은 히데요시의 침략에 따른 약탈과 한일합병이전과 그 사이에 조선총독부의 관리 하에 실시된 고적조사사업에 의한 발굴문화재 및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에 의해 파괴, 도굴, 약탈되어 일본으로 반입된 문화재이다. 일본인에 의한 문화재 파괴와 약탈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회담 후에 한국 측이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일회담의 문화재부회 한국 측 위원이던 황 수영의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와 이홍식의 「제일 한국문화재 방비록」이 주요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2004년 일본어로 번역된 이 구열의 「잃어버린 조선문화:일본 점령하의 한국문화재 비화」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상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배경에는 한국에서 고고학이나 미술사 연구가 일본보다 100년 늦어졌으며<sup>2)</sup> 일본이 한국을 합병할 당시 한국에는 그런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옛날부터 한국문화재의 가치를 높이 산 일본인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로 부터 부당하게 싼 값으로 사들인 점도 있다. 개도국이 자국 문화재의 가치를 몰라서 싼 값에 외국에 팔아넘긴 사례는 많다.

한편, 예외적으로 같은 시기에 조선에 있던 일본인이면서 1924년 '조선민족박물관'을 조선에 설립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과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형제와 같이 한국인이 인식하지 못하던 조선의 문화재와 미술품의 아름다움에 순수하게 감동하여 수집하고 또 그 우수성을 널리 문장으로 조선과 일본에 전한 일본인도 있었음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아사카와 형제와 야나기는 일본으로 귀국할 때 자신들이 수집한 컬렉션의 거의 대부분을 조선민족박물관에 남긴 채 돌아왔으므로 그것들이 현재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또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본에 가져온 컬렉션은 도쿄에 설립된 일본민예관에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고려미술관<sup>3)</sup>과 같이 전후 한국인 수집가가 일본에서 수집한 조선미술품을 일본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제일문화재와 그 내력

한국 사람들이 현재 문제시하며 반환을 희망하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실시된 조선출병 때 무장들이 전리품으로 약탈한 문화재(유명한 것은 가토 기요마사가 경주 불국사를 불태워서 파괴한 것과 약탈된 불상과 불전)와 한일합병 이전과 합병 시에 일본에 반입된 문화재임은 앞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의 수량이 방대하고 개인이 소유한 것도 많으며 전란 중의 혼란과 옛날 물건이기에 내력이 분명치 않은 것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가 서울에서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중앙박물관장, 미술사가 및 역사학자로부터 언급된,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반환되기를 희망하는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시에 약탈된 것이든 한일합병 시기에 일본에 반입된 것이든 무조건 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어떻게 약탈되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본인이 약탈해 한국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지적된 몇 가지 대표적인 제일 한국문화재에 대해 그 유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 인터뷰 이구열씨 2004년 3월 31일 서울에서.

3) 제일 한국인 컬렉터인 고정 조문씨가 자신의 조선공예미술 컬렉션을 가지고 창설한 사설 미술관. 고정 조문씨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컬렉션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자 일본의 조선미술학자와의 교류를 통해 교토의 자택을 개조하여 1988년 고려미술관을 설립하였다.

### 야스쿠니 신사의 '북관대첩비'

현재 야스쿠니 신사 안에 눈에 띄지 않게 놓여 있는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용군이 도요토미 군을 격파한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인데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약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일본 정치가가 이곳을 참배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켜 왔다. 그 후 이 비는 2005년 10월 12일에 한일 양국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의 3자가 합의문서에 동의하고 외무성 입회 하에 한국대사관에 인도되었다. 20일에 민간기로 한국에 운반되어 국립박물관에서 일반 공개 된 후 최종적으로 북한에 인도되었다.

### 안견 作 '몽유도원도, 텐리(天理)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풍경화가인 안 견의 '몽유도원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급 작품으로 많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이 일본에 소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전문가를 제외한 일본 국민은 모른다. 이 작품은 1447년에 당시 궁정화가였던 안 견이 세종대왕의 셋째 왕자가 꿈을 꾸 내몽, 즉 도원에서 노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1950년에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국보이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 중요문화재로 바뀐 것이다. 텐리(天理)대학 도서관의 스즈키 오사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53년경 도쿄의 골동품상을 통해서 천리교(天理教)의 나카야마 신바시라)가 입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원래 가고시마의 시마즈 시게오 남작의 소장품이었는데 이 집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히데요시 시대에 입수한 것으로 추측된다.4) 이 작품은 문화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의뢰에 응답하는 형태로 과거에 2차례 한국에 빌려준 적이 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협회가 작품 대출을 신청했을 때는 사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작품 소유권에 대해 클레임을 걸지 않는다는 확약을 요구해서 대출이 실현되지 못했다5)

### '오쿠라 컬렉션과 '가루베 컬렉션, 도쿄 국립박물관'

한국이 제일 한국문화재 반환에 대해 언급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쿠라 컬렉션'과 '가루베 지은 컬렉션'이다. 전쟁종료 전의 한반도에서 남조(南朝)전기회사 사장이던 오쿠라 다케노스케(小創武之助)는 점령하의 조선에서 가장 탐욕적으로 조선미술을 수집한 수집가로서 한국에서는 악명 높다. 전후, 오쿠라는 오쿠라 컬렉션 보존회를 설립하였는데 그의 사망 후 이 보존회는 1982년에 각 분야의 컬렉션 약 1,000점을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것이 도쿄 국립박물관 동양관의 조선고고학 전시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65년의 '문화재 인도협상'에서도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했는데, 당시 오쿠라 개인의 사유 컬렉션이었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이 컬렉션이 악명 높은 것은, 작품의 질과 양도 문제이지만, 수집할 당시의 악행이 많은 문헌에 남아 있는 점과 한일협정체결 시에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약탈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사유 컬렉션이라는 이유는 한 점도 반환이 안 되고, 나중에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국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가르베 지은 컬렉션은 고등보통학교 교사로서 조선에 부임하여 총독부와 관학과는 다른 입장에서 백제 유적을 조사한 인물의 컬렉션으로 그 일부를 기증하고, 나머지를 1932년에 도쿄 황실

4) 스즈키 오사무-, 비브리오 No. 65 p.47-48, p.70.

5) 인터뷰 백충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장 2004년 3월 30일.

박물관에 매각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발굴조사로 입수한 고고유물’, 국립박물관

일본인이 소개하기까지 조선에는 고고학이라는 개념이 없고 고분 발굴도 없었다. 일본총독부정부는 한반도의 근대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한반도의 고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대 조선총독이던 이토 히로부미는 이조 왕궁 안에 박물관과 식물원을 마련하고 그곳에 개성 일대에서 발굴한 고려청자 등의 고미술을 이조 왕가가 사도록 하여 박물관에 전시하였다.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조직적인 발굴조사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발굴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천황에게 헌상하였다고 한다. 그 후 한일이 합병되자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고적조사를 실시하여 석탑, 석비, 불상, 도기, 회화, 미술품, 고건축물 등 모든 문화재의 사진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跡圖譜)로 정리하였다. 당시 횡행하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1916년에 문화재의 '보존규제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고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총독부총감이던 위원장 아래에 일본인 고고학자를 위원으로 두고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925년에는 도쿄제국대학이 조선총독부의 의뢰를 받아 낙랑고분을 발굴 조사하였는데, 이 때의 조건은 총독부가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도쿄제국대학이 완벽하게 보존하여 자타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대학 총장의 편지에는 매각이나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적위원회 폐지 후 민간의 기부로 '고적연구회'가 출범하여 평양과 경주에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지속되었다. 조사결과는 「조선고적연구회 유고」(朝鮮古蹟研究會遺稿)로 정리되었다. 당시 도쿄대학의 조수로서 현지에서 발굴조사에 관여했던 현 명예교수인 有光教一씨의 저술을 보면 이들 고분은 이미 도굴된 것도 많았다고 한다.<sup>6)</sup>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의 동양관 소장품인 조선토기와 도기 800점 중에는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이던 이마이 기요노리(今井清"")씨 등 조선고적조사에 관여했던 개인의 기증품과 당시의 골동품상으로부터 구입한 발굴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 1920년에 발굴조사한 신라시대 장신구와 부장품을 도쿄 국립박물관에 일괄적으로 기증하였다. 이 소장품들에 대해 동 박물관의 연구관은 인터뷰에서 연대와 내력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 오쿠라 컬렉션의 몇 점을 한국의 의뢰로 대출하였는데 질이 낮아졌는지 실제로 전시회에 전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최근 한국의 발굴조사를 통해 더 훌륭한 문화재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컬렉션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덧붙였다.

## 새일 한국문화재 반환의 역사

### 가. '한일협정'의 문화재 인도협정 내용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1966년에 도자기, 고고자료, 석조미술품, 장신구 등 176건 434점, 서적 163부 852권, 통신자료 20건 등 1427점이 한국에 인도되었다. 인도 당사자가 된 도쿄 국립박물관이 발행한 「인도 문화재의 도록 및 목록」을 보면 도예품 90건, 고고자료 84건, 석조품 2건을 도쿄 국립박물관이 인도하였다고 한다. 실제 내용을 보자면, 도예품은 明治41년(1908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궁내성을 통해 기증된 고려시대 청자 류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고고자료의 대부분은 남부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방으로부터의 출토품(조선총독

6) 有光教一, 「조선고적연구회유고 I」

부 기증)이며 고려시대의 석가여래입상(1885년에 구입), 황금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복식품을 비롯하여 신라토끼라고 불리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 석탑사기용기 일식(一式)과 도자기로 된 뼈향아리 등의 종교유물(1936년 구입)도 있다. 도록의 머리말에 있는 당시관장의 글은 이들 문화재가 일본과 한국의 협정으로 인도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 그리고 이것이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체결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된 내용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씨가 기증한 것,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것 등, 일본의 조선통치 결과 일본에 반입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이 박물관에는 4000점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재가 소장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같은 시기에 한반도 북부에서 발굴된 것과 1966년 이후에 기증된 것이다.

#### 나. '문화재인도협정'의 문제점

일본과 한국의 문화재 반환을 포함한 전후처리 문제는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상으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한일협정에는 일본 측의 제시로 '청구권 포기에 대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권의 해결로서 '협정 성립 시에 존재하는 한일양국 및 양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문장이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한국 측은 사실상 정식 외교 루트를 통한 반환요구가 곤란 또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협정의 내용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애당초 '인도'라는 애매한 용어의 사용에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증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환'이라는 식으로 서로 국내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기 위하여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도'라는 말이 타협점이 된 것이다.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의 3원칙으로 ①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반환이 아니라 기부한다. ②사유재산은 인도할 수 없다. ③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법률적 의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는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협정의 내용은 현재에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환의 내용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았다. 당초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한 대상은 공립미술관 서적 212종류, 미술품 및 골동품 837종 4479점이었는데 실제로 반환된 것은 그 8분의 1이며, 일본에서 국보 및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된 양산부인총 출토품도 제외되었다. 또 휴전선 이북의 출토품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유문화재 및 국립대학이 소유한 문화재는 일절 반환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양국의 국내 사정으로 각각의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반환도 아니고 기증도 아닌 '인도'라는 애매한 형태가 되었다는 점. 일본 측은 문화재는 청구라든가 반환이 아닌 한일양국의 학술,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문화재 기증을 의도하였고, 한국 측은 부당하게 약탈된 것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합의사항에서는 타협을 하여 양국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의미로든 해석 가능한 '인도'라는 애매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회의록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사적으로 소유한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인도는 실행

되었지만 그 후의 자발적인 기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다. ‘문화재인도협정’ 타협의 배경

한일협정의 문화재반환 협상의 상세한 경위는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교수가 저서와 저술에서 상세히 검증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양국이 장래에 화근을 남길 수 있는 문화재반환 협정은 맺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문제가 어업문제와 북한귀환문제, 위안부와 강제노동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 등 다른 안건에 비해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낮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결 전에 전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양국의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양국 정부의 본건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은 일본인 억류어부를 송환 받고 회담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반환을 검토했고, 한국에서도 일부의 문화재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문제는 중요시되지 않았다. 문화재 위원회의 위원이던 황수영씨의 "일본 측이 돌려준다고 해도 토의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안이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상 중이던 1958년 제4차 회담 개시 후에 일본 측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106점의 문화재를 인도받았다<sup>8)</sup> 부분적으로 문화재를 반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일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한국에서 정치가 및 일반인, 그리고 정부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일본의 경제 원조를 한시라도 빨리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조약 체결을 서두른 것이다. 당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은 신속히 경제를 회복시켜야만 했다. 나라의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문화재 반환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문화재에 대해 진지해진 것은 경제가 안정되고 난 이후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70년대 아타카(安宅)산업이 도산하여 아타카(安宅)컬렉션인 도자기 컬렉션이 팔리게 되었을 때 한국에도 타진을 했지만 당시의 한국으로서는 그 만큼의 예산을 국가가 지출할 수 없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sup>9)</sup>

세 번째로 공산당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일국교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에 공산당 세력이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여 한일이 단결하여 반공운동을 전개하도록 한일간의 쟁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베트남 전쟁의 확대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강한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부는 한일회담의 타결을 서둘러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한일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위기감을 느껴 그에 따라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발언력 증대가 예상되었다는 배경도 있었다. 한편 당시의 사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대신함으로써 오키나와 반환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계산에서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였다.<sup>10)</sup>

7) 高崎宗司, 「한일회담에서의 문화재반환 협상에 대하여」 p.46-49.

8) 高◆宗司, 같은 책, p.41.

9) 인터뷰 이호관씨 서울 2004년 3월 30일.

10) 高崎宗司 「검증 한일회담」 岩波"新書 p.158, p.163

## 라. 한일협정 후의 민관에 의한 한국문화재 기증

한일협정으로 양국간의 청구 및 보상은 해결된 셈이 되어 적어도 외교상으로는 제일 한국문화재 문제는 처리가 끝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체결 직후부터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등 비공식적으로 전후 처리가 아닌 국제 교류상으로 일본에 제일 한국문화재의 선의의 기증(한국의 입장에서는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에 대해 지금까지 딱 한 번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요구하는 문화재를 기증한 사례가 있다. 1991년에 일본 정부가 기증의 형태로 반환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왕비의 복식유물 총 227점이다.<sup>11)</sup> 이 기증은 예외 중의 예외이다. 그 전에도 후에도 한일협정 후에 문화재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 기증된 기록은 없다. 이 기증을 위하여 실제로 3년간의 협의를 거쳐 1991년 4월에 "영친왕비 관련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이라는 한일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유물은 궁중유물전시관 설립을 위해 궁중유물을 찾던 한국 측의 제3의 의뢰에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응한 것이다. 이 유물은 일괄적으로 전후 일본에 거주하던 황태자비에 의해 1956년에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고 그 후에 한국에 기증되기까지 비공식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동안 한번도 공개된 것이 없음을 밝혀두고 싶다.

### 개인 수집가에 의한 기증 사례

국가에 의한 기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민간차원에서의 모든 교류가 활발해졌고 특히 월드컵 공동개최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제한을 완화시켰다. 양국간에 대규모 문화전이 개최되어 서로간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일본의 민간 수집가에 의한 자의적인 문화재 기증이 늘고 있다. 필자가 서울 중앙박물관에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입수한 2004년도 기증 리스트에는 17명의 일본 수집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 10건이 1987년 이후에 기증된 것이었다. 기증을 받은 한국의 박물관은 기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여 수집가의 이름을 딴 특별 갤러리 창설, 카탈로그 출판, 한국 정부의 문화훈장 수여 등 수집가의 선의에 최대한의 경의와 감사로써 보답하고 있었다. 기증은 한 수집가들도 생각지 못한 한국 측의 이러한 성의 있는 대응에 대해 한국의 관대함을 느꼈다고 한다.

개인 수집가가 한국 정부 혹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신의 컬렉션을 기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과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주기 위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1985년 이후 기증된 경우 모두 기증하는 개인 수집가와 한국의 교류가 기증의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자신의 컬렉션 절반에 해당하는 고대 기와 1082점을 서울 중앙박물관에 기증한 故 이우치 이사오씨의 경우는 한국 미술사학회로부터 고대 기와를 통한 한국 고대문화의 연구업적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 받은 것이 기증의 계기가 되었다. 그 자제인 이우치 기요시씨에 의하면 한국에 기와 컬렉션이 없어서 한국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또 본인도 나이가 들었고 본래 조선에 있던 것이므로 기와도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 같다. 기와 1082점을 한국에 보낼 때는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 한국에 가서 잘 살아가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sup>12)</sup> 기증을 받은 서울 중앙박물관은 당시 총독부 건물에 있었고 그 안에 일본인이 기증한 컬렉션을 위해 방을 따로 마련했다. 이 점에 대해 이우치씨는 한국인의 마음 씀씀이가 넓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1995년에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구옥이나 금강불 등 국보급 문화재를

11) 「조선조후기 궁중복식도록 英王中心」

12) 인터뷰 井内潔씨" 明-石市 2004년 7월 17일



포함한 다양한 고고유물 308점<sup>13)</sup> 을 기증한 수집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컬렉션을, 그 중요성을 생각하여 보존과 취급의 문제점 등의 측면에서 일본에 두기보다는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주는 편이 좋다는 판단에서 기증을 하였다. 일본 문화청은 수출허가를 내기 전에 일본에 대한 기증을 타진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한국에 기증을 하였다.

그 밖에도 世中石造 박물관에 65점의 석조를 기증한 수집가도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석조 65점을 전시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장소에 특별히 플랫폼을 마련하여 다른 석조와 구별하는 식으로 특별취급 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는 선의의 일본인 수집가로부터 기증을 받았다는 감사의 글이 적혀 있다. 필자가 보는 한 기증한 일본인 수집가에 대해 한국 측은 경의를 표하고 또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 근래에 이상과 같은 개인 수집가에 의한 한국에 대한 자의적인 문화재 기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뉴스가 될 정도로 그 건수는 적다. 일본인의 자의적인 문화재 기증은 그 수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에는 3건, 2006년에는 2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5건이 서울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기증 대상은 일본미술로부터 토기, 조선 왕조의 기록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2004년 이후 최근의 특기할 만한 반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야스쿠니 신사가 보관 하던 북관대첩비인데 이것은 2005년 10월 12일에 한일 양국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의 3자가 합의문서에 동의하고 외무성의 입회 하에 한국대사관에 인도되었다. 20일에 민간기로 한국에 운반되어 국립박물관에서 일반 공개된 후 2006년 3월에 북한에 인도되었다. 또 한 가지는 2006년 6월 31일에 도쿄대학이 도서관에 소장하던 조선 왕조의 업적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47권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할 것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동양사학자인 故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씨가 조선에서 반출하여 1912년에 도쿄대학 도서관의 장서로 되었던 것인데,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우연히 반출된 74권 중 27권은 32년에 당시의 경성제대에 옮겨져 한국에서는 국보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되었다. 이 2건의 반환은 모두 한국 측의 열렬한 반환요구에 일본 측이 응답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일본 측은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적 과제

재일 한국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반환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은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의 불명확성에 있다. 법치국가인 이상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휘 해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탈 문화재의 반환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근년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나치스에 의해 약탈된 미술품에 대해 원래 소유자의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되는 것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과 그에 따른 각국의 국내법 정비이다.

13) 體內佛을 포함한 통일신라시대의 금강불 등 국보급 문화재로 골동품상에 따르면 총액 34억 엔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 ‘한일협정’의 문화재 인도협정 내용

### 가. 유네스코 협약과 일본의 견해

유네스코는 1970년에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1972년 4월 24일에 발효되었다. 현재 이 협약에는 96개국이 체결을 하였지만, 주요국 중에 체결을 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실은 일본도 이국제법을 체결하기까지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 2003년 12월 9일에 드디어 가입을 하여, 동 협약 관련 국내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문화청의 설명에 따르자면 일본이 협약에 가입한 배경에는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바그다드 박물관이 약탈되는 등 다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산이 파괴되거나 불법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저지하자 문화청 홈페이지 「문화재의 불법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는 대테러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지역으로부터 도난당한 고고유물과 미술품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이런 문화재의 국외유출을 방지하는데 국제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비준을 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후,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Bamiyan)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입된 문화재 유입을 방지하기로 법으로 정하고 또 히라이마 이쿠타로씨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발견된 그런 약탈 문화재를 모아서 앞으로 출토지로 반환하는 '문화적십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유네스코의 이 협약에 가입하기 전 30년간, 일본은 도난 미술품이 안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협약이 생긴 후 바로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화청은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제일 한국문화재 문제와도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

필자가 이번에 인터뷰한 일본의 미술관 관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일본에 반입된 한국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게 구입하기 위하여 그것이 불법으로 반입된 도난 미술품인지의 여부를 국제기관에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소장품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입수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과,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난 미술품인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많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도 했다. 적어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한 지금, 일본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 미술품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미술품을 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법 전문가는 제일 한국문화재 반환에 대해 국제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sup>14)</sup> 첫 번째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이양은 위법행위로도 합법행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일본에 합병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였으므로 일본에 반입된 문화재의 이동은 단순히 국내의 지역간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장하듯이 일본의 조선점령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고 점령 하에서의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한다면, 그 기간에 일어난 문화재 이동도 위법행위가 된다.

두 번째로 약탈의 정의이다. 문화재 도굴 및 유출에는 현지의 농민 등이 금전을 목적으로 관여한 경우가

14) 인터뷰 백충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장, 2004년 3월 30일

많다. 한국문화재의 경우도 현지의 조선 농민이 돈을 목적으로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흘리거나 도굴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분명하다. 도굴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일본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로 문화재의 소유이력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점령하의 문화재 유출에 관해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원래 어디에 소장되었던 것인가,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 증거가 되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화재 반환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사라진 절이나 왕족 등 당시 소유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명치 않은 경우, 그것을 현재의 한국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에는 한반도 북부에서 발굴된 것이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 북한의 영토이므로 아직 한 건도 반환되지 않았다. 또 개인이 소유하던 것에 대해 현재의 정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트로이 유적의 경우, 현재의 터키 정부가 그 정당한 후계자가 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네 번째로 문화재에 대한 정의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재는 문화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가치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단순한 일상 생활용품이던 것도 있다. 일본민예관에 소장된 조선 문화재의 상당수는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던 것이나, 길거리에서 팔던 것, 또는 농민이 준 것 등이다. 이렇게 애초에 문화재로서 유출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유네스코 조약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반환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는 ①전쟁 중에 약탈된 문화재(나치스의 약탈 문화재, 미국 정부가 수거한 일본도 등) ②유네스코에 정의된 위법으로 수출된 문화재(법률로 수출이 금지된 콜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문화재의 유출 등) ③점령하에서 점령국에 의해 수출된 문화재(점령 시에 일본이 한국에서 반출한 문화재 등)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법적으로 위법행위로서 반환에는 언제 어떻게 위법으로 반출되었는가, 그리고 문화재의 원래 소유자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증명해야 하는데, 특히 제일 한국문화재와 같이 점령 하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점령한 나라는 문화재의 유래에 대한 문헌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현재도 이런 사유로 외교문서는 일본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과, 문화재는 현재의 소유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애매하거나 존재하는 않는 경우가 많다.

조선왕가의 고분에 있던 고려청자와 같이 도굴되거나 혹은 발굴자가 분명치 않은 경우라도 현재의 소유자는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 입수하거나 양도받은 선의의 구매자인 경우도 있다. 한편 '문화재를 약탈당한 측인 한국은 점령 그 자체가 위법이며, 그 기간에 발생한 문화재 소유권 이행도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은 만약 점령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화재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하고, 한국 정부가 그런 문화재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백교수는 지적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일 한국문화재 문제는 현재의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환 대상이 된 특정 유대인 가족이 나치스에게 약탈당한 것이 명백한 미술품<sup>15)</sup> 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재 공개를 저해하는 국내요인

15) Hugh Eakin, "Unfinished Business" ArtNews Summer 2004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제일 한국문화재 문제는 우선 양국이 협력하여 역사상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위법행위가 아닌가, 문화재 소유권을 포함한 역사상의 사실을 가능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식 경로를 통한 반환 혹은 기증이 거의 없었음을 생각하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 없이 한국이 약탈당한 제일 한국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미지의 부분이 많은 문화재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양국이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재는 인류 공통의 재산이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선조가 만든 문화재를 지키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그것이 파괴되거나 올바르게 연구, 평가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술을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회에서 숨쉬게 한다는 예술경영(Ar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또 감상, 연구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생각하면 제일 한국문화재의 상당수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작품이 개인 수집가의 수중에 있으면 공개는커녕 그 존재조차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문화재교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립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 공개된 한국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한 곳은 미국인데 그것은 미국이 많은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미술관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 배경에는 미술품 공개로 얻을 수 있는 면세조치 등의 법률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의 약 90%가 개인 수집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 많은 문화재가 감상을 위해서, 또 연구를 위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비극이다. 폐쇄적인 상황의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문화재 공개 촉진과 관련된 장벽이 있다. 이것은 한국문화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문화재에 공통되는 문제이다. 일본은 특히 불교미술을 비롯한 동양 미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굴지의 문화재 보유국인데, 그 문화재의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우수한 미술품을 미술관에서 공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에 법률이 정비되었지만(미술품의 미술관에서의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그것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문화청은 홈페이지에 등록 미술품으로 등록되어 미술관에서 공개되는 미술품의 상세한 리스트를 게재하였는데, 이 법률 공포로부터 6년간 4회, 12건의 미술품만이 이 제도에 의해 공개되었다. 법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원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제도는 아직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미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미술컬렉션 관한 제도상 및 풍습상의 문제점을 검증하겠다. 첫 번째로 미술품 보유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미술품, 문화재는 토지, 가옥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간주되어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족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요미술품에 대해서만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정을 신청해도 늘 희망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면 전시, 공개, 이동에 관해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수집가들이 소장품의 존재 자체를 나라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에서 컬렉션 공개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는 미술품, 컬렉션, 골동품은 일률적으로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독일에서는 미술품, 컬렉션은 2만 마르크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술관에서 5년 이상 공개 전시하는 계약을 맺으면 재산세에서 면제된다.<sup>16)</sup> 스위스에서도 많은 주가 미술품

컬렉션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또 그 외의 주에서도 재단법인화함으로써 면제가 되는 법률이 있다.

두 번째로 미술품 공개에 따른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없다. 일본의 경우 앞서 말한 등록미술품의 공개촉진법에 의해 등록미술품을 공개하면 물납일 경우 우선순위가 1위가 되어 물납을 하기 쉬워지는 이외에 공개에 따른 소득세 감면 등의 우대조치는 없다. 또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미술품이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및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증여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특정공익증진법인의 인정은 어려우며 그렇지 않은 사립 미술관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등록미술품으로 미술관에 대출한 미술품을 상속한 사람이 기증하지 않으면 문화재청에 의한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가산된다. 이래서는 소유자가 미술품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금전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구미에서는 미술품을 국내에 유지하고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여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중요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미술품을 국내에 가지고 있고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며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등이 면제된다. 미술관에 기증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공개만 하면 상속세 면제 등의 혜택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공개를 그만두거나 시장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미술관에 기증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고 또 작품의 보호,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sup>17)</sup> 이런 구미지역의 정책이 미술관에 대한 미술품의 장기 기탁과 공개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기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미술관에 대한 미술품 기증에 관한 소득세 공제의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정부, 지방공공단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평가이익이 있는 미술품을 기증한 경우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비과세가 되지만, 기증함으로써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액수는 미술품의 취득가격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한정된 미술관에 대한 증여의 경우만 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수한 미술품의 가치는 세월과 함께 상승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수집가가 시장에서 미술품을 매각하는 것에 비해 금전적인 혜택이 너무나 적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미술품을 기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비과세가 됨과 동시에 미술품의 시장가격만큼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어 그것이 고액으로 공제 가능한 액수를 웃도는 경우에는 최고 5년간의 이월이 인정된다. 또 독일에서도 5만 마르크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법인은 7년간의 이월, 개인은 2년간의 소급과 5년간의 이월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증여를 어디에 하느냐와 상관없이 가치의 50%까지를 과세소득의 6%를 한도로 하여 공제된다.

네 번째로 미술품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술품공개촉진법의 등록미술품을 물납하는 경우에 한해 물납순위를 제1순위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등록미술품이 되지 않은 경우는 미술품의 우선순위가 동산(動産)으로서 최하위로 된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상속세 뿐 아니라 고정자산세, 자산이전세, 자본이득(capital gain)세도 미술품 물납의 대상이 되므로 중요한 미술품이 물납되어 공개되는 확률이 높다.

16) 구미 여러 국가에서의 미술품에 관한 세제에 대한 조사연구 p.89

17) 「미술품 관련 세제에 대한 조사연구」 2000년 p.94

다섯 번째로 미술품의 거래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경감되지 않는다. 미술품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문화재로 취급하는 EU에서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에 margin system<sup>18)</sup>을 적용하는 등 경감조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소비세법상의 자산'이며 양도된 경우에도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 또는 그에 준하는 문화재가 정부나 자치체에 기증된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가 가산된다. 예를 들면 기업과 개인이 등록미술품이 아닌 미술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미술품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나라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중요문화재에 준하는 것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소득의 2분의 1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와 기타 친족간의 미술품 양도에 있어서도 한 물품(一品) 또는 한 세트(一組)의 가격이 30만 엔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상속이나 매매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미술품이나 골동품 거래와 양도가 세무서에 알려지지 않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미술품을 공개하는 미술관의 문제가 있다. 일본의 국립미술관은 근래의 지방재정 압박으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든 결과 인원도 예산도 충분치 않아 소장품을 조사연구하거나 기획전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해도 채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방문객이 많이 모이기 어려운 대중적이지 않은 전람회는 개최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이동전시할 때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몽유도원도'를 소장한 텐리(天理)대학 도서관에서는 이 작품을 1년에 한 번 이 대학 도서관에서 특별전을 열 때 관내에만 전시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청의 허가 없이 수리를 할 수도 없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작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실물열람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정교한 복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열람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으로부터도 의뢰가 있어서 복제품을 기부하였다. 그러나 한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미술품이 일본에 있고 또 그것을 열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국외로 빌려줄 때는 문화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같은 장소에서의 전시나 공개는 소장자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일곱 번째로 컬렉션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풍습 또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예로부터 '눈 때, 손 때'를 싫어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미술품 공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수집가 특히 고미술 수집가는 미술품이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하고 접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풍습이 있다. 귀중한 것,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로마치 시대(1392~1573)부터 계속된 일본의 신사불각(神社仏閣)의 "秘仏公開"전통은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이것을 보기 위한 특별감상 여행은 대성황이다.

회소가치가 작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미술시장의 규칙이며 구미 지역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수집가가 없지는 않지만, 일본에는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지금도 중요 문화재급의 도기가 특별한 고객만을 위한 다도회 등에서 1년에 한 번만 창고에서 꺼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작품 보수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작품을 소장한 사람조차도 귀중한 것이므로 작품 보기를 제한한

18) EU 여러 국가에서 미술품, 골동품, 중고품의 판매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판매사업자의 마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며 총판매가격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다는 일본 독자적인 사고방식이 공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구미 지역과 같이 미술품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수집가에 대해 사회와 미술관이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구미 지역에서는 미술관에 기증 혹은 기탁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미술관은 기증자와 기탁자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그 행위를 공표하고 또 많은 기증자의 이름을 딴 갤러리를 창설하여 그 영예를 영원히 기린다. 이런 행위를 사회가 칭송하는 전통이 기부문화화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로 일본 수집가가 소장품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로 경비상의 문제가 있다. 컬렉션의 존재가 알려지면 도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비 체제가 잘 된 전문 갤러리를 가진 구미 지역의 수집가와는 달리 자택에 컬렉션을 소장하는 일본 고미술 수집가의 자택에는 미술관과 같은 경비설비가 없다. 따라서 컬렉션의 존재를 비밀로 함으로써 도난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컬렉션의 일부를 공개하면 그 밖에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도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미술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와 풍습 문제가 개인 수집가가 소장한 미술품의 조사연구와 공개를 저해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양도나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을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술품을 공개하는 데 대한 정부 지원의 결여가 미술품의 은닉이나 사장을 초래하고 있다.

## 재일 한국문화재에 관한 제언

약탈문화재에 대한 대처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나치스가 약탈한 유대인 가족의 컬렉션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1998년에 '미술품반환법'(Art Restitution Act)을 제정하여 국립미술관의 컬렉션을 조사하여 해당되는 작품을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였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최근까지 많은 작품이 반환되었는데 그 중에는 벨베데레 국립미술관이 소장한 5점의 클림트 그림이 포함되었다.<sup>19)</sup> 반환되는 것은 약탈자가 나치스이고 약탈당한 가족의 이름과 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된 경위가 명백한 경우이다. 이 조사 과정에 의해서 그 때까지 무명이던 유대인 수집가와 가족의 관계, 그 사교계 즉 그 때까지 말살되었던 역사의 일부가 명백해진 것이 성과이다. 재일 한국문화재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처럼 약탈자와 원래 소유자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작품이 존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술품이 폐쇄된 상황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개 문화재가 공개되어 연구가 진척되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한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재일 한국문화재의 소유권 문제는 따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인 수집가의 공개는 큰 이득이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구미 지역에 비해 발달되지 않은 컬렉션 공개를 촉진하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9) p.160 Hugh Eakin

수집가에게 면세 등의 실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구미 지역과 같이 미술품 공개를 조건으로 상속세나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과 같은 효력 있는 제도로 세제를 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두 번째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자금으로 위원회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개인 수집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와 미술적 역사적 가치를 카탈로그로 만든다. 한국의 한국문화재 연구자인 이호관씨는 1980년부터 일본의 나라 국립박물관 관장과 합동으로 사유 컬렉션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당사자인 관장의 사망으로 조사는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 이 조사는 일본과 한국 연구자의 교류로 가능해진 것이며 많은 중요한 미술품이 처음으로 밝혀져 카탈로그에 수록되었다. 한국어로 제1권이 발간되었는데 나머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도 한일 연구자의 합동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거듭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재를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과, 조사하고 공개하여 그 연구 성과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미술관에서 한국문화재가 어떻게 소중히 보존되며 연구되어 왔는가를 한국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고고학 연구는 아직 역사가 짧아서 한국 고고학 연구는 일본의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연구에 의해 한국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인식 결여와 한국의 감정론, 이 두 가지는 모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평등한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조사와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 한국에서 작품을 기증한 일본인 수집가가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진심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일본에서 제일 한국문화재 문제는 우선 그 문화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 매우 낮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렇다면 반환하는 게 좋잖아"라는 식으로 남의 일처럼 반응을 한다. 일본 사람에게 이 문제의 소재를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한국 측이 그것을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선의의 행위로서 표창을 할 만큼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것을 알게 되면 개인 수집가에 선의의 기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실제로 한국에 대한 문화재 기증은 한일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진 198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상호교류가 활발해져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렇다면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줄까'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실제로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화재를 기증한 수집가는 한국의 반응에 감탄하여 진심으로 기증하기를 잘했다고 했다.

네 번째로 일본에 있는 중요문화재를 포함한 한국문화재를 새로운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하여 한국에 장기적으로 대여를 하는 것이다. 문화재 반환은 불가능하더라도 작품을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대여하면 한국인은 이것을 반길 것이다. 일본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모든 문화재를 동시에 전시할 수는 없으므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으로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소장품을 일정기간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전쟁 이후미국 점령군에게 접수되어 1970년에 소유권은 미국이 그대로 가진 채로 영구히 일본에 대여된 전쟁화 153점이 있다. 이 전쟁화는 국립근대미술관에 보관되고 그 일부는 2002년 재개관 기념전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 연구자, 학예연구사의 교류를 촉진, 그 성과 교류전을 개최한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한국 연구원과의 교류를 실시하여 매년 1명을 2주간 초빙하고 있으며, 오사카 동양자기미술관에서는 올해에 초기 고려청자 특별전을 개최할 때 한국에 조사를 하러 갔고 한국의 큐레이터를 일본에 초대하여 특별 갤러리를 맡기고 있다. 이런 교류는 문화청의 예술거점지원 조성금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문화청의 국제 교류예산에서 한국 연구자와의 교류를 위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앞서 말했듯이 재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일본인과 한국인의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개인 수집가는 물론이고 많은 일본인은 일본에 이 정도의 한국문화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 그 중에 상당수가 불법 약탈이나 점령 하에서 부당한 상거래로 취득된 것임을 일반인들은 알 리가 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협정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일본의 점령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일본에 반입된 문화재는 모두 정당한 경위로 일본에 소장된 것이라는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재 반환 문제는 강제노동, 위안부, 영토문제 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일협정 체결로 외교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이제 와서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소유한 문화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본 정부와 매스컴 또한 일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재일 문화재 관련 문제를 경시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문화재 반환을 회담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일본의 언론은 일본인 납치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화재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문화재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일본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낮은 의식수준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일 한국문화재 문제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수립 협상 의제에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한반도 북부에서 반입된 문화재는 북한과의 국교가 없으므로 1점도 반환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한일협정 때에도 일본이 한국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으므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리는 없다. 아니면 한일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배상을 우선시하여 문화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지도 모른다. 어찌되든 앞으로 일본과 한국·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는 중요한 안건이며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성실히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적어도 재일 한국문화재의 조사와 공개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그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있는 훌륭한 조선미술 컬렉션 몇 가지가 근래에 한국의 수집가에 의해 기증된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는 이 평창 박사가 1992년 조선도자기 301점과 중국도자기 50건을 기증하였고, 1999년에는 같은 박물관에서 그것을 상설 전시하기 위해 기증자의 이름을 딴 특별전시실을 마련하였다<sup>20)</sup> 또 故 정 조문씨는 1998년에 교토에 고려미술관을 설립하여 고려, 조선시대 미술공예품 1700점을 공개 전시하였다. 두 명의 한국인이 일본은 자신의 조선미술 컬렉션이 안주할 장소로 선택한 것은 재일교포 2세, 3세에 대한 격려의 마음에서 일본에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관으로서 오랜 세월 활약한 이 평창 박사는 '한국문화재는 최고의 민간외교관'이라고 했다. 실제로 외국의 주요 미술관에는 한국미술 갤러리가 있어 세계인들이 한국의 탁월한 문화에 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있다. 그것은 해외에서 공개되는 일본미술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박사는 일본에서도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 이 미술관의 우수한 전시시설을

20) 이토 이쿠타로 p.19.

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공개되는 것은 본 한국의 VIP나 일반 관광객은 탁월한 한국문화재의 상당수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이 되기도 하지만, 미술품의 보존, 전시 기술의 우수함에 납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한국의 서울 중앙박물관 담당자는 신설하게 될 미술관 설계에 참고하기 위하여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을 방문하여 그 아름다운 전시에 감동을 받아서 이 곳의 전시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한다.<sup>21)</sup>

나라 국립박물관은 올 여름 일본의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경주 국립박물관과 신라고분 유물을 전시하는 합동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한일관계는 현재 국교수립 이래 최고로 우호적인 상황에 있다. 유감스럽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론을 집필하는데 있어 참고문헌을 번역해준 일본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대학원생은 지금까지 특별히 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공부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일본에 많은 조선의 문화재가 있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지금이야 말로 과거의 역사를 분명히 밝혀 그 토대 위에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훌륭한 문화유산을 양국,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문화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특히 가장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일본이 오랜 불황에 허덕이고 한국경제가 호황을 이루는 지금, 한국의 수집상이 일본에 한국문화재를 사러 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재벌을 비롯한 수집가가 문화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한국문화재와 중국문화재가 지금 거래를 통해 한국과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어느 수집가가 전했다. 또 어느 미술관의 학예사는 "문화재는 영원하지만 미술관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현재 문화재를 맡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문화재의 수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명을 훨씬 초월한다. 나라도 사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문화재를 지금 맡고 있을 뿐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위해 연구, 공개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일 한국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사이의 진정한 교류, 연대가 될 것이다.

21) 인터뷰 오사카市 동양도자미술관 小-林仁氏 大阪市 2004년 .

# The Issue of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rts Management

## Abstract

The fact that as many as 29000 pieces of Korean artifacts are in the collections of Japan's public museums, is hardly known to the Japan's public, which accounts for only 10% of all the Korean artifacts in Japan including the ones in private hands. Many of them are said to be taken to Japan illegally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the issue of illegally taken artifacts is a well-known fact among public. The gap in the awareness on the historical issue creates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unsolved issue of restitution goes back to the compromised result of the Korea Japan Treaty. While it is not feasible to solve this problem from legal perspective due to lack of consensus on the meanings of the legal terms, voluntary donation of Korean artifacts by Japan's private collectors is gradually increasing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closer and closer since 1985.

The research on the status of some of the Korean artifacts in discussion revealed that the lack of public display of such works is as much problem as the ownership issue. The domestic problems surrounding art collection in Japan such as lack of tax incentive for public display and donation of artworks constitute the major factors behind hidden artworks in Japan. In order to promote the public access to the Korean artifacts in private collection in Japan, tax reform related to the art collection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initiative to start joint research and scholarly exchange on such artifacts and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n subject,"@specially how well those donations are received by Koreans must be considered.

## The Issue of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rts Management

Yoko Hayashi

Associate Professor, Shobi University

Forum on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Property  
Displaced to Japan During the Occupation or War  
(27 April 2007 Seoul, Republic of Korea)

### Introduction

- I am not an expert of Korean art history nor Korea-Japan relationship but am an expert of arts management.
- A gap in perception between the citizens of Korea and Japan about the issue.
- Result of the Research on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 My proposal for solutions on the issue

## 1. History of the Transfer

### 1) Location of Korean Art Objects

USA, Europe, Russia then Japan (the fourth)

Total of 29000 items in public and private galleries and museums.

(research by Korea Foundation between 1989-1996)-10%

90% are believed to be in the hands of private collections.

### (2) The Origin of Japan's Collection of Korean Art

- Asuka Period(550AD-710AD)
-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
-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 both looting and proper commercial transactions
- Post war transactions at art market
- In many cases, objects have changed hands several times and provenance is difficult to establish.
- Still some positive transfers exist.

## Positive incidents to be remembered

- The following Japanese did not just collect Korean folk art but also advocated their beauty to the public through their collection and writings. They have left most of their collections in Korea when they left there.

Yanagi Soetsu-

Nihon Mingeikan(Japan Folk Art Museum)

Asakawa Brothers

Founder of Korai Museum, Kyoto, Japan

## (3) Particularly Problematic Japanese collections of Korean Art

- Stone monument in Yasukuni shrine  
returned to Korea in Oct. 2005 based on the diplomatic agreement
- Mongyu Towondo  
The most important painting in Korean art history  
Owned by Tenri Central Library. Loaned to Korea in 1986 & 1996
- The Ogura and Karube collections  
at Tokyo National Museum
- Items excavated from the Korean royal tombs



Stone tablet at Yasukuni Shrine  
handed over to South Korea  
12 Oct. 2005



Handover Ceremon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Pyonyan  
March 1st, 2006



Dream Journey to Peach Blossom Land by An Kyon, 1447  
Tenri Central Library in Nara, Japan



Ogura Collection at Tokyo National Museum  
Three Kingdom period (6 C) golden earrings and crown  
(register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y)

#### 4) History of Restitution from Japan

- Japan-ROK Normalization Treaty in 1965  
1427 items were “transferred” to Korea
- Rules of transfers from Japanese point
- 1) The treaty settled all pending claims with regard to the past includ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 2) Items in question are limited to those in the government possession.
  - 3) Privately owned items are not covered by the treaty
  - 4) The act of transferring cultural objects is not defined as a legal duty but done for political and cultural reasons.
  - 5) Items from the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re left out as the area is not controlled by ROK.



## **Korean Dissatisfaction on the result of the transfer**

- Far less was returned  
4479 items requested VS 1427 returned
- Transfer of items was not done as a restitution but as a mere transfer as a form of compromise to meet both governments requirement
- Japanese government failure to encourage private collectors to make voluntary donations to Korea

## **(5) Background to the compromise over the agreement**

- The issue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had a low priority in the scope of total negotiation.  
The issue was never discussed in either national assembly.
- South Korea was desperate for Japanese aid to encounter the rising power of North Korea.
- US government pressure to conclude the treaty as soon as possible.

## Public and Private Donation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after the Normalization Treaty

Donations by government and GOV, institutions.

- Donation of 227 court clothing to Korea possessed by Princess Masako in 1991
- Transfer of stone tablet from Yasukuni Shrine to South Korea in 2005
- Donation of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Korean Royal Dynasty by Tokyo University in 2006 June (UNESCO world heritage)

## Private Donations

- The number of donations from Japanese individuals to Korean institutions is on the rise.  
As of 2007 April, 22 voluntary donations were made in good faith.  
Donations were officially and highly recognized by Korean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such as Seoul National Museum.

Donations of well documented Korean roof tiles

Donation of 308 dynastic period artifacts ( many classified as National Treasure)

Donation of 65 stone statues to Sejoong Museum



Donor plaque of Donation Gallery  
at National Museum of Korea



Tadasu Hachiuma Collection at  
National Museum of Korea



Stone Statues donated by Mr. Kusaka at Sejoong Stone Museum

## II Legal Issues related to restitution

- 1954 and 1999 Hague Convention and 1970 UNESCO Convention for returning cultural properties from one state to another.

But no legal grounds for return of property which were taken before the state signed in the convention.

Japan did not sign in the convention until 2003 Dec.

## 2. Outstanding legal issues

- Legality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ese objects depends on the kind of law applied.  
Was it a domestic transfer?
- The definition of looting is problematic  
Local Korean involvement in looting  
Innocent buyers can not be blamed
- Provenance has not been proved.

## Categories of Objects for Return

- 1) looted objects during the war time
- 2) illegally exported objects prohibited by UNESCO
- 3) objects exported from the occupied countries  
Korean objects taken during the occupation is in this category

Requirement for proof of provenance exists  
Korea needs to prove such transfer would not have occurred without occupation, it is not easy.

## III Domestic Issues Preventing Public Access to Cultural Property

- Process of return is not easy and takes time.
- From arts management point of view, public access to these objects are most important.  
The problem is lack of access to many of these objects.
- Why these objects are hidden in the private hands of Japan and not shown to public?

## Domestic issues constitute obstacles.

- 1) tax laws on cultural property
- 2) no or little tax incentives for making them available for public access
- 3) gift tax on art works to public museums  
Exempt only if the objects are classifi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y or of equivalent value.
- 4) low priority of art works for payment of inheritance tax. It is ranked at 4th place.
- 5) no tax reduction on sales of art works

- 6)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space on museums to hold exhibitions on Korean art
- 7) Japanese tradition of hiding important things to increase their value (meaka, teaka)
- 8) issue of security at collectors' homes  
there is a risk of robbery.
- 9) many law suits over inheritance among family members

## IV. My Proposal for Mutual Benefits

- 1) reform on Japan's tax laws on cultural property
  - Recent efforts to boost loans of art to museums
  - 2001 new registration scheme for works of art  
(Toroku bijutsuhin seido)
  - But **not effective**
  
  - As of 2006 may, 300 inquiries in 7 years
  - Only 27 cases were applied (less than 10%)

### Reasons why the new scheme is not working

- 1) lack of publicity (hardly known to the public)
- 2) qualification for registration is strict  
and standard is not clear
- 3) requirements for owners are too high
  - Minimum 5 year commitment for loan
  - Need to identify a recipient museum
  - A lot of paper work
- 4) applicable to only individuals, not to institutions
- 5) lack of financial merit for owners
  - Only benefit is higher priority in payment of  
Inheritance tax in case the work is registered.

## 2) To establish a joint foundation

To conduct researches on Korean cultural property by both Japanese and Korean experts, fund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funding.

It is crucial to research and make such findings available to the public and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Let Korean public know that Korean cultural objects in Japan are highly appreciated and well researched and taken care of. Research conducted in Japan formed the basis of current research on Korean art and caused interest in Korean art in Korea.

Both lack of recognition of the issue in Japan and emotional approach to the issue in Korea result from the lack of recognition of historical facts on both parties.

## 3) To let Japanese public know that

Voluntary donations by Japanese are highly regarded in Korea

Koreans do not take donations for granted and award the donors with high recognition and gratitude.

This would encourage more donations.

There are several repeated donations by the same donors to National Museum of Korea.



### 3) long term loan of korean cultural property from Japan to Korea.

153 Japanese paintings confiscated as war propaganda were on the long term loan to Japan's national museum since 1970. (They were first exhibited at the time of inaugural exhibition after recent renovation)

### 4) promote the exchange among scholars and curators on korean art.

Tokyo national museum invites a korean scholar  
For two weeks through the ACA grant.

## Conclusion

- A perception gap regarding the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must be filled.
  - Role of mass media is crucial.
  - Robbery by Korean thieves must be avoided.
- The better korea-japan relationship encourages more donations of korean cultural property
- Many important korean cultural objects are being bought by koreans as the result of commercial sales . cultural objects are drawn to those who have the strongest desire.
- At last, superb collections of korean art have been donated by koreans in Japan (eg. Korai Museum, Osaka City museum of oriental ceramics)

**Either They Are Held in Japan or Korea,  
Cultural Property i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We Are Only Temporary Custodians of  
these cultural objects as they do not just  
belong to Us but also to Our Future Generations.**

**Resolution for the Issue Would Create  
the True Exchange and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Two Nations Closely Linked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Thank You.**

[Presentation]

**조선왕조실록 환수과정을 통해서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협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Negotiations at the Civil Level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Case of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

혜문 스님

Rev. Hyemoon

봉선사 승려, 전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간사

Bongseonsa Temple, Former Executive Officer of the Committee for the Restitution of  
Joseon Wangjo Sillok

# 조선왕조실록 환수과정을 통해서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협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 들어가는 말

일본 도쿄대에 소장되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은 2006년 7월 14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인도인 수식’을 통해 우리나라로 93년 만에 귀환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의 공식출범 이후 4개월만의 일이었다. 환수운동에 동참했던 정치권과 시민운동 단체, 언론들의 후원, 재일동포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이르는 국제적 연대에 힘입은 민족사적 쾌거였다.

식민지 시기 강제로 약탈당한 문화재의 반환운동은 역사적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의 네 개 부속협정 조약 중 하나인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1,432점의 문화재를 반환했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일본이 소유한 물건을 인도’받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진정한 의미의 반환은 아니었다. 나아가 ‘청구권의 포기’에 합의함으로써 약탈문화재 반환운동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체결이후 ‘문화재 반환운동’은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웠고, 일본의 자발적 기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운동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법정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약탈문화재의 반환운동은 ‘유형의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를 바로 잡는 운동’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수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초기에는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팽배했지만 환수위는 일본 도쿄대와 3차에 이르는 회담을 진행하면서, 학술적 증거, 법률적 타당성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법정소송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정면 대응함으로써, 온 국민의 열망을 현실로 일궈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반환운동의 준비과정, 회담경과, 주요논점, 반환이후의 논란 등을 면밀하게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록반환의 의의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보다 폭넓고 다양한 문화재 반환운동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 준비과정

### 1.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개요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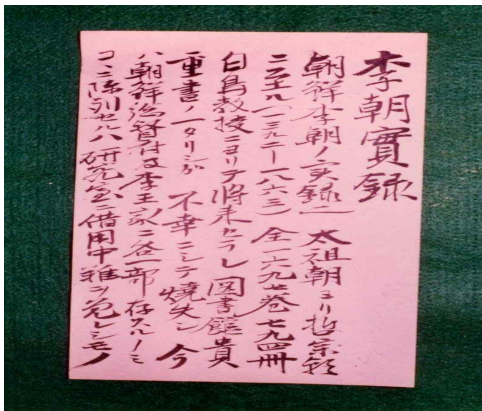
록, 1,893권 888책으로 만든 방대한 역사서로 현재 한국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기록유산이다.

임진왜란이후 조선왕조는 선조 36년(1603) 7월부터 동왕(同王) 39년(1606) 3월 사이 유일한 현존본인 전주 사고본을 모본(母本)으로 하여 복인(復印)하고, 오대산 사고에 초본 혹은 방본(傍本)이라고 하는 교정쇄를 보관시켰다.<sup>22)</sup> 그 이후 실록이 간행되는 대로 계속해서 오대산사고에 봉안(奉安)했던바, 조선 태조부터 『철종 실록(哲宗實錄)』 까지, 곧 선조 39년 이후 1910년 일제강점시까지의 기록이 계속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에 봉안되어 왔다. 1909년 조선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오대산 사고에는 철종까지의 실록 761책, 의례 380책, 기타 서책 2,469책 모두 3,610책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한다.<sup>23)</sup> 그러나 일본의 조선점령이후인 1914년 조선총독 테라우찌(寺內)에 의하여, 오대산 사고본 일체가 일본 도쿄대학으로 불법반출 되었다.

실록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 대출되었던 책들이 화를 면하였고, 도쿄대학은 그중 27책을 1932년 5월 당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 현재 서울대학교)으로 돌려주어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圖書)에 보존되고 있었고, 나머지 수습된 서적은 최근까지 도쿄대 도서관 귀중본 서고에 계속 남아있었다.

## 2. 반환운동의 계기와 자료조사

환수위가 반환운동을 추진하기 전, 실록의 오대산 사고본이 도쿄대 도서관 서고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일부 학자들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있었다. 필자는 2004년 일본 교토에 머물고 있었는데, 교토대 도서관과 고서점가를 돌면서 한국사 관련 서적을 열람하던 중 일본 학자의 저술과 마주치게 되었다. 우연히 손에 집어들은 쓰에마쓰(末松保和)의 《이조실록고략(李朝實錄考略)》, 《청구사초(靑丘史草)》 권 2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경성제대로 돌려준 27권 이외에도 아직 도쿄대에 소장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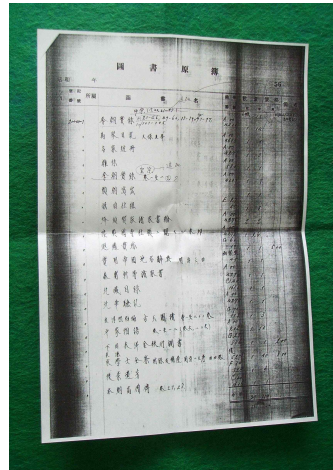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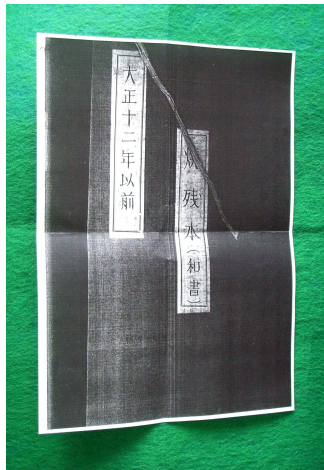


<사진 1> 도쿄대 귀중 서고 이조실록에 붙어 있는 메모 라벨, 배현숙 교수 촬영. 1927년 관동 대지진 당시 연구실에 대출되어 화재를 면했다고 적혀있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과 관계기관에 질의하며 조사하던 중, 계명문화대학교 배현숙 교수를 알게 되었다. 배현숙 교수는 1984년, 1988년 2차례에 걸쳐 도쿄대 귀중서고에서 실록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다. 배현숙 교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22) 『宣祖實錄』, 卷199, 책25. P192上右, 39년 5월 甲戌--- 傍本一件 卽是草本 而今無地庫可藏京虛棄可惜 藏於江原道五臺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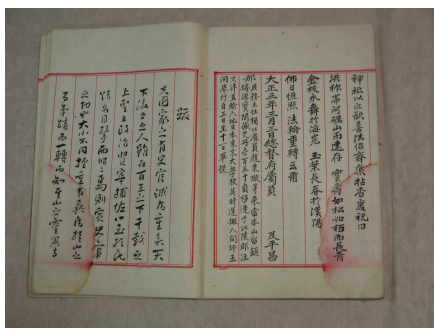
23) 宮内府, 「五臺山史庫調査報告書」. 隆熙 3年, <6. 史庫의 書冊 >



<사진 2-3> 도쿄대 도서관의 소잔본 목록 표지(왼쪽)와 도서목록(오른쪽)

1927년 관동대지진 당시 화재로 도쿄대 도서관은 수십만 권의 장서를 유실하게 된다. 그 뒤 타고 남은 귀중본을 수습하여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 데, 이것이 이른바 《대정 12년이전 소잔본 목록》이다. 여기에 화재에서 살아남은 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기록이 적혀 있다.

이를 기초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월정사에서 약탈경위를 기록한 《오대산 사적》을 열람하였다. 월정사 정보박물관에 보관중인 이 책에는 오대산 사고본의 유출에 대해 “총독부 관원 및 평창군 서무주임 히쿠치(樋口) 그리고 고용원 조병선(趙秉璇) 등이 와서 월정사에 머무르며 사고(史庫)와 선원보각에 있던 사책(史冊) 150권을 강릉군 주문진으로 운반하여 일본 도쿄대학교로 직행시켰다.” 고 기록하고 있었다.



<사진 4> 《오대산 사적》

오대산 사적에 등장하는 히쿠치가 진실로 조선총독부 직원이었는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대정 3년의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살펴본 결과, ‘히쿠치’가 평창군 서무주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직접 불법반출에 개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오대산 사적》이 지닌 기록으로써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는 도쿄대의 《사학잡지(史學雜誌)》이다. 1914년 도쿄대 역사학과 교수들이 편찬 발행한 이 잡지에는 도쿄대 교수 시라토리(白鳥庫吉)가 실록을 도쿄대로 가져온 당시의 경위를 기재해 놓았다.<sup>24)</sup> 이것은 일본 도쿄대가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실록의 약탈 사실을 도쿄대

24) 「李朝實錄に つきて」, 『史學雜誌』 第25編 2號, 大正 3. P 251

측이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 3.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구성

2005년 당시 봉선사(경기도 남양주시)는 산하 사찰인 수락산 내원암이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로 말미암아 소송이 진행되자, 대응 차원에서 친일파의 재산권 보호는 위헌이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광복 60년을 맞아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 조계사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3,000명의 대중이 운집하는 등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동시에, 내원암 사건도 2005년 12월 30일 사찰 측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운동했던 사람들은 내원암 사건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통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좀더 의미 있는 운동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이 분들은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실록 오대산 사고본 반환운동 제안이 나오자 모두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구성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도쿄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도 설정하였다.



<사진 5> 조계사 촛불집회. 3,000명이 넘는 대중이 운집,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족정기의 확립을 촉구 친일파재산환수법의 국회통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1,432점의 문화재를 반환받으면서, 문화재 반환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더 이상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탈 당시까지도 실록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던 월정사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는 조선 선조 연간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이래, ‘실록수호총섭’의 지위를 갖고, 오대산 사고를 수호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봉선사는 그간의 사정을 월정사에 전달했고, 월정사는 실록반환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재정지원까지도 맡아 주기로 했다. 그 결과 봉선사와 월정사 주지스님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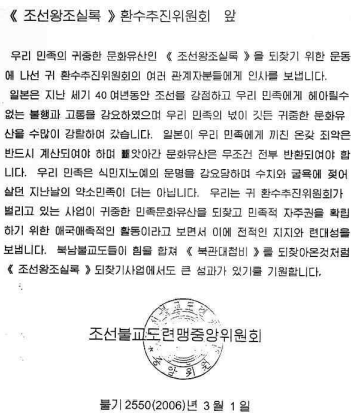
<사진 6> 밀부.  
조선정부는 월정사 주지를 ‘실록수호총섭’으로 임명한 뒤, 유사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밀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신표(信標)’이다. 월정사 정보박물관 소장

## 반환운동의 구체적 경과

### 1. 남북공조 - 조선불교도연맹과 연대

환수위는 2006년 출범식을 앞두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통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실록이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재인 만큼 남북공조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또한, 일본 측이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장차 ‘조일수교조약’ 체결시 북한이 실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바램도 담겨 있었다.

마침 3월1일 개성에서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이 열릴 예정이었고, 환수위 자문위원장인 김원웅 국회의원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환수위는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등 관련 자료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고, 북한은 곧바로 ‘남북이 힘을 모아 실록을 되찾자’며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이로써, 북관대첩비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자리에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또 한번의 남북공조가 이루어졌다.



<사진 7> 조선불교도연맹의 지지서한

### 2. 환수위 출범과 1차 회담

2006년 3월 3일, 환수위는 공식 출범했다. 환수위는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일본총리를 수신인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일본대사관의 야마모토 참사관은 면담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일반 도자기나 그림과는 다르게 한국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의 귀중한 문화재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반환운동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뒤이어 도쿄대학은 환수위가 선임한 재일동포 변호사를 통해 3월 15일 도쿄대 도서관장이 배석한 만남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했고, 환수위는 노회찬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제1차 협상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회담 당일, 도쿄대 도서관장은 전날 급작스런 모친상을 당했다며, 회담에 불참했고, 대신 도서관 사무부장을 비롯한 실무자 3명이 회담에 참가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도쿄대는 실록의 소장사실을 공식 시인했고, 소장하고 있는 실록의 권수도 이제까지 알려진 46책이 아니라 중종실록 1책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4월 17일까지 실록의 반환에 관한 도쿄대의 공식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환수위는 그동안 도쿄대가 소장한 실록의 대출기록 및 연구성과에



대해 질의했다. 도쿄대 도서관측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왕조실록이 연구 목적으로 대출된 적은 없었고,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때문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하게 되었다’는 도쿄대 측의 변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오히려 더욱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으로 돌려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도쿄대와 만남자체가 불가능 할 거라며 회의적이던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첫 번째 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냉담했고, 회담에 도서관장이 배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회담이 격에 맞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사진 8> 도쿄대와의 제 1차 회담(도쿄대 소회의실)

### 3. 실록 반환운동의 확산과 2차 회담

환수위는 1차 회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뒤, 반환운동을 일본사회에 알리고자 재일 동포 최대 단체인 재일본거류민단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민단은 실록 반환운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쿄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직접 반환요청서를 전달하고, 민단 신문에 관련사실을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7일 제2차회담이 열렸다. 도쿄대는 ‘국립대학에서 법인으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반환을 위해서는 ‘처리규정이 만들어 진 뒤, 외무성, 문부성과 협의를 거쳐야 하니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기간은 말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우리측은 ‘해방된 지 60년이 지나도록 기다려 왔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약탈문화재인 것이 확인된 만큼, 즉각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만약 5월 10일까지 ‘총장 혹은 그에 준하는 인사’가 반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최후통첩했다. 2차협상단 단장으로 참가한 김원웅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도 북관대첩비의 반환에 동의했는데, 일본의 지성과 양심의 상징인 도쿄대가 일본 우익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만도 못한 처사를 하는 것에 실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담은 다소 격양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도쿄대는 당혹해 하며 일단 우리 측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총장의 일정을 고려하되, 5월 10일을 전후해서 3차 회담을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이날 총장 혹은 그에 준하는 의사가 실록반환에 대한 의사를 직접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 4. ‘조선왕조실록 되찾기 의원모임’ 결성과 대중운동 확산

환수위는 귀국 후 4월 20일, 국회에서 환수위 활동 경과보고와 대책 마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수위 자문위원장 김원웅 의원과 강혜숙, 노회찬 의원 등은 두 차례에 걸친 도쿄대학과의 방일 회담 결과를 들은 뒤, 실록반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으로 가칭 '조선왕조실록 되찾기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의원모임을 결성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져, 여야를 망라한 32명이 서명한 가운데 5월 2일, 결성식이 열렸다. 결성식 자리에는 환수위 공동의장 정념스님과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김원웅(열린우리당), 홍문표(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각 당 대표를 맡고, 강혜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간사를 맡게 되었다. 의원모임은 10일로 예정된 도쿄대의 입장 발표가 무성의할 경우, 즉각 법정소송을 진행할 환수위의 계획에 동의한 뒤, 5월 3일 일본 외무성과 도쿄대에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제출했다.

의원모임이 결성된 후부터 국내 여론도 실록 반환운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사저널,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실록 반환운동에 대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고, 예능프로인 MBC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에서도 환수위와 함께 실록반환운동을 다루겠다고 요청, 5월 6일 첫 방송이 나간 이래 많은 대중적 호응이 있었다.

#### 5. 3차 회담과 도쿄대의 기증 결정

그 후 5월 12일, 도쿄대는 도서관장이 직접 나와 5월 31일 3차 회담을 진행하겠으며, 중대발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5월 31일은 지방자치 선거일이었으므로, 우리는 도쿄대가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뭔가 심각한 결정을 통보할 것임을 직감했다. 5월 10일을 전후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심도 있는 취재를 시작했고, 31일 벌어질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환수위는 3차 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뒤, 서울에서 ‘도쿄대가 실록반환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좀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부탁했는데, ‘도쿄대가 실록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며, 원래 31일 환수위와 회담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을 서울대가 하루 전날 미리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다음날 5월 31일, 제3차 회담에서 도쿄대 도서관장은 ‘서울대학교의 창립 60주년과 규장각 창립 230주년을 축하하고, 도쿄대학과 서울대학교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도쿄대학이 소장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로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환수위에 전달한 뒤, 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미리 발표된 사실에 대해 환수위쪽에 거듭 사과했다.

“3차 회담을 약속해 놓고 언론에 미리 발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수위와 회담이 끝난 뒤, 서울대와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는데, 서울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하는 바람에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울대 기증'사실을 문제 삼지는 않았고, 다만 반환이 아닌 기증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도쿄대의 부도덕성을 추궁했다. 실록의 반환이 진정으로 한일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

다면, 일본지성과 양심의 상징인 도쿄대가 앞서서 반환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 도서관장은 “부득이 ‘기증’이란 단어를 쓰지만, 한국 측에서 무슨 단어를 쓰는가는 관여하지 않겠으며, 실록의 반환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수활동을 주도한 단체로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3차 회담과정에서 드러난 서울대의 입장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 6. 서울대의 역사인식 비판

도쿄대는 5월 1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증’을 결정한 뒤, 5월 15일 도쿄대 부총장이 직접 서울대를 방문하여 먼저 기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나 다른 단체의 반환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는 불과 2주일 만에 무비판적으로 도쿄대의 기증결정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환수위는 5월 31일 현지에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대가 실록 ‘기증’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불법약탈문화재’라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이번은 1965년 한일협정때 처럼 일본으로부터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마지막 성과를 앞두고, 도쿄대의 기증제안을 서울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자기 물건을 남에게 기증받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도쿄대의 제안을 역사인식 없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남북한 불교도, 일본 동포사회, 국민모두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승리’의 영광을 퇴색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금 일본에 의해 농락당하고 타협한 1965년도의 상황으로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실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울대를 비판하는 것은 실록반환이란 국민적 경사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록의 반환 때까지 부정적 논의는 자제하기로 의견을 정했다.



<사진 9> 도쿄대 도서관장이 환수위 간사 법상스님에게 실록을 서울대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결정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10> 아사히 신문 기사  
환수위의 활동과 도쿄대의 반환 결정과정을 보도하고 있다.

## 반환근거에 대한 도쿄대와 환수위의 주요논쟁

환수위는 도쿄대와 3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실록 반환을 위한 논리적 공방을 거듭했다. 또한 애초에 반환운동을 준비하면서 법정소송을 고려했기 때문에, 반환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 다음은 환수위가 변호사와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다듬어졌고, 도쿄대와 서면을 통해 혹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회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내용들이다.

### 1. 약탈문화재 입증 여부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문화재가 약탈문화재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약탈문화재의 원소재지, 약탈경위, 현 소장자의 소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야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도쿄대는 환수위로부터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전달 받은 뒤, ‘실록의 취득 경위를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수위는 이미 자료조사를 통해 실록이 도쿄대로 반출된 경위와 소장상황을 명확히 입증했고, 제시한 자료도 도쿄대가 발행한 서적(《사학잡지》), 도쿄대의 자료, 일본학자들의 기록, 조선총독부의 문서 위주였으므로, 이를 도쿄대가 부인하기 어려웠다.

### 2. 유네스코 국제협약

환수위는 반환의 주요 근거로 유네스코 국제협약을 제시했다. 유네스코는 1970년 11월 14일 제 16차 총회에서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이해에 장애가 되므로, 관계국가에 동 국제협약을 권고했다. 또한 동 협약의 제11조는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를 정의함에 있어서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5)</sup>

실록은 1913년은 일제가 강제로 조선을 침탈한 뒤,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되었으므로, 유네스코가 정의한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것이 환수위의 논리였다. 그러나 유네스코 협약은 1970년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에만 효력을 지닐 뿐, 소급효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록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수위는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전문가 회의(1978, 세네갈 다카)에서 채택한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는 원칙을 보충해서 제기하며, 도쿄대가 일본을 대표하는 만큼 즉각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 3. 도쿄대의 불법점유

도쿄대의 실록 취득경위가 조선총독부에 의한 것이라면, 식민지 청산 문제와 관련을 지니게 된다. 일본의 조선침탈이 불법적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선총독과 도쿄대 교수에 의해 실록을 도쿄대로 반출한 행위

25)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는 원인무효의 이유 없는 행위이다. 도쿄대학의 점유 또한 악의의 점유이므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당연히 조선왕조실록을 만들고 지켜왔던 한국과 한국민족의 품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 것이 환수위의 논리였다. 만약 도쿄대가 조선총독부의 기증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조선침략이 정당하다는 논리이고, 이것은 도쿄대가 지닌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쿄대가 실록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환수위는 월정사를 원고로 ‘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도쿄재판소에 접수해서, 일본 법원이 지닌 역사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묻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4. 한일협정의 문제

이번 환수운동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문화재 청구권 소멸’과 ‘문화재의 인도 및 기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환수위는 회담을 추진하면서 ‘강제징용에 끌려간 형제를 찾는 마음으로 위안부로 잡혀간 누이를 찾는 마음으로 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고, 약탈당한 문화재를 당당하게 반환 받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고자 했다. 사실 일본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모든 문제는 종결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록의 경우도 사실상 종결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대뿐만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다.

환수위는 한일협정 문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실록반환의 중요한 논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 측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 보고한 ‘한일협정 제5차 회담의 보고서’(1960년 11월 21일)에 의하면, 일본 측 수석대표 사와다는 문화재 문제에 관련한 세 가지 조건을 말하면서 “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일협정 당시 도쿄대는 국립기관이었고, 그렇다면 ‘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원칙에 의해 당연히 실록은 한국에 반환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었고, “한일 양측 관계기관의 부주의로 실록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즉각 반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5. 재산처리규정의 미비

도쿄대는 2차 회담에서 ‘현재 도쿄대는 국립학교에서 독립법인으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재산처리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쿄대는 ‘반환을 결정하더라도 외무성과 문부성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니 당장 답변할 수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재산처리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환수위는 도쿄대는 이미 1932년 5월 경성제대로 조선왕조실록 27권을 보관 전환했던 사실을 들었다. 만약 재산 처리 규정이 없어, 처분할 수 없다면 앞서 1932년의 전례를 근거로 실록을 한국 측으로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쿄대가 ‘재산처리 규정이 미비’해서 돌려주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는 도쿄대가 서울대 규장각으로 실록을 ‘기증’하게 되는 주요한 전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수위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도쿄대는 국립기관

에서 독립법인으로 전환했으므로, ‘재산처리규정’을 세울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독립법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아니겠는가는 항의였다. 도쿄대가 독립법인이라면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쿄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내 반환 이후의 논란

실록의 반환결정이 내려지자 곧 ‘소장처’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실록의 귀환은 이제까지 진행된 문화재 반환운동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었고, 국보급 문화재가 민간주도의 반환운동을 통해 돌아온 최초의 사례였으므로, 내부처리지침이 따로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실록에 앞서 민간 주도로 되돌아온 북관대첩비의 사례가 있지만, 이는 곧 원소재지인 함경도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므로, 실록과는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실록은 반환운동을 진행한 쪽과 기증받은 쪽이 달랐으므로 논란은 더욱 가중 되었다. 도쿄대가 서울대로 기증사실을 발표하자, 사회일각에서는 ‘일본의 양심세력에 감사한다’는 흐름이 있었고, 오히려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온 환수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시각도 있었다.

환수위는 일단 도쿄대를 문화재 약탈자에서 선의의 기증자로 탈바꿈 시켜준 서울대를 비판했고, 약탈자가 소장처를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을 반대하며, 국립고궁박물관, 독립기념관, 오대산사고 중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소장처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실록의 소장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맺음말 - 실록 반환운동의 의의

### 1. 민간차원의 준비와 운동을 통한 약탈문화재 환수

조선왕조실록은 귀환 후 문화재청의 ‘국보지정예고’를 거쳐, 국보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 사건은 실록이 지닌 문화적 상징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떠나, 민간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열망을 모아 환수해온 문화재란 의미에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주요한 원인으로는 월정사란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논리로 도쿄대를 압박한 것에 있었다. 도쿄대는 소위 ‘일본 지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문화재 약탈자로 지목 받으며 법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약탈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실록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의 품으로 되돌아 올 인연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환수위의 입장이었다.

### 2. 빼앗긴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 의식 회복

반환이나 기증이나의 형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문제제기된 약탈문화재의 문제는 대부분 문화재란 ‘유형(有形)’에 지나치게 얽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우리나라에 2,077책이나 있고, 거기에 오대산본 47책이 보태어 진다고 해서 새로운 연구성과가 기대되거나 문화발전에 비약적 발전으로 기여하는 일은 아니었다. 환수위가 목적했던 것도 종지와 먹으로 쓰인 실록을 되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민족의 자존심과 실록에 기록된 역사의 정신을 되찾아 오는 것이었다. 지금 돌아온 실록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헤아려 본다.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찾아오는 일은 ‘식민지시대의 청산’과 관련된 일이고, 민족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일 것이다.

### 3. 향후 과제 - 냉소주의 극복과 새로운 반환 운동 전개

철저한 역사의식의 필요성은 비단 실록뿐만 아니라 약탈문화재 반환운동을 추진할 때 명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빼긴 자와 빼앗긴 자가 지닌 입장차이이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해자는 철저히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참회를 구하는 용기가, 피해자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무모하지만 반환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실록 반환과정에서 도쿄대는 비록 기증이라는 편법을 사용했으나, 환수위 측의 면담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자 이를 인정하는 등 주목할 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증을 통한 실록의 반환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환수위는 이런 좌표 위에서 실록반환이란 불가능에 도전해 왔고, 아직도 남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금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례’<sup>26)</sup>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끝.

26) '조선왕실 의례'는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행정처리 따위를 상세하게 적은 기록이다. 왕실은 의례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록으로 남겨 비용을 아끼고 혼선을 막고자 의례를 제작했다. 조선왕실의례는 조선시대 최고의 기록문화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6. 3월 유네스코에 '조선왕실 의례'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의례 중의 일부가 대정 11년(1922)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왕실에 기증됐고,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 왕실도서관에 명성황후의 장례절차를 기록한 '명성황후 국상도감의례'와 옥쇄제작 과정을 기록한 '보인소의례' 등 '조선왕실의례' 71종이 소장되어 있다.

#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Negotiations at the Civil Level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 Cas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 Introduction

The remaining 47 volumes of the Odaesan copy of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had been housed in Japan's Tokyo University for 93 years, returned to Korea on July 14, 2006, with the 'transfer' ceremony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was four months after the formal launch of the Committee for the Return of the Annals (the Return Committee hereafter). It was a great achievement for the Korean people, which was made possible by the endeavor of everyone who worked for its return and international support.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signed the Korea-Japan Agreement on June 22, 1965. At that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returned to Korea 1,432 cultural proper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Korean and Japanese Cultural Property and Cultural Cooperation, which was one of the four conventions made under the Agreement. But it was not restitution in a true sense, for it was made in the fashion of 'transferring objects owned by Japan.' Further, due to the clause on the 'relinquishment of claim right,' the Agreement itself operated as a stumbling block to restitution campaign. Since then, Korea had to depend on Japan's voluntary donation for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The campaign to bring back the Odaesan copy of the Annals made it a goal to overcome those constraints. The Return Committee's activity was directed not at Japan's voluntary donation, but at direct confrontation by public announcement of the problem and legal action, if necessary. The Return Committee consistently held the view that the return campaign of stolen cultural properties should go beyond the 'restitution of tangible assets' and take the course to 'correct the unsettled part of past history.'

Despite the initial defeatist thinking about its practical difficulties, the Return Committee forged the restitution campaign of the usurped cultural property by holding three meetings with Tokyo University and presenting invincible evidence and finally, pulling through its return. This paper presents the main activities of the restitution campaign of the Annals, its significance and unresolved issues.



## **Preparatory Activity for the Restitution Campaign of the Annals**

### **1. Outlying of the Odaesan copy of the An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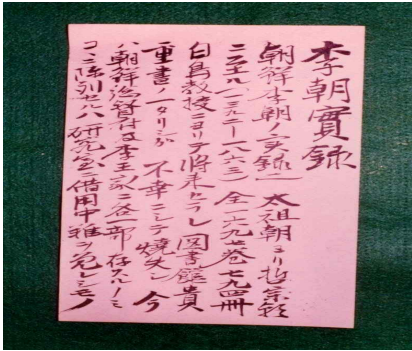
The Annals consist of 1,893 volumes and 888 books of historical records encompassing 472 years (1392-1963) during 25 reigns of kings of the Joseon Dynasty from King Taejo to King Cheoljong. It is Korean National Treasure No. 151 and registered with UNESCO's Memory of the World. When the 1592 Japanese invasion of Korea came to an end, the Joseon government moved to reproduce several copies of the Annals from those placed in the Jeonjeu Archive, the only extant copy. The government completed this from July 1603 to March 1606 (from the 36th to 39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and then sent the draft of the Annals (also known as Chobon) to the Odaesan Archive, where they were preserved.

Following this period, important national documents, including the Annals and Royal protocols, were housed in the Archive each time they were published. According to the 1906 survey, the Odaesan National Archive held a total of 3,610 books, including 761 Annals, 380 Royal Protocols, and 2,469 other documents.

However,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documents kept in the Archive were illegally displaced to Tokyo University by Japan. It is known that most volumes of the Annals were lost in the 1927 Great Kanto Earthquake in Japan. Fortunately, those on loan escaped the fire and survived. Tokyo University returned 27 of them to Kyungsoong Imperial University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ay 1932, which are housed in the Gyujeongguk Royal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rest were kept until recently in the Precious Books Collection at the Tokyo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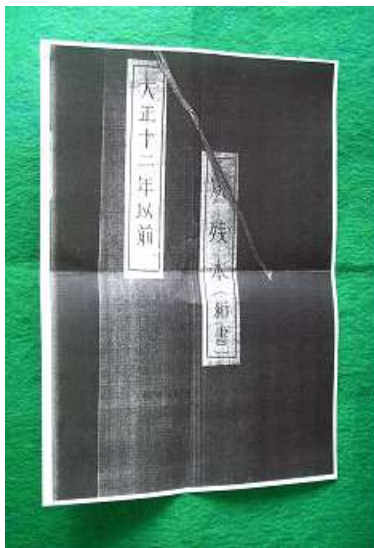
### **2. The Start of the Restitution Campaign and Material Survey**

Before the Return Committee began the restitution campaign, it had been almost forgotten in our memory except for a handful of scholars that some volumes of the Odaesan copy of the Annals still remain at the Tokyo University Library. While I was checking through Korean history books in Kyoto in 2004, I ran into a writing by Suemas, a Japanese scholar, that says that Tokyo University still has some volumes of the Annals, excluding the 27 which were returned to Kyungsoong Imperial University. I confirmed this fact with Professor Bae Hyeon-suk at Keimyung College. Professor Bae did some research with the volumes remaining at the Tokyo University Library twice, in 1984 and in 1988.



<Photo 1> The label attached to the Annals kept in the Precious Books Collection, Tokyo University Library (photo by Prof. Bae Hyeo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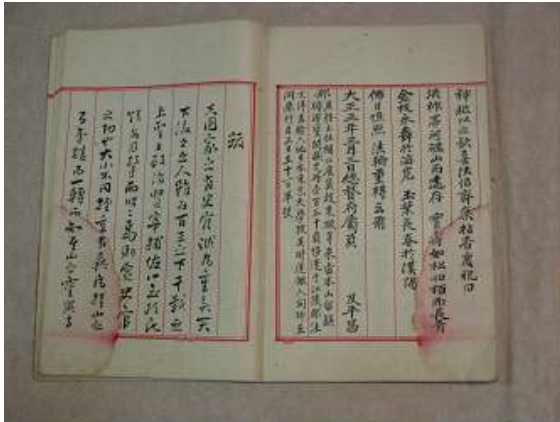
The label says that the volumes escaped fire being on loan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7.



<Photo 2 and Photo 3> The cover of the list of volumes lost in fire at the Tokyo University Library (left) and the list (right)

The Tokyo University Library lost hundreds of thousands of books in the fire from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7. After that, the Library collected the books that had survived the fire and created the 'List of Surviving Books Collected before the 12th Year of Daejung.' The volumes of the Odaesan copy of the Annals which escaped the fire are on the list.

『Account of Odaesan』 (Odaesan sajeok) which is currently stored in the Woljeongsa temple, Gangwon-do province is a testament to the illegal usurpation of the books by Japan, and states that "a Japanese official from the Government General, Higuchi, who was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in Pyeongchang County, and Jo Byeong-seon, an employee, removed 150 historical books both from the Archive and Royal Family Pavilion (Seonwon Bogak) via Gangneung to Tokyo University, Japan, during their stay in the temple."



<Photo 4> Odaesan sajeok

It was quite important to confirm whether Hikuchi, whose name appears in Odaesan sajeok, really work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Checking the Staff List of J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for the 3rd year of Daejung, we found Higuchi listed as General Affairs Manager of Pyeongchang County. This proved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in the illegal displacement of the Annals and at the same time, advanced the credibility of Odaesan sajeok as an official record.

Another important document was 『Sahak japji』 (History Magazine) published by Tokyo University. The document, which was produced by history professors of Tokyo University in 1914, notes how a Tokyo University Professor named Siratori brought the Annals to his university. Because it was a document produced by Tokyo University, it served as critical evidence in making the University concede on the usurpation of the Annals.

## 2.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Return of the Annals

In reaction to the lawsuit filed by descendants of pro-Japan collaborators to recover the land belonging to its branch Naewonam Temple in Mt. Surak, Bongsun Temple filed an unconstitutional law trial to the Court in 2005 to the purpose that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is unconstitutional. The incident developed into a mass movement to urge the passage of the Property Restitution Act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ime for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Thanks to public support, the Act was legislated and the lawsuit ended in the Temple's victory.

With the wrap-up of the Naewonam Temple incident,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hoped to work further for greater cause and agreed to join in the restitution campaign of the Odaesan copy of the Annals. The direction of campaign was set to file a civil 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okyo University. The participation of Woljeongsa temple was essential to win the suit, because it was the chief monk of the temple to protect and maintain the Odaesan Archive from its establishment to usurpation.

Woljeongsa temple agreed to support the campaign and promised financial assistance. Thanks to this, the Committee for the Return of the Annals was set up, co-chaired by the abbots of

Bongsunsa temple and Woljeongsa temple.



<Photo 5> Milbu (密符)

The governmental certificate from the material refers to a tally (milbu 密符) with which one could mobilize military forces possessed by Woljeongsa temple, and it also reveals that the abbot of the temple served as chief of monk army to administer and protect the Odaesan Archive. Tally refers to one that was bestowed upon the Buddhist abbot of the temple by the Ministry of Rites. It is comprised of a pocket, belt, and tag. On both sides are engraved inscriptions. The tally was usually provided to magistrates (yusu), governors (gwanchalsa), and commanders-in-chief (tongjesa and jeoldosa) so that they could mobilize the military forces. For its photo, see Appendix 11.

## Progress of the Restitution Campaign

### 1. Alliance with Korean Buddhist Association in North Korea

The Return Committee sought alliance with the Korean Buddhist Association in North Korea via the help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Because the Annals were a cultural asset associated with national identity, South-North cooperation was desirable. If Japan would argue that the claim right had expired based on the Korea-Japan Agreement, we hoped that North Korea might have a chance to receive it sometime in the future.

We sent a message to North Korea through South Korean Lawmaker Gim Weon-wung, Chair of the advisory body of the Return Committee, who was visiting the North to attend the return ceremony of the Bukgwan Battle Monument in Gaesung on March 1, 2006. North Korea sent us back a letter expressing its support and intent for alliance.

《조선왕조실록》환수추진위원회 앞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되찾기 위한 운동에 나선 귀 환수추진위원회의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일본은 지난 세기 40여년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빼앗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수없이 강탈하여 갔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죄악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며 빼앗아간 문화유산은 무조건 전부 반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며 수지와 굴욕에 젖어 살던 지난날의 악소민족이 더는 아닙니다. 우리는 귀 환수추진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되찾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애국애족적인 활동이라고 보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북남불교도들이 힘을 합쳐 《북관대첩비》를 되찾아온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되찾기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불교도련맹중앙위원회

불기 2550(2006)년 3월 1일

<Photo 7> Letter sent by the Korean Buddhist Association in North Korea expressing support for the restitution campaign

## 2. Launch of the Return Committee and First Meeting

On March 3, 2006, the Return Committee was launched officially. The Committee visited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nd submitted a letter addressed to Japanese Prime Minister demanding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After this, Tokyo University notified the Return Committee that it accepts our request for a meeting on March 15, and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ill attend it. The Return Committee formed the first-round negotiation team, headed by Lawmaker Roh Hoi-chan.

On the day of the meeting, the Director of the Library did not come to the meeting on the excuse of his mother's sudden death the day before. On his behalf, three officers attended the meeting, including General Affairs Manager of the Library. In the meeting, Tokyo University officially admitted that it has the Annals and confirmed that there is one more volume on King Jungjong in addition to the 46 volumes whose holdings are already known. It also said that it would inform us of its official view on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by April 17.

According to the Library officials, the Annals had never been checked out for research purpose, nor had any research paper been produced on them. This situation bolstered the Committee's position that they must return to Korea to enable research. Before the meeting, many people were skeptical about the possibility of having a meeting with the University official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we had a very successful meeting. But the response from the media was amazingly cold, many reporting that 'the meeting was not up to the standard' as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as absent from the meeting.

## 3. Spread of the Restitution Campaign and Second Meeting

The Return Committee sought the help of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commonly known as Mindan), the largest organization in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in order to raise publicity of the restitution campaign in Japan.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campaign, the Mindan issued a letter to Tokyo University requesting its restitution and posted articles on

newspapers.

The second meeting was held on April 17, 2006. Tokyo University officials said that "since the University changed its status from a national university to an incorporation not long ago, it does not have clear guidelines on the handling of property, and asked us to wait until the guidelines are set up." Then they gave negative remarks that "after the guidelines are established, they have to discuss it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his usually takes a lot of time and it is hard to predict exactly how long it will take."

The Committee protested strongly and demanded that they "return the books immediately as they were confirmed to have been stolen." We gave the University an ultimatum saying that if the 'University President or an official of similar status' does not inform us of its restitution in specific terms by May 10, the Committee would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University. Lawmaker Gim Weon-wung, who headed the Korean team in the second meeting, said that "Even Yaskuni Shrine agreed to returning the Bukgwan Battle Monument.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Tokyo University, the symbol of Japanese intellect and conscience, refuses to do what the Yaskuni Shrine, the symbol of the Japanese right wing, did."

Embarrassed at these remarks and heated mood, they accepted our proposal and said that they would hold the third meeting around May 10 and on the same day the University President or someone of similar standing would express views on the restitution of the books in person.

#### **4. Creation of Lawmakers' Meeting for the Recovery of Joseon Wangjo Sillok and Deveolpment into a Mass Campaign**

Upon returning to Korea, the Return Committee held a meeting on April 20 to report its activities and discuss future action. Lawmaker Gim Weon-wung, chair of the advisory body for the Return Committee, and other participants decided in the meeting to form the Lawmakers' Meeting for the Recovery of Joseon Wangjo Sillok. Thirty-two lawmakers from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ecame members. They sent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okyo University an official letter urging for the return of the Annals.

After the creation of the Lawmakers' Meeting, people began paying attention to the campaign. Sisa Journal, the Hankyoreh, and Kyunghyang Daily reported articles on the restitution campaign, and a popular MBC television program, Exclamation Mark!, broadcast a special edition on the campaign under the title, Great Expectations 74434.

#### **5. Third Meeting and Tokyo University's Decision for Donation**

We arrived in Japan for the third meeting on May 30 and heard that Tokyo University decided to make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After some inquiries, we learned that what we heard was true and the University was going to announce it after meeting with the Return Committee the next day, bu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nt ahead and announced it one day in advance.

The next day, in the meeting, the Director of the Library gave us a letter which says that "Tokyo University decided to donate the remaining volumes of the Odaesan copy of Joseon Wangjo Sillok kept in the library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230th anniversary of the Gyujeong Royal Library." He apologized to us that the decision was known to the media before the meeting.

"We planned to have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nounced it to the media in advance, complicating the situation."

In the meeting, we did not take issue with Tokyo University's decision to donate the Annal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we criticized Tokyo University for its immorality in taking the format of 'donation,' not 'restitution.' We believed that if it truly hop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versity, the symbol of Japanese intellect and conscience, should have decided to retribute them. The Director of the Library said that they "have to use the term, 'donation,' but they do not care whatever term Koreans use."

Since the Committee was the official body that had led the restitution campaign, we welcomed its return. But the way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dled the situation around the third meeting disclosed many problems.

## **6. Criticis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Historical Consciousness**

On May 10, Tokyo University held a special Board of Council meeting and decided to donate the remaining Odaesan copy of the Annals. Five days later, Vice President of Tokyo University visi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roposed to donate it. Tokyo University made it clear to us that they never received a request for restitution, neither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nor any other organ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epted Tokyo University's proposal of donation in just two weeks without making a critical review. On May 31, the Return Committee announced a statement in Japan criticiz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accepting the 'donation.'

"It has been proved that Joseon Wangjo Sillok is an illegally plundered cultural property. We almost had the chance to make Japan retribute the property, instead of donating it, in order not to repeat what happened in 1965 based on the Korea-Japan Agreement. Having reached the final stage of negotiation, we feel very sorry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epted Tokyo University's proposal of donation. Now, we will get a donation of what is ours, which is absurd.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epted Tokyo University's proposal rashly without critical historical consciousness, tarnishing the glory of 'victory' to be won from broad-based support and alliance of Buddhist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Japanese community in Japan and Korean people on the Peninsula.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reflect on returning Korea's history

back to that of 1965, when Korea was tricked by Japan and compromised."

Then, we decided to restrain negative discussion until the return of the Annals, thinking that excessive criticism tow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might overshadow the national event for its return.



<Photo 9> The Director of the Tokyo University Library presents to Monk Beopsang of the Return Committee a document stating that Tokyo University will donate the Annal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Photo 10> Asahi Newspaper reports on the activity of the Return Committee and Tokyo University's decision for donation.



## Debate on the Ground of Restitution between Tokyo University and the Return Committee

The following presents main points of the debate between Tokyo University and the Return Committee over the basis of our demand for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 1. Proof of Usurped Cultural Property

In order to make the restitution of a usurped cultural property, it is important to prove that the cultural property concerned was usurped. This requires provision of accurate information on where it was originally located, how the plundering took place, and how the current collector



obtained it.

After receiving the request for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from Return Committee, Tokyo University argued that they "do not know how the Annals were obtained and investigation will take a lot of time as it happened long ago." The Return Committee provided all available information to prove how the Annals were transferred to the University and how the University obtained them. The materials presented were mostly books and documents published or released by the University, records made by Japanese scholars, and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University to deny it.

## **2. UNESCO International Convention**

UNESCO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the 16th UNESCO General Conference held on November 14, 1970. The Convention considers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re obstacles to that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and therefore recommends "interested States to observ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is end."

Article 11 from the Convention also prescribes that "the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der compulsi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occupation of a country by a foreign power shall be regarded as illicit." See appendix 15. The Return Committee employed the logic that the Annals were transferr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in 1913 after the invasion of Korea by Japan, so it fits UNESCO's definition of illicit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But the UNESCO Convention cannot be applied to what happened before 1970. So, the Return Committee complemented it with the principle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Meeting of Experts in Dakar, Senegal, in 1978, which recommends to "return objects to their country of origin which are indispensable to people in understanding their origin and culture."

## **3. Illicit Appropriation by Tokyo University**

Given that Japanese aggression towards Korea was illegal, Tokyo University's appropriation of the Annals, which were displaced to Japan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should be declared void and mala fide intention. If Tokyo University had argued that the donation of the Annal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was legitimate, it means that Japan's invasion into Korea was legitimate, which would reveal Tokyo University's problematic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evasion of responsibility. The Return Committee expressed that if Tokyo University would not admit its illicit appropriation of the Annals, the Return Committee would file a suit in the Tokyo Court in the name of Woljeongsa temple as the plaintiff, in order to confirm Japanese court's position on that period of the history.

#### **4. Alliance with Korean Buddhist Association in North Korea**

The focus of the return campaign was to overcome the constraints of 'expiration of the right to claim cultural property' and 'transfer and donation' prescribed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f 1965. As a matter of fact, Japan's position is that all problems with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were resolved, and this was the same with the Annals. This view is widespread in Japan, including the government, Tokyo University and society at large.

Reviewing the Korea-Japan Agreement in depth, the Return Committee found an important rationale for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According to the report on the fifth-round talks for the Korea-Japan Agreement (November 21, 1960), Chief of the Japanese Delegation Sawada stated that "government-owned cultural properties will be returned in principle," while speaking of three conditions on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y. Based on this statement, the Return Committee asserted that "since Tokyo University was a national i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the Annals must have been returned the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e Committee accentuated that "if it was omitted for carelessness on both sides, it should be returned right away this time."

#### **5. Lack of Regulations on the Treatment of Property**

In the second meeting, Tokyo University argued that it has no regulations on the treatment of property and needs to discuss the matter with associated organizations. Regarding the 'lack of regulations on property,' the Return Committee reminded the fact that Tokyo University already returned 27 volumes of the Annals to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in May 1932. If the lack of regulations is the problem, it could follow what it did previously and return it to Korea. This might have had an effect on Tokyo University's decision to donate the Annal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o the need to 'discuss with associated organizations,' the Return Committee said that Tokyo University should establish regulations on its own property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if it could not do so, we would have to take legal action.

### **Controversy after the Return of the Annals**

Once the return of the Annals was decided on, controversy sparked over its depository. Since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national treasure was returned from abroad on the initiative of civilians, there were no clear guidelines on how to handle it. Moreover, in this case, the negotiator and the recipient were different. When Tokyo University announced its decision to donate i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some people expressed 'gratitude for the conscientious group in Japan.' Some even tried to downplay the efforts made by the Return Committee.

The Return Committee criticized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transforming the status of Tokyo University from a usurper of cultural property to a good-willed donator. With a view

to preventing a precedent that the usurper decides on where to put it, the Committee opposed placing them in the Gyujanggak Royal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lso notifie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at the Committee hopes that the Annals will be housed in a place where its historical meaning is maximized, and recommended three places,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Independence Hall, and the Odaesan Archive. The final decision on the depository has not been made yet.

## **Conclusion - Significance of the Restitution Campaign**

### **1. Return of a Usurped Cultural Property through Civil-level Preparation and Campaign**

The restitution campaign of the Annals has special meaning beyond the return of an asset of great symbolism and cultural value, in the sense that civilians capped Korean people's wishes and brought it back. We put pressure on Tokyo University by saying that a legal suit would be filed in the name of Woljeongsa temple and it proved an effective strategy. The University felt very uncomfortable for the possibility to appear in court as a usurper of cultural property.

To win or lose the suit was not important to the Committee. What we regarded important was to show our wishes to bring back a usurped cultural asset and to lay the ground for the Annals to return someday to our people and our land to which they belong.

### **2. Recovery of Historical Consciousness**

Regarding the format of restitution or donation, many people say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it back in any fashion." Korea has 2,077 volumes of the Annals and it is hardly expected that the addition of another 47 volumes will make great cultural progress. What the Return Committee aimed for was not just to bring back books with letters in ink, but to recover the pride of a usurped nation and the spirit of history recorded in the Annals.

I think about 'what is contained' in the Annals that made it home? To recover a usurped cultural asset is related to settling the colonial history and healing the pain of Korean people.

### **3. Future Agenda: To Overcome Cynicism and Begin a New Restitution Campaign**

We need to have clear historical consciousness in deploying a restitution campaign of usurped cultural propert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the usurper and the usurped. To overcome the differences, the wrongdoer must listen to the voice of conscience and make a confession, while the victim should overcome defeatism and cynicism and muster the courage to take the challenge. In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Tokyo University

took the handy way of donation, but they were willing to meet with us and admitted the fact, when confronted by strong evidence.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through 'donation' is only a half success. We are left with a lot of work to do ahead of us.

It is in this mindset that the Return Committee challenged the almost impossible goal of the restitution of the Annals and is currently working to bring back 'Royal Protocols' held by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of Japan.

[Presentation]

## 한국문화재 반환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대안

Tainted Treasures - Korean Art and Cultural Objects in Japan:  
Opportunities for New Thinking and Pragmatic Solutions

•  
앤드류 호밭

Andrew Horvat

일본 게이자이대 경제학부 교수, 전 아시아재단 일본 대표  
Professor, Economics, Tokyo Keizai University, Japan

## 한국문화재 반환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대안

우선,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관계자들 특히 이 삼열 사무총장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이 예술, 예술경영, 국제법 혹은 문화정책 등 분야에 별로 전문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백하고자 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본인이 겪은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이 2004년 11월 도쿄에서 "때 묻은 문화재-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와 전후 유럽의 예술 관련 논쟁의 해결방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도왔던 일련의 유사한 행사의 토대 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영광스럽고 기쁘기도 하다. 당시 사흘 동안의 토론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의 참가자들이 군사 강점과 식민 통치 시기에 탈취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4년 심포지엄이 시작되면서부터 참가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인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더 많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심포지엄 초기에 한국 참가자는 918-1392년 중에 제작되어 남아있는 한국의 회화 중 80%가 일본에 있다고 전하면서, 고려시대의 불화(Buddhist painting)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참가자는 134점의 고려 회화 중 단지 4점만이 한국에 남아있고, 106점이 일본인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 소재한 이들 한국 불화에 한국인들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또 다른 한국 참가자는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고려의 불화가 쉽게 일본으로 갈 수 있었고, 이들 불화들이 동일한 종교적 믿음을 가졌던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문화 접촉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참가자는 단지 다수의 한국 불화가 일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본에 옮겨졌다고 추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히데요시 침략시기에 이미 불화가 일본에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고, 히데요시의 군대가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점 역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6점의 불화 모두가 약탈 문화재라거나 그것들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억압받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 때문이 아닌 국내의 억압에 따른 결과로서 불화들이 망실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불화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외부 사람들과 불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2004년 도쿄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하야시 요코 교수는 일본인 소유의 한국 문화재에 대해 한국인이나 다른 연구자들의 충분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에서는 예술품에 대한 전시가 빈번히 이뤄질 경우,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정서가 있다. 간사이 지역의 옛 자이바꾸 가문의 대다수가 다례 의식에 참가하는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전시를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사원과 신사에서는 숭배의 대상인 문화재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최소 한도의 조명 아래서 그들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 전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계획적으로 종교 문화재를 신비롭게 하는 것이 이들 문화재가 실제로 전시될 경우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의 국내법에서는 예술품 전시나 박물관이나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 예술품을 기증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예술품과 문화재는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민간 수집가들은 대중 전시로 인해 세무당국의 불필요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예술품을 보여주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불교사원을 포함한 일본 수집가들이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보여 주기 싫어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도난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2002년도에, 고베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 가코가와와의 한 불교사원에 절도범들이 침입해서 고려시대의 불화인 아미타여래상을 가지고 달아났다. 두 명의 한국인 절도범들이 한국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은 일본인들이 약탈한 한국의 문화재를 되찾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법정의 재판관에게 밝혔다. 일본의 한 불교사원의 에이세이 미키 주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의 사원이 6세기에 한국인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밝혔는데, 한국 전역의 대중과 미디어의 입장이 절도범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한국의 아미타 불화가 정당한 소유자인 일본 사원에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인 참가자가 일본에 있는 다수의 고려시대 불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일본 사원을 도둑질 했던 절도범들에 대한 동점심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방식에서 볼 때 일본에 소재하는 한국 문화재에 관한 주제는 한국인들 가운데서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상, 제 3자는 이러한 한-일 양국의 예술 문화재에 관한 논쟁이 독일-러시아 또는 러시아-헝가리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 간의 예술관련 논쟁 보다는 (한국인 위안부에 대해 일본이 충분히 사과를 했는지 여부와 같은) 한일 간의 역사에 기초한 논쟁에 보다 밀접한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두 가지 유럽의 사례에서 화해를 향한 진전을 볼 수 있었지만,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적으로는 북한에 전달된 2005년도 북관대첩비 반환 사례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에 관한 한-일간의 협의는 매우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대첩비 반환의 경우, 그것이 일본과의 화해를 증진한 것인지 아니면 민족적 자긍심에 기초한 남북한 간의 공감대를 강화해 주었는지에 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2004년 도쿄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예술 문화재가 어떻게 일본에 건너가게 되었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을 함께 다루었다. 열렬한 애국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몇 실재하는 한국문화재 사례를 가지고 일제의 만행에 관한 기록을 상쇄하려 애쓰는 것으로 보이는 학자들과 논쟁하였다. 이 회의에서, 유럽의 대표들은 그들이 경험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설명하여 토론을 확대해 주었다.

한일 간 예술 문화재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애국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히데요시 시대부터 일본은 한국의 예술과 예술문화재를 훔쳐 왔다. 식민통치 하에서 저명한 일본 정부

관료들은 물론 연구자와 고고학자들 까지도 선물로 쓰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일본으로 가져갔다.

2) 1965년 한일 정상화 협정에서 일본 민간 수집가들이 보유한 문화재의 한국반환을 촉진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불공정하게 대량으로 약탈된 한국 문화재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3) 국제법에 따라 일본은 비난 받아야 하며 수만 점의 한국 문화재가 한국으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그룹은 문화재의 이동에 관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문화재와 관련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혜택이 있었다. 일본이 예술품 약탈자라는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일본 관리와 고고학자들은 한국 문화를 우선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다. 한 학자는 "일부 약탈이 있었지만 식민 지배가 국가 문화재라는 개념을 보급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일제 통치 아래서 한국 내 고등교육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고 1945년 해방 무렵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고고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국가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거나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해에 있는 한국 내 국가문화재의 이양 작업은 매우 순조로웠다. 또 다른 학자는 "1945년에 일본인 국립박물관장이 1년 동안 한국에 남아 있기로 동의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원활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록 한국 국립박물관 내 5만점의 소장품 절반이 원인도 모르게 사라졌지만, 박물관이 일시적으로 부산으로 옮겨져야 했던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절도가 이뤄졌다. "이들 국가문화재의 망실로 인해 일본 고고학자들이 종종 누명을 쓰곤 하지만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또한 식민 통치 기간 중에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재를 일본으로 옮기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되어야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의 예술품은 '제국의 보물(Imperial treasures)'로서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쟁 중에 한국 문화재를 옮겼다면 미국의 공습으로 파괴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문화재를 한국에 보관했기에 수많은 한국의 국가문화재를 지켰다.

2) 1965년 한일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모진 감정을 가졌던 시기에 정상화 협정이 논의되었다. 한국보다 일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으며 힘든 거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특히 가시 같은 어업분야 논쟁으로 인해 당시 일본 사회에서 반한 감정이 치솟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57년 12월, 한국 해군에 체포된 수많은 일본 어부의 석방을 돕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 백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한국에 이양(hand over) (참고로, 일본 측은 '반환(re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한다는 일본 측 협상단의 약속을 일본의 언론에서 확인했을 때 "한국에 유약하다"는 이유로 일본 측 협상단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일 협상 초기부터 문화재는 교착된 양국 관계에서 볼모가 되어버렸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예술품만을 반환할 수 있다고 고집하였고 민간인들이 소유한 한국 예술품의 반환의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 없이 친선 도모 차원에서 한국으로 반환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약속을 고려하였다)

3) 일제 통치 하에서 한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논쟁이 없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예술품을 반환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30만 점의 한국 문화재가 한국에 반환되면 무엇이 성취될 수 있을까? 불확실한 성과를 위해 법적인 공방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일본 만이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한국 예술품에 대한 전시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한국에게 보다 이로울 것 같다. 외국에 소재한 한국 예술품에 관한 전시와 연구를 실시해서 한국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아마도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었던 굴욕적인 식민통치 기간에 대한 보상 받게 될 것이다. 요즈음 유럽 지역에서는 역사화해에 관한 전향적인 사례를 쉽게 접하게 되는 데, 2004년 심포지엄의 독일 참가자는 예술품에 관한 협상에서 종종 모진 교훈을 터득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하였다. 1992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후 얼마 되지 않아 러시아 언론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에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독일에서 다시 옮겨진 예술품들이 보관된 비밀 창고를 발견하였다. 침략자였던 독일은 추후 협상에서 희생자였던 러시아에게 방대한 분량의 약탈된 예술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알맞은 입장에 있게 되었다.

극소수의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약탈된 독일 예술품은 1992년 당시 러시아에 남아 있었다. 심포지엄의 독일 참가자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일방적인 반환을 주선하느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동 참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심각했던 것은 독일 정부가 헤이그 협약과 1992년 독-러 협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려 했다는 점이다. 초기에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행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예술품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협상이 느릿느릿 진행되면서 러시아인들 가운데 국가적 자긍심 문제가 들끓게 되고 나치 독일에게 피해를 입은 고통을 이유로 해서 러시아에게 수여된 전승기념품과 같이 약탈문화재를 러시아가 계속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매우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참고로, 제2차 대전으로 인해 약 2천 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사망했다.

앞서 언급한 독일 참가자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독일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했어야 하고, 문화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인들이 거래가 아닌 이해와 상호 협력의 기초 위에서 예술품을 나누어 가지려 했을 것이다. 이 참가자는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식민통치 기간 중에 일본으로 옮겨간 수많은 한국 예술품에 대한 한국의 반환 요구는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다. 유네스코 본부 법률 자문관은 도쿄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법상 반환(return)의 개념은 식민 통치 세력에 대한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식민통치 기간 중 탈취된 예술품이 복구될 수 있다. 식민통치관계가 존재하던 때에 예술품의 이양(transfer)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과거 식민지 국가는 문화유산에 대한 법률적인 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이 모두 국제법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주장하더라도 법률적인 수단이 매우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 참가자는 러시아와 문화적 연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애쓴 독일의 한 민간기업의 공헌에 대해 이야기했다. 2003년 5월, 페테르스부르크 창설 300주년을 기념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는 독일 기업인 루흐르가스(Ruhrgas) 사로부터 막대한 기부를 받아 러시아의 예술 걸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과거 러시아 왕궁의 호박 침실의 제막식을 공동으로 거행하였다.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호박이 조각된 판으로 치장한 벽으로 둘러싸인 이 방은 원래 1716년에 프러시아 왕이 피터 대왕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1941년 나치의 군대가 이 방을 약탈하고 모든 판을 제거해서 없애 버렸다. 1979년에 구 소비에트 연방이 20여년간 미화 800만 불을 들여 이 방의 복원을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었다. 루흐르가스가 미화 350 만 불을 제공해서 기념식에 맞춰 이 방을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피엔딩의 사례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비정부 주체들이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한다. 루흐르가스사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위의 기부를 통해 관용을 보임으로써 자국과 러시아 모두에서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손상되거나 약탈된 한국 예술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면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사례는 2004년 심포지엄에서 토론하지는 못하였지만, 원 소유자에게 약탈되었던 문화재의 반환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법률과 실제적 문제가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가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라틴어, 독어, 헝가리어로 쓰인 136권의 책자 컬렉션의 반환에 관한 것이다. 이 책자들은 2차 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헝가리의 북부도시인 사로스파타크(Sarospatak)의 종교대학에서 원인 모르게 약탈된 것이었는데, 50년이 지나서야 러시아의 니즈니 노프고로드(Nizhny Novgorod) 시립 도서관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독일에게 문화재 반환을 금지했던 러시아 법률에는 몰수한 문화재를 종교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 조항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60여 년 간 니즈니 노프고로드에서 책자들을 보관해 온 것에 대해 헝가리는 러시아에게 미화 44만 3천불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헝가리 의회에서도 헝가리에서 러시아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이의 반환을 약속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다. 이렇듯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조치는 사로스파타크와 니즈니 노프고로드의 도서관 관계자들의 교환방문으로 이어졌다. 일부는 구텐베르그가 직접 인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책자들을 원만히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인적 교류와 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논의 기간 중에 소비에트 점령지역의 많은 도서관에서 자행된 약탈과정에서 사로스파타크시의 나머지 책자 7만3천권이 구조된 것을 표트르 예르고프라는 한 소련 장교가 목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서 이야기 한 136권의 책자는 예르고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로스파타크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소비에트 군대가 유럽의 도서관들에서 약탈한 1,150만점의 책자 중에서 단지 450만점이 남았다. 예르고프는 사로스파타크 시를 방문했고, 그 곳 도서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가 1944년 사로스파타크 시에 있을 때 “이리도 조그만 마을에 이렇듯 커다란 도서관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였다. Yegorov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통렬하게 만드는 것은 당시에는 헝가리어와 소비에트 연방이 여전히 교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제 2차 대전 시 약 20만명의 헝가리 군인들이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사망했고 1956년에 소비에트가 세운 공산통치에 대한 폭동으로 수천 명의 헝가리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로스파타크시에 책자를 반환한 것은 본인이 아래에서 제시하는 전쟁 및 강점 시기에 약탈된 문화재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반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교훈에 추가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례이다.

1) 약탈 문화재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가장 완벽한 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실용적인 협상을 담고 있는 해결방안으로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약탈 문화재의 반환은 문화재의 이양으로부터 양자가 모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가장 성취율이 높다.

2) 유대인 대학살에 관련된 유대인 희생자에게 귀속하는 예술품의 몰수와 같이 전시 약탈이라는 점이 명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개인과는 대조되는) 모든 국가들이 주장하는 문화재의 출처의 문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할 것 같다.

3) 약탈 예술품의 반환으로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대중 전시와 국제적인 연구를 촉진하

는 예술품의 반환은 세계의 예술적인 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환이 정확한 역사의 이해보다는 국수주의자들의 열정에 의존하는 것으로써 (단독 소유권을 요구하는) 단일 민족의 청구권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인류 최다수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든 8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불화는 동북아시아 공통의 과거 문화에 대한 증거로 확실히 비쳐질 것이다.)

4) 제국주의는 민족주의 보다 예술품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다소 의심쩍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제국주의가 예술품을 보호하는 반면에 민족주의는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장품들을 감추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소유권의 주장, 강제몰수와 법적인 조치의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재에 관한 논쟁에 대한 개인적으로 착잡한 느낌을 전하고자 한다. 2004년 심포지엄으로, 러-일 전쟁 중에 일본 군대에 의해 한국에서 탈취되어 야스쿠니 신사 마당에 놓여 있었던 북관대첩비의 반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참가자 1인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듬해 10월에는 석판이 한국에 이양되었고 2006년 3월 1일 에는 기념비가 북한으로 옮겨졌다. 원래 예정되었던 6-7월 대신에 3월 1일에 미리 기념비가 옮겨졌다는 것을 전해 듣고서 본인은 강한 실망감을 느꼈다. 3월 1일은 1919년 항일운동을 경축하고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날이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날이기도 하다. 당초 이양이 계획된 6월 13-15일은 2000년에 있었던 김 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6월의 날짜는 한-일 양국의 국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목표인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좀 더 낙관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대첩비의 반환이 착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일본인 수집가들이 한국 조각상이나 도자기들을 수시로 한국의 박물관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하다. 한국의 박물관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부 예술품들을 특별한 장소에 비치하여 일본인 수집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분명히, 누군가 "때 묻은 문화재"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실용적, 비 국가적,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돌과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Tainted Treasures - Korean Art and Cultural Objects in Japan: Opportunities for New Thinking and Pragmatic Solutions

First of all, I wish to thank the Korean UNESCO committee, its staff, and most especially Secretary-General Samuel Lee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is symposium. I must confess that I have very few qualifications in the fields of art, art management, international law, or cultural policy. What I do bring to this discussion, however, is some experience in convening symposiums on unresolved historical issues in Northeast Asia. I am both honored and delighted that the present UNESCO symposium builds on a series of similar events which I helped convene in Tokyo in November 2004 under the title of "Tainted Treasures in search of solutions; Korean cultural objects in Japan and art-related disputes in postwar Europe."

In three days of discussions, participants from Korea, the US, Japan, Germany and Poland provided examples of both successful and unsuccessful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removed under duress during military occupation or colonial rule.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2004 symposium, however, perception gaps among the participants became apparent. The gaps indicated a need for a more thorough discussion of the problem of Korean cultural objects in Japan, not just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but among Koreans themselves.

Early during the symposium, a Korean participant raised the issue of Koryo Period Buddhist paintings (butsuga or pulhwa) stating that 80 percent of the surviving Korean paintings dating from this period (918 to 1392) were located in Japan. The participant seemed to imply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fact that only four of 134 extant Koryo paintings were in Korea and that 106 were in Japanese hands. This same participant complained that Koreans had been denied access to these paintings.

Another Korean participant in the symposium, however,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Koryo Buddhist paintings could easily have arrived in Japan before Hideyoshi invaded Korea and may actually point to a period of active cultural contact at a time when Koreans and Japanese believed in the same faith. This participant argued that it was not correct to assume that just because so many of the Korean paintings were in Japan that they must have arrived under abnormal circumstances. The participant stated that while it is true that the paintings were already in existence at the time of the Hideyoshi invasions, and it is also true that Hideyoshi's

armies looted Korea of its treasures, we cannot immediatel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ll of these 106 paintings are looted art or that they should be returned to Korea. Moreover since Buddhism was suppressed under the Chosun Dynasty (1392-1910) which followed Koryo, it is quite likely that Buddhist paintings were lost as a result of domestic suppression and not foreign invasion. As for the reluctance of Japanese owners of the paintings to share them with outsiders, Professor Yoko Hayashi, who also participated in the November 2004 symposium in Tokyo, raised two issues that might have some bearing on why Korean, or any other researchers are not given sufficient access to Korean objects in Japanese possession:

"There is a sense [in Japan] that the value of the artifact is reduced by frequent displays. Many of the old Zaibatsu families in the Kansai region have a preference for an annual viewing for a limited audience at a tea ceremony. In addition, temples and shrines limit public displays of their artifacts, with minimal lighting, as a way of demonstrating respect for objects of worship and stimulating public interest. This deliberate mystifying of religious objects is seen as an effective way of attracting large crowds when the objects are actually put on display..."

Professor Hayashi pointed to the fact that Japan lacks laws promoting either the display of art objects or the donation of such objects to public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or universities: "Art and artifacts that are not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are treated as normal property and taxed at the same rate. Thus, private collectors are reluctant to show their art lest public display attract unwanted attention of the Tax Agency."

An even more immediate reason why Japanese collectors, including Buddhist temples, may be reluctant to show the treasures in their possession is the possibility of theft. In 2002, a Buddhist temple in Kakogawa, a city to the west of Kobe, was broken into by thieves who made off with a portrait of the Amida Buddha, a Koryo Dynasty Buddhist painting. When the thieves, two Koreans, were apprehended in Korea they told the judge at their trial that they had been "on a mission to reclaim pieces of Korean history which had been appropriated by the Japanese." The head priest of the Japanese temple, Eisei Miki, was most distressed. He stated in an interview that his temple had been founded by a Korean monk in the sixth century. And yet, throughout Korea, public and media opinion favored the thieves. As of the present time, the Korean Amida Buddha painting has yet to be returned to its rightful owner, the Japanese temple.

It is evident from both the way in which the abovementioned Korean participant raised the issue of "so many Koryo Period paintings in Japan" and the outpouring of sympathy toward the thieves who robbed a Japanese temple, that among Koreans the subject of Korean cultural treasures in Japan triggers strong passions. In fact, an outsider might conclude that the art treasures controversy bears a closer resemblance to other history-based disputes between Japan

and Korea (such as whether or not Japan has sufficiently apologized to Korean comfort women) than to art-related disputes between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Russia or Russia and Hungary. In both of these latter two cases, we have seen progress toward reconciliation whereas in the case of Korea-Japan disagreements on cultural objects, with the exception of the return in October of 2005 of the Bugkwandaechobpi (the Bugkwan Victory Monument) from Yasukuni Shrine to South Korea for eventual transfer to North Korea, progress has been very slow. Even in the case of the return of the Victory Monument, one can ask if it has furthered reconciliation with Japan or promoted a shared sense of national pride with North Korea.

The 2004 Tokyo symposium brought together competing visions of how Korea's art treasures were transferred to Japan: proponents of a strongly passionate patriotic vision exchanged ideas with scholars who seem to be trying to balance the record of Japanese imperialist excesses with some examples of positive legacies for Korea. The European delegates sought to expand the debate by offering examples of both successful and unsuccessful return of looted art from their part of the world.

The patriotic view of the Korea-Japan art treasures dispute can be summed up in the following manner:

1) From the days of Hideyoshi, Japan had been stealing art and art treasures from Korea. Under colonial rule, prominent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even scholars and archeologists illegally took from Korea thousands of art objects back to Japan as gifts or to sell them at high prices.

2) Japan is unfairly refusing to return its huge treasure trove of looted Korean art in spite of promises made at the time of the 1965 Treaty of Normalization by Japanese negotiators to encourage the return to Korea held by Japanese private collectors

3) Japan must be condemn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tens of thousands of Korean art objects must be returned immediately to Korea, where they belong.

Another group of scholars, however, offered a competing vision of Korea-Japan relations in the area of cultural transfers:

1) Koreans have benefited from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Japanese imperialism with regard to cultural objects. Contrary to the generally held perception in Korea of Japan as a "looter of art," Japanese officials and archaeologists were the first to preserve Korean culture. As one scholar stated, "Despite plundering some of what they (the Japanese) encountered, the colonial overlords also spread the concept of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It is true that higher education was purposely neglected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and as a result in 1945 there were no Korean archaeologists, only Japanese. Koreans had been allowed only to photograph and catalogue their own national treasures. Still, the hand over that year of national treasures

in Korea went remarkably smoothly. As another scholar stated, "In 1945 the [Japanese] director of the [Korean] national museum agreed to remain in Korea for a year and there was good coordination to prevent looting in the wake of the war..." Although half of the 50,000 items in the Korean national museums disappeared under murky circumstances, the thefts occurred during the Korean War in 1951 when the museum had to be moved temporarily to Pusan. "Japanese archaeologists are often pilloried in Korea for this great loss of national heritage but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these losses. It should be added that at no time during the colonial period did the Japanese have any plans to remove the national collection of Korean art to Japan. The Korean collection of art and artifacts was considered an 'Imperial treasure' and preserving it was foremost in their minds." To have removed the Korean treasures in wartime would have meant exposing them to danger of destruction from US air raids. Ironically, the Japanese saved thousands of Korean national treasures by keeping them in Korea.

2) The 1965 Treaty of Normalization was negotiated at a time when both Koreans and Japanese had bitter feelings toward each other. Japan was in a stronger position than Korea and drove a hard bargain. We should remember, however, that anti-Korean feelings in Japan ran high at this time because of a particularly thorny fisheries dispute. In December 1957 when the Japanese press found out that their negotiators had made a secret promise to "hand over" (N.B. the Japanese side never used the word "return") several hundred Korean art treasures to Korea in order to create goodwill and effect the release of a number of Japanese fishermen arrested by the Korean navy, the negotiators were loudly criticized for being "soft on Korea." From the very beginning of Japan-ROK negotiations, cultural objects had become pawns in deadlocked state-to-state rel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nsisted it can only return Korean art in government hands; it considers the promises made in 1965 to encourage the return to Korea of objects owned by Japanese individuals as a gesture of good will and not legally binding.)

3) The fact that Koreans suffered under Japanese rule is not in dispute. The question must be asked, however, what would be gained by the return of large numbers of Korean art works now in Japanese hands. In the unlikely event that the 300,000 Korean art treasures said to be in Japan could be returned to Korea, what would be achieved?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ing the display of Korean art already in foreign countries (not only Japan) are likely to benefit Korea (and the world) far more than the initiation of legal battles the outcome of which would by no means be certain. Display and research in foreign countries of Korean art would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and would perhaps compensate Koreans for the humiliating period of colonial rule when they were unable to tell their own story.

While it is common these days to look to Europe for positive example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a German participant in the 2004 symposium lamented that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over art objects, the lessons to be learned are often bitter ones. In 1992, shortl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ussian journalists discovered secret depots containing art brought back by Soviet forces from Germany in the closing days of World War II. Since art looted by Nazi Germany had either been returned or lost, in subsequent negotiations with Russia, Germany, the former aggressor was in the ironic position of having to ask Russia, the former victim, to hand back vast quantities of looted art.

With the exception of a very few items the looted German art remains today where it was in 1992 -- in Russia. According to the German participant in the symposium, the German government made a serious error by trying to arrange a "one-sided return." Worse yet, in the view of this participant, the German government attempted to rely entirely on the Hague Convention and the 1992 treaty between Russia and Germany. Initially the Russians were willing to discuss the return of the art because they wanted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behavior of the former Soviet Union but as the negotiations dragged on, Russians experienced a surge in national pride and introduced a highly restrictive law which justified continued Russian possession of the looted art as trophy to which the Russians were entitled because of the sufferings that had been inflicted on them by Nazi Germany. Some 20 million Russians had died as a result of World War II.

In the words of the abovementioned German participant, "Given the context of war, Germany should have been more creative and flexible. Germany should have offered compensation in the cultural field. In return, the Russians would have been willing to part with some masterpieces, not as a trade, but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and mutual cooperation."

The participant stressed that the German claim to art looted by Soviet troops was legally correct, but in the end, it made no difference. Korean claims to thousands of items of Korean art transferred to Japan during colonial rule are also correc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 world-renown legal expert, who advises UNESCO in Paris offered the following comment at the Tokyo symposium: "The concept of 'return'[in international law] covers claims by former colonies against the colonizing power. Art and artifacts that were taken while the current nation was a colony can be recovered from the colonial power under this concept. Thus, even if the transfer was legal at the time when the colonial relationship existed, the former colony still has legal claim to the cultural property."But even though Germany and Korea can both argue that international law is on their side, the legal route may not be very effective.

The same German participant recalled the contribution of a private German company as being helpful in promoting cultural ties with Russia. In May 2003, on the occasion of the 3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St. Petersburg,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 and Chancellor Gerhard Schroeder of Germany jointly officiated at the unveiling of the Amber Room, a chamber of a former Russian royal palace restored by Russian artisans with the help of a large



German donation from Ruhrgas, a German company. The room, the walls of which were paneled from floor to ceiling with elaborately carved slabs of pure amber, was originally a gift of a Prussian king to Peter the Great in 1716. In 1941, Nazi troops looted the room, removing all the panels, which have been lost forever. In 1979, the former Soviet Union started restoration but some two decades and US\$8 million later it was still not finished. Ruhrgas provided US\$3.5 million so that the room could be restored in time for the celebrations. This example of a happy ending tends to reinforce the idea that non-state actors can make useful contributions to resolving historical problems. Ruhrgas imports energy from Russia; it stood to gain from good publicity both at home and in Russia for showing generosity. If alliance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companies could be harnessed to promote the restitution and/or return of damaged or looted Korean art, Japan-Korea relations as a whole might be improved.

Although the following example was not available for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2004 symposium it shows how the legal and practical can be combined to effect a transfer of looted art to its original owner. It concerns the return last year from Russia to Hungary of a collection of 136 volumes of books in Latin, German and Hungarian, some dating back to the 15th century. The books were removed from a religious college in the northern Hungarian city of Sarospatak in the closing days of World War II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They turned up half a century later in the library of the Russian city of Nizhny Novgorod.

The same Russian law that prevented the return of treasures to Germany contained a clause permitting the transfer of confiscated cultural objects to religious organizations. But the law alone would not have been enough. The Hungarians had to pay "storage fees" of US\$443,000 to the Russians for holding the books in Nizhny Novgorod for the past 60 years. The Hungarian parliament also had to pass a law promising to return any Russian cultural treasures should they be found. These face-saving gestures were accompanied by an exchange of visits of librarians between Sarospatak and Nizhny Novgorod.

These people-to-people contacts seem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paving the way for the smooth transfer of the priceless books, some possibly printed by Gutenberg himself. During discussions, it turned out that a certain Soviet captain, Pyotr Yegorov, had personally seen to it that Sarospatak's remaining collection of 73,000 books were saved from the looting that befell many other libraries in Soviet occupied areas. (The 136 books had been removed from Sarospatak prior to Yegorov's arrival in the city.) Of 11.5 million books seized from European libraries by Soviet forces, only 4.5 million have survived. Yegorov had visited Sarospatak and had been impressed by the library. "Such a small town and such a big library," Yegorov is remembered as having said while in Sarospatak in 1944. What makes this story of Yegorov's actions on behalf of culture so poignant is that Hungary and the Soviet Union were still in a state of war at the time. Some 200,000 Hungarian soldiers died on the Russian front in World War II and thousands of Hungarian lives were lost in the uprising of 1956 against Soviet-backed communist rule.

The return of books to Sarospatak is an ideal example to be added to the four lessons to be learned from successful cases of restitution of art lost during war and occupation, which I provide below:

1) The most legally airtight claim for the return of looted art will not be as effective as a solution that contains a pragmatic compromise. Return of looted art is best achieved when both parties stand to gain from the transfer.

2) With the exception of clear-cut cases of wartime looting, such as the confiscation of art treasures belonging to Jewish victims of the Holocaust, the provenance of cultural treasures claimed by entire nations (as opposed to individuals) is likely to be at best murky.

3) Returning looted art sh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conciliation. Restitution of art that promotes public display and international research of cultural heritage results in the sharing of the world's artistic patrimony and is therefore of far greater benefit to humankind than giving legal recognition to the claims no matter how good of a single ethnic group whose demands for sole ownership are likely to rest more on nationalist fervor tha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history.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Buddhist paintings transferred to Japan from Korea more than 800 years ago, no matter under what circumstances, surely ought to be seen as evidence of a shared Northeast Asian cultural past.)

4) Imperialism may not be as harmful to the preservation of art as nationalism. Whereas imperialism preserves art (albeit for questionable reasons), nationalism results in claims of ownership and threats of confiscation and legal action, forcing owners to keep their treasures out of sight and out of reach of researchers.

In closing, allow me to express my own personal mixed feelings about the dispute over cultural objects in Korea-Japan relations. At the 2004 symposium, a Korean participant called on Japan to "demonstrate good faith and foster goodwill" by returning the Bukgwandaecheopbi,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hich had been removed from Korea by Japanese troop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which still rested on the grounds of Yasukuni Shrine. In October of the following year, the stone slab was transferred to South Korea and on March 1, 2006, the monument was handed over to North Korea. When I heard that the date for transferring the monument had been moved ahead to March 1 instead of a day originally scheduled for mid-June I felt a strong sense of disappointment. March 1 celebrates the anti-Japanese demonstrations of 1919 and as such it unites Koreans but divides Koreans and Japanese. June 13-15, the originally designated dates for the transfer commemorate the visit to Pyongyang in 2000 by Kim Dae Jung. The June dates symbolize reconciliation, a goal that can be extended to include both Koreans and Japanese.

To close on a more optimistic note, while the return of the Victory Monument cannot help

but trigger mixed feelings, the occasional donation to museums in Korea of collections of Korean statuary or ceramics by private Japanese collectors, tends to proceed far more smoothly. Korean museums generally set aside a special place for such donations and give credit to the Japanese collectors. Clearly, if one is looking for a solution to the "tainted treasures" problem, a pragmatic, non-state, people-to-people approach offers an avenue to explore.

※ This is a draft; kindly refrain from attribution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

토 론 문  
Discussion Papers

## 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서헌제, SUH Hun-je

중앙대 법학연구소 소장

Director, The Legal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 1. 발표자가 제시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 가. 협정제목

협정의 제목이 문화재 ‘반환’ 내지 ‘원상회복’이 아닌 단순한 ‘문화협력’과 문화재의 ‘인도’로 표현함으로써 일본의 문화재반출 및 약탈에 대한 불법성 천명의 회피

#### 나. 협정의 소극성

소극적 문언규정 - 일본국민의 사유문화재를 한국 측에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단순히 권장하겠다는 합의 의사록의 표현

#### 다. 협정의 공백

반환대상품으로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국공유문화재와 사유문화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백상태

### 2. 1965년 문화재협정의 재고

#### 상황의 변화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성립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규제에 대한 중심적인 국제조약(90여 개국이 참여)

중요내용

- 수출증명서 또는 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은 문화재의 수출 금지,
- 다른 당사국의 박물관등으로부터 도난당한 문화재의 수입금지,
- 협약 발효이후 반입된 도난문화재에 대해 회수 및 반환조치

한 계

- 자기집행적 효력의 결여
- 협약의무의 비통일성
- 비소급효

**나.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UNIDROIT 협약**

도난당하거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통일적 규칙 마련

중요내용

- 도난 또는 불법유출된 문화재의 절대적 반환의무(선의취득 부인)
- 정당한 취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 자기집행적 효력한계
- 참여국이 극소수(중국가입, 한국과 일본 미가입)
- 비소급효

**다. 1970년대 이후 전개된 문화재반환사례**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의 성격- 한일문화재 반환의 완결편인가?**

**가. 문화재협정의 태생적 한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틀 내에서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절충에 의해 봉합 - 많은 문제들을 미해결의 장으로 남겨둠

**나. 한일문화재협정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유 문화재의 반환**

한일협정 당시 파악하지 못한 문화재 또는 당시 국공유가 아니므로 반환이 거절되었으나 추후 국공유로 된 문화재(小倉 collection 등)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또한 북한에 연원을 두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북일간 협상에서 반환청구가 예상됨. 따라서 이에 관한 남북간의 사전협력도 가능함.

**다. 사유문화재의 반환**

사유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해석은 일본정부의 적극적 의무부과로 해석되어야 함.

## 대안은 무엇인가

### 가. 협정의 개정 v. 새로운 협정체결 ?

1995년 한일문화재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은 오히려 협정의 개정 또는 새로운 협정체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1965년 협정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기존협약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음).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제안 「한일협정개정안」, 1996.7

### 나. 한일간 재교섭을 위한 원칙

ICOM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교섭의 기본틀 - 국제관습법 원칙으로 확립

- 모든 국가는 그 자신이나 기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소유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식민지 혹은 군사적 점령의 결과 문화재를 취득한 국가는 국제적 결속사항으로서 적어도 이전 식민지 또는 군사점령지의 주요 문화재 등을 반환·원상회복하는데 협력해야 될 특별한무를 진다.
- 문화재 취득시 특별한 사정, 예컨대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반대하는 기증자, 유증자의 의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다. 소송 기타 국제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

일본의 국내 법원에 적극적인 반환소송 제기

- 시효조항의 극복 (1995년 UNIDROIT 조약에 의하면 최대 50년)
- 선의취득의 극복 (일본은 1995년 UNIDROIT조약 미가입국으로서 자국민법에 따른 선의취득규정을 가지고 있음)
- 입증자료의 확보

### 라. 기타 방안

- 조건부 반환
- 교환
- 시간적 순서에 의한 공유방식
- 장기대여

## 3. 문화재반환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

### 가. 문화재보호법의 정비 -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이행

일본의 경우 2002년 가입.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가입.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신설

- 제2항 외국문화재의 국내반입관련규정 삭제
- 현재 포괄적인 이행규정 마련 중

### 나. 선의 취득규정의 정비

불법문화재 거래방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수단인 선의취득금지에 관한 국내법이 마련되지 않아

내외적인 비난을 받았음. 이에 정부는 2007년 4.11 법률 제8346호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켜 2007.7.27부터 시행예정에 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 변경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79조제4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문화재의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2.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
3. 비지정문화재 중 도난 또는 유실이 공중에게 공포된 문화재
4. 그 밖에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문화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법률은 외국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문화재의 선의취득에 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4호에 의해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Discussion]

##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정우택, CHUNG Woo-taek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Professor, Arts History, Dongguk University

林선생은 많은 한국 문화재가 왜 일본에 유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연구를 시작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선생은 제일 한국문화재의 유전 경위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의 방향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 번째는 제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역사성에 관한 것으로 소재지, 수집유래, 특별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반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일본에 유전하는 한국문화재는 약 30만점을 넘을 것이며, 북관대첩비, 몽유도원도, 고고 유물 등이 잘 알려진 유출 문화재이고, ‘한일협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井内氏 등 민간에 의한 한국 기증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적 문제로, 유네스코 조약에 가입한 일본으로서는 도난의 증거가 있으면 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문화재 공개를 저해하는 일본의 요인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상당한 분량을 이에 관한 내용에 할애하였다. 일본 내의 요인으로는, 공개 시는 물론 기증, 상속, 거래의 경우 세제상에 혜택이 거의 없다는 등 과세의 문제점, 그리고 미술관이 수익위주로 운영되면서 한국문화재 등 비인기 미술품의 전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개가 미진한 이유로는 일본인 특유의 소유유물에 대한 신비성 또는 희소성 부여를 위한 비공개성과 도난 등의 경비문제도 일조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일 한국문화재에 관한 제언으로, 이 연구의 주 목적임과 동시에 林선생의 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유물 공개를 위하여 면세, 감세 등 금전적 혜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세제 개정을 해야 하며, 개인 수집가의 유물 실태 파악을 위하여 민관 자본으로 위원회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를 기증하면 한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예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알아야 하며, 장기 대여 형식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林선생은 결론적으로 일본에 한국문화재가 얼마나 많은가를 일본인들조차 알 리가 없고 정부나 매스컴도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일본 정부는 문화재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林선생의 견해는 시의적절하며 구체적이며 객관적이어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 특히 林선생께서는 일본인들이 그동안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관심했던 한국문화재의 일본 내 실태와 반환의 역사 그리고 일반론이라 할 수 있지만 공개 촉진 방법 등을 대안 까지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林선생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세계 문제 등 일본 자국내의 법 체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몇 가지 함께 생각하여 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재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성격 규정과 현황 파악 그리고 반환 방법이다. 林선생도 지적하였지만 일반인은 모를지라도 많은 미술사·고고학 관련자 또는 관련분야 행정가들은 수많은 한국문화재가 일본 내에서 유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무조건 모두가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약탈-된 것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의 정서와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재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즉, 양국의 알려진 기록만을 통하여 볼 때 조선왕조가 정식으로 일본(인)에 건네준 불교문화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출 경로가 다양한 재일 한국문화재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일본의 정서로 볼 때 순전히 우리의 몫이나, 현재 국내의 영세한 문헌자료로는 이미 한계에 와 있어 일본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학 또는 교류사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연구자는 어느 정도 이고 차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지 묻고 싶다.

문화재의 조사 및 공개는 자체의 가치와 관계없이 순전히 소유자의 의지에 달려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 공개를 권유하기에 앞서 우선 갖추어야 할 것은 재일 한국문화재에 대한 한일 양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이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년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문화재 도난(절도)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그 대부분은 한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마다 어차피 불법적으로 약탈한 것을 다시 가져왔으니 나쁠 게 무엇이냐는 일반적 정서가 지배하였고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법적으로도 ‘선의의 취득’을 적용하여 한 점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일 것이라는 심증이 불법을 용인하는 비이성적인 정서로 변질된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불법을 용인하는 한국의 정서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그나마 호의적이던 소장자와 연구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소유자가 밝혀지는 한국문화재의 실물 조사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공개를 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가 이처럼 커진 이유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관습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재청과 일본 문화청의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소극적인 대응과 해당국에 있어서의 두 기관의 허약한 입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의 관계기관과 소장자들도 언제까지나 불법취득 문화재의 소유주라는 오명에 몸을 낮추고 있을 수 없다면 소유 유물을 적극 공개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수긍하는 긍정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林선생은 반환요구와 반환의 전 단계인 문화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민관협동의 위원회 또는 재단 설립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한국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한 기구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자본금, 운영비, 인적구성, 주체 및 소재지 등 선결하여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혹시 이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실질적인 반환에 관한 것으로, 한국에서 일본인 기증자에게 상당한 예우를 하며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林선생의 지적처럼 정작 일본 내에서는 그다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천자수 집품’의 국립박물관 기증에 작은 역할을 하였던 본인은 기증이 당사자로서는 삶의 의욕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큰 결심을 요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증의 의의와 효과를 널리 알려 조건 없는 기증 풍토를 조성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순전히 일본 국내의 사정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듯 문화재 기증과 반환은 조사, 공개보다도 훨씬 어려우며 더 큰 걸림들은 문화청을 포함한 관련 연구자들조차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내 한국문화재의 불법성 여부의 규명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환이라는 행위를 실천해야하는 것은 일본의 책무이다. 혹시 林선생께서는 한국문화재 기증에 대한 홍보 및 당위성을 일본 내에 인식시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다.

林선생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한 질문이었는지 걱정되지만 풀어야만 하는 한일간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보았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감정보다 냉정한 자세로 일본이 반환을 부정 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일본은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의 복원 및 바람직한 역사 서술을 위하여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 환수과정을 통해서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협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이 광 표 LEE Gwang-pyo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Staff Reporter, Dong-a Ilbo

약탈 문화재를 원 소유국이 반환받는 일은 대단히 지난한 작업이다. 그렇기에 2006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을 일본 도쿄대로부터 반환받은 일은 매우 뜻 깊은 성취임에 틀림없다. 이 큰 일을 일궈낸 환수위원회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과 그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논의점을 남겨 주었다.

첫째, 반환이나 기증이나의 문제다. 도쿄대는 협상 과정에서 서울대와 접촉해 반환이 아니라 기증 형식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에 돌려보냈다. 도쿄대가 반환이 아니라 기증 형식을 취한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그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약탈해간 사실을 회색시킴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가 기증 형식을 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 환수위의 활동으로 시작된 반환 운동인 만큼 환수위 및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반환이라는 명분을 고집하다보면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다. 환수위가 기증을 거부하고 법정으로 갔을 경우, 과연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 과정을 통해 일본의 문화재 약탈의 불법 행위와 반환의 당위성을 일본 및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환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이다. 명분은 드러낼 수 있지만 문화재 반환이라는 구체적인 실리는 얻어내기 어렵다. 이는 문화재 반환 협상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으로의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각 사안별로 반환 형식이라는 명분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한국 땅에 돌아오는 것 자체를 중시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양자를 모두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쪽에 역점을 둘 것인지를 좀더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조선왕조실록』 협상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해문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협상이 지나치게 빨리 끝난 점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혜문 스님을 비롯해 환수위 관계자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환수위가 공식 출범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비록 기증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약탈 문화재가 돌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쿄대는 우리 환수위의 공세를 피해가면서 예기치 못한 제안을 내놓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일단 기증이라고 해도 귀중한 오대산 사고본이 돌아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한일간의 문화재 반환 협상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셋째, 협상의 주체에 관한 문제다.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 민간이 나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과 공조한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혜문 스님께서는 “일본 측이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장차 조일(朝日)수교조약 체결시 북한이 실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북한 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인 오대산 사고에 있던 것을 북한이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역으로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넷째, 반환 이후 실록의 보관 장소 문제다. 현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환수위 측은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반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해서 불교계가 실록 소장주장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유 문화재의 보관 장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국민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 보관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불교계가 실록 소장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런 논란은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민간 협상단의 구성원이 좀더 폭넓어져야 한다. 또한 협상단 구성을 위한 사전 논의도 꼭 필요하다.

# APPENDICES

•

문화재 반환 관련 유네스코 협약

UNESCO Conventions Related to Return of Cultural Property

참가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7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

제16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는,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에 포함된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과학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명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국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고취시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자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여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1964년에 이러한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번 총회의 의제 19로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을 상정한 바,

제 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한 바,

1970년 11월 14일에 본 협약을 채택한다.

### 제 1조

본 협약에서 '문화재' 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 (가)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 (나)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 과 관련된 재산;
- (다)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 (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 (마)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같은 것으로 백년이상의 골동품;
- (바)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 (사)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 (1)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 (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 (2)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 (3)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 (4)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 (아)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 (자)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 (차)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 (카) 백 년 이상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 제 2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자의적 방법으로, 특히 현행 악습의 중지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한 복구를 하도록 협조함으로써 그러한 악습에 반대할 것을 약속한다.

## 제 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이다.

## 제 4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 (가) 관계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 (나) 국가 영역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 (다)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 (라)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온 문화재;
- (마)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 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 제 5조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문화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의 유자격 요원을 갖춘 국가기관



이 아직 없는 경우에, 각국의 적절한 바에 따라 그 영역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중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방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 규칙안의 작성에 기여하고;

(나)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 반출이 국가문화유산을 상당히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 최신으로 유지하고;

(다) 문화재의 보존과 일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 및 기술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실험실, 작업장 등)의 발전 또는 설립을 증진하고;

(라) 고고학적 발굴의 감독을 조직화하고, 특정 문화재를 '본래의' 장소에 보존함을 보장하고, 장래의 고고학적 탐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을 보호하고;

(마) (박물관 관리자, 수집가, 골동품 취급자 등)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윤리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바)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본 협약 규정의 지식을 전파하고;

(사) 문화재의 어떠한 품목이든 그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

## 제 6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 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한다. 그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 이러한 금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문화재를 반출 또는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시킨다.

## 제 7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 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 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나)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2)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

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 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 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8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상기 제 6조(나)항 및 제 7조(나)항에 규정된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약속한다.

### 제 9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약탈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입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의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물품의 반출이나 반입 및 국제교역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노력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당사국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10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교육, 홍보 및 경각심을 통하여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국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조건으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의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한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반출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문화재 구입자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나) 문화재의 가치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재 유산에 대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교류적인 수단을 통하여 여론으로 조성하고 앙양하도록 노력한다.

### 제 11조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 제 12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각기 그들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영역내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소유권의 양도를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방지하고;

(나) 당사국의 주무관청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법한 소유자에의 가능한 조기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 보장하고;

(다) 적법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또는 도난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즉,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 따라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출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 제 14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15조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래의 출처 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16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와 방식에 따라 총회에 제출되는 정기적 보고서에 이 분야에서 얻어진 경험의 내용과 함께, 당사국들이 채택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와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7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유네스코의 기술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정보와 교육;

(나)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

(다) 조정과 주선.

2. 유네스코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

3. 이 목적을 위하여 유네스코는 또한 관련 있는 비정부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유네스코는 자율적으로 본 협약 당사국에게 그 이행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5.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중에 있는 최소한 2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는 그들간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할 수 있다.

### 제 18조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4 개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 19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 20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집행이사회가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모든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2. 가입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1조

본 협약은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하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약은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 22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본 협약이 그들의 본국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전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들 지역에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이나 그 이전에 이들 지역의 통치기관 또는 기타 주무관청과 협의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협약이 적용될 지역을 통고하여야 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3조

1.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지는 지역을 대신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문서로 통고되고, 그 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24조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엔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 및 제 20조에 규정된 유네스코 비회원국에게 제 19조 및 제 20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제 22조 및 제 23조에 각각 규정된 통고와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5조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개정은 개정협약의 당사국으로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본 협약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신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의 개방이 종료된다.

### 제 26조

유엔헌장 제 102조에 의거 본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70년 11월 17일 파리에서 유네스코 제 16차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2부의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유네스코 문서국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유엔과 제 19조 및 제 20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고 1970년 11월 14일에 폐막된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Paris, 14 November 1970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12 October to 14 November 1970, at its sixteenth session,

Recalling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fourteenth session,

Considering that the interchange of cultural property among nations for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increases the knowledge of the civilization of Man, enriches the cultural life of all peoples and inspires mutual respect and appreciation among nations,

Considering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one of the basic elements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its true value can be appreciated only in relation to the fullest possible information regarding its origin, history and traditional setting,

Considering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gainst the dangers of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Considering that, to avert these dangers, it is essential for every State to become increasingly alive to the moral obligations to respect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that of all nations,

Considering that, as cultural institution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llections are built up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moral principles,

Considering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an obstacle to that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hich it is part of UNESCO's mission to promote

by recommending to interested Sta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is end,

Considering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an be effective only if organiz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mong State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adopted a Recommendation to this effect in 1964,

Having before It further proposals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 question which is on the agenda for the session as item 19,

Having decided, at its fifteen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Convention on the fourteenth day of November 1970.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 (a) Rare collections and specimens of fauna, flora, minerals and anatomy, and objects of palaeontological interest;
- (b) property relating to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litary and social history, to the life of national leaders, thinkers, scientists and artist and to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 (c) produc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cluding regular and clandestine) or of archaeological discoveries ;
- (d) elements of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ismembered;
- (e) antiquities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such as inscriptions, coins and engraved seals;
- (f)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 (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such as:

- (i) pictures,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entirely by hand on any support and in any material (excluding industrial designs and manu-factured articles decorated by hand);
- (ii) original works of statuary art and sculpture in any material;
- (iii)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
- (iv) original artistic assemblages and montages in any material;
- (h) rare manuscripts and incunabula, old books, documents and publications of special interest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literary, etc.) singly or in collections ;
- (i) postage, revenue and similar stamps, singly or in collections;
- (j) archives, including sound,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archives;
- (k) articles of furnitur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and old musical instruments.

## **Article 2**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property an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ans of protecting each country's cultural property against all the dangers resulting there from.

2. To this end,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oppose such practices with th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particularly by removing their causes, putting a stop to current practices, and by helping to make the necessary reparations.

## **Article 3**

The import,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effect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adopted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States Parties thereto, shall be illicit.

##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following categories forms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each State:

- (a) Cultural property created by the individual or collective genius of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and cultural property of importance to the State concerned crea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by foreign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resident within such territory;
- (b) cultural property found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 (c) cultural property acquired by archaeological, ethnological or natural science missions,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property;



- (d) cultural property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a freely agreed exchange;
- (e) cultural property received as a gift or purchased legally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property.

#### **Article 5**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property against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to set up within their territories one or more national services, where such services do not already exist,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with a qualified staff sufficient in number for the effective carrying out of the following functions:

(a)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draft laws and regulations designe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particularly prevention of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 establishing and keeping up to date, on the basis of a national inventory of protected property, a list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ultural property whose export would constitute an appreciable impoverish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c) promoting the development 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ratories, workshops . . . ) requir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property;

(d) organizing the supervis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ensuring the preservation 'in situation'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and protecting certain areas reserved for future archaeological research;

(e) establishing, for the benefit of those concerned (curators, collectors, antique dealers, etc.)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and taking steps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ose rules;

(f) taking educational measures to stimulate and develop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States, and spreading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g) seeing that appropriate publicity is given to the disappearance of any items of cultural property.

#### **Article 6**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introduce an appropriate certificate in which the exporting State would specify that the export of the cultural property in question is authorized. The certificate should accompany all items

of cultural property ex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b) to prohibit the exportation of cultural property from their territory unless accompanied by the above-mentioned export certificate;

(c) to publicize this prohibition by appropriate means, particularly among persons likely to export or import cultural property.

####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to prevent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from acquiring cultural property originating in another State Party which has been illegally exported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the States concerned. Whenever possible, to inform a State of origin Party to this Convention of an offer of such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that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b) (i) to prohibit the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tolen from a museum or a religious or secular public monument or similar institution in another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property is documented as appertaining to the inventory of that institution;

(ii)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of origin,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ver and return any such cultural property im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concerned, provided, however, that the requesting State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an innocent purchaser or to a person who has valid title to that property. Requests for recovery and return shall be made through diplomatic offices. The requesting Party shall furnish, at its expense, the documentation and other evidence necessary to establish its claim for recovery and return. The Parties shall impose no customs duties or other charges upon cultural property returned pursuant to this Article. All expenses incident to the return and delivery of the cultural property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 **Article 8**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impose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any person responsible for infringing the prohibitions referred to under Articles 6(b) and 7(b) above.

**Article 9**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ose cultural patrimony is in jeopardy from pillage of archaeological or ethnological materials may call upon other States Parties who are affected.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in these circumstances, to participate in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determine and to carry out the necessary concrete measures, including the control of exports and imports and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specific materials concerned. Pending agreement each State concerned shall take provisional measures to the extent feasible to prevent irremediable injury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requesting State.

**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 To restrict by education, information and vigilance,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nd,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oblige antique dealers, subject to pe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to maintain a register recording the origin of each item of cultural property, names and addresses of the supplier, description and price of each item sold and to inform the purchaser of the cultural property of the export prohibition to which such property may be subject;

(b) to endeavour by educational means to create and develop in the public mind a realization of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threat to the cultural heritage created by thef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illicit exports.

**Article 11**

The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der compulsi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occupation of a country by a foreign power shall be regarded as illicit.

**Article 1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respect the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n such territories.

**Article 13**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lso undertake, consistent with the laws of each State:

(a) To prevent by all appropriate means transfers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likely to

promote the illicit import or export of such property;

(b) to ensure that their competent services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c) to admit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items of cultural property brought by or on behalf of the rightful owners ;

(d) to recognize the indefeasible right of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classify and declare certain cultural property as inalienable which should therefore ipso facto not be exported, and to facilitate recovery of such property by the State concerned in cases where it has been exported.

#### **Article 14**

In order to prevent illicit export and to mee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should, as far as it is able, provide the national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heritage with an adequate budget and, if necessary, should set up a fund for this purpose.

#### **Article 15**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States Parties thereto from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among themselves or from continuing to implement agreements already concluded regarding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removed, whatever the reason, from its territory of origi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 **Article 16**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in their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n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give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which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 **Article 17**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may call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ticularly as regards:

- (a) Information and education;
- (b)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 (c) co-ordination and good offices.

2.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conduct research and publish studies on matters relevant to the illicit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3. To this en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also call on the co-operation of any compet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4.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make proposals to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for its implementation.

5. At the request of at least two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engaged in a dispute over its implementation, UNESCO may extend its good offices to reach a settlement between them.

**Article 18**

This Convention is drawn up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he four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Article 19**

1.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dures.

2.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0**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are invited to accede to it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Organization.

2.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rticle 2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but only with respect to those States which have

deposited their respective instruments on or before that date. It shall enter into force with respect to any other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 **Article 22**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at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not only to their metropolitan territories but also to all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y are responsible; they undertake to consult, if necessary, the governmen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se territories on or befo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with a view to secur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ose territories, and to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the territories to which it is applied, the notification to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 **Article 23**

1.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the Convention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any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denunciation shall be notified by an instrument in writing,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 **Article 24**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hall inform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States no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referred to in Article 20,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of the deposit of all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cce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19 and 20, and of the no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22 and 23 respectively.

#### **Article 25**

1. This Convention may be revis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y such revision shall, however, bind only the States which shall become Parties to the revising convention.

2. If the General Conference should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in whole

or in part,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new revising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rticle 26**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request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Done in Paris this seventeenth day of November 1970, in two authentic copies bearing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s 19 and 20 as well as to the United Nations.

##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유니드로아 협약")

1995년 6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이 협약 당사국들은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아 협약 초안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관 회의를 위해서 이탈리아 공화국의 초청으로 1995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로마에서 회동하여,

각 국민들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인류의 복지와 문명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전파를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교류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 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와 그것에 의해서 빈번이 야기되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이들 문화재와 국가, 부족, 토착민 또는 그들 집단의 문화유산과 그리고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이 특히 고고학적 유적지의 약탈과 그것에서 결과하는 귀중한 고고학적, 역사적 그리고 과학적 정보의 손실을 깊이 우려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이 협약 체결국들간에 약탈된 문화재는 원소유주에게 반환(restitution)하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원산지국으로 반환(return)하기 위한 공통적이고 최소한의 법률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공헌하기로 결심하고,

이 협약의 목적은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 return)을 촉진하는 것이며, 그리고 국가간에 반환을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보상금 같은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은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서 이 협약의 조문들을 채택하는 하는 것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거래를 승인 또는 합법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 협약 자체가 불법거래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약이 국제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한 적법한 역할을 유지하고 국가간의 문화교류를 유지하는 하나의 절차임을 인식하며,

이 협약의 이행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제의 개발과 활용, 고고학적 유적지의 물리적인 보호와 기술적인 협력등과 같은 다른 효과적인 조치들을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업적, 특히 유네스코의 불법거래에 관한 1970년 협약과 비정부 단체들의 윤리요강의 개발 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적용범위와 정의

### 제 1 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청구권에 적용된다.

가) 도난 문화재의 원소유주 반환(restitution);

나) 체약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화재 (이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라 한다)의 반출을 규정하는 법에 반해서 체약국의 영토에서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return).

### 제 2 조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문화재란 세속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고학, 선사학, 역가, 문학, 미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물건과 이 협약의 부록에 열거된 여러 범주중의 하나에 속하는 물건을 말한다.

## 제2장 도난 문화재의 반환

### 제 3 조

(1) 도난된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발굴되었거나 합법적으로 발굴된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문화재는, 발굴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합치하는 경우에 도난 문화재로 간주한다.

(3) 청구자가 문화재의 소재지와 그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한 때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여하간에 도난당한 때로부터 50년의 기간 이내에 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4) 그러나 동일한 무리로 인정된 고고학적 유적지를 형성하거나 공공 컬렉션에 속하는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은 청구자가 그 문화재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한 때로부터 3년 이외의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청구권이 75년의 기간 제한이나 그 국가의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더 오랜 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한 체약국의 기념물, 고고학적 유적지나 공공 컬렉션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을 다른 체약국에게 청구하는 것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전항에 언급한 선언은 이 협약을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하여야 한다.

(7)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 컬렉션”은 다음과 같은 기관이 소유하는 등록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무리로 인정된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가) 체약국

(나) 체약국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

(다) 체약국의 종교기관, 또는

(라) 근본적으로 문화적,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체약국에 설립되어 그 나라에서 공공 이익에 봉사한다고 인정된 기관이다.

(8) 그 밖에 또 체약국에서 전통적 또는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일부분으로서 부족이나 토착민 집단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종교적인 또는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 청구소송은 공공 컬렉션에 적용되는 기간 제한을 받아야 한다.

#### 제 4 조

(1) 도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받은 소유자는, 그 문화재가 도난된 것임을 몰랐거나 또는 온당하게 알고도 알지 못한 경우와 그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성실함을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반환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전항에 언급한 소유자의 보상권을 침해함이 없이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넘겨준 사람, 또는 그 전에 넘겨준 사람이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합치하면 그렇게 하기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청구권자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문화재를 회수할 청구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4) 소유자가 온당한 근실성을 행사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성격, 지불한 대가, 소유자가 합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난문화재 목록과 그리고 합당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와 문건을 조사해 보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소유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의당 취했어야 할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등 취득에 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상속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그 문화재를 취득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 제3장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 제 5 조

(1) 체약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서 다른 체약국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국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반출을 규정하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전시회, 연구 또는 복구의 목적으로 청원국가의 영토에서 일시적으로 반출되었다가 허가 조건대로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요청을 받은 국가의 법원이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국은 청원국가가 그의 영토에서 이전된 문화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의중 하나 이상을 중대하게 손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명령하여야한다.

(가) 문화재나 그 문화재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일;

(나) 복합 문화재의 통일성;

(다) 예를 들면 과학적 또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는 정보의 보존;

(라) 부족이나 토착민 집단이 전통적으로 또는 의례에 사용하는 문화재, 또는 그 문화재가 청원국가에게 심대한 문화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

(4) 제5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는 1항부터 3항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원을

받은 국가의 법원이나 관할권을 가진 당국에 도움이 되는 사실적 또는 법적인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별첨해야 한다.

(5) 반환의 청원은 청원국가가 문화재의 소재지와 그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여하간에 제5조 (2)항에 언급된 허가대로 반출된 때로부터 또는 그 문화재가 반환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50년의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1) 불법적으로 반출된 뒤에 그 문화재를 취득한 소유자는 취득할 당시에 그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온당하게 알려고 해도 몰랐을 경우에는 반환시에 청원국가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소유자가 그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는지를 몰랐거나 온당하게 알려고 해도 몰랐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원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반출 확인서의 부재 등을 포함한 취득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받은 소유자는 보상금 대신에 그리고 청원국가와의 합의 하에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 문화재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나) 대금을 받거나 무료로 청원국에 거주하며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소유자가 선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일.

(4) 제6조에 따라서 문화재를 반환하는 비용은 청원국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청원국이 부담해야 한다.

(5)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상속이나 아니면 무로로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

## 제 7 조

(1) 제7장의 규정은 다음의 각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반환이 요청된 당시에는 문화재의 반출은 이미 불법이 아니다; 또는

(나) 문화재를 창작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50년의 기간 이내에 반출된 문화재.

# 제4장 일반 규칙

## 제 8 조

(1) 제2장에 명시된 청원과 제3장에 명시된 청원은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가의 법원이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국과 그 밖에 또 체약국에서 효력이 있는 법률 하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분쟁을 어떤 법원이나 또는 다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나 중재에 회부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3)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 return) 소송이 다른 체약국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당국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도 그 문화재의 소재지 체약국가의 법률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를 포함한 잠정적인 법률에 호소할 수 있다.

### 제 9 조

(1)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체약국이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restitution, return)받기 위해서 이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제9조는 다른 체약국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당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을 인정하거나 강요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 제 10 조

(1) 제2장의 규정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에서 이 협약이 발효된 뒤에 도난당한 문화재에만 적용하는 데 다만:

- (가) 체약국에서 이 협약이 발효된 뒤에 그 국가의 영토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또는
- (나) 체약국에서 이 협약이 발효된 뒤에 그 국가에 소재하는 문화재.

(2) 제3장의 규정은 이 협약이 청원국가와 청원을 받은 국가에서 이 협약이 발효된 뒤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만 작용한다.

(3) 이 협약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거나, 제10조의 (1)항과 (2)항에서 제외된 어떤 성격의 불법적인 거래도 결코 합법화 하거나, 또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 return)을 위해서 이 협약의 테두리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국가와 개인의 권리를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최종규정

### 제 11 조

(1) 이 협약은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رو와 협약의 초안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관 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서명을 받기 위해 공개되며 또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1966년 6월 30일까지 로마에서 공개된다.

- (2) 이 협약은 서명을 한 국가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 협약은 서명을 받기 위해서 공개된 날로부터 서명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서 공개된다.
- (4)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러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문서를 공탁소에 기탁하여야 한다.

### 제 12 조

(1) 이 협약은 5개국이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의 공식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첫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다섯번째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의 공식문서가 기탁된 뒤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하는 각 국가들에게는 이 협약이 그 국가가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첫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

(1) 이 협약은 체약국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협약이 관장하는 사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인 증서는, 그 증서의 구속을 받는 국가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체약국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적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다른 체약국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을 맺은 국가들은 그 사본을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경제적인 통합기구나 지역단체의 회원인 체약국들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구나 단체의 내부 법률을 적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의 적용 범위가 내부 법률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이들 국가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 14 조**

(1) 체약국가가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두개 이상의 영토 단위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서명하거나 증서를 공탁할 때에 이 협약이 그 모든 영토 단위나 그 일부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그 선언은 언제나 다른 선언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은 공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또 이 협약이 미치는 영토의 단위를 분명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제14조에 의한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이 체약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만 미치고 전체의 영토 단위에는 미치지 않을 경우에 그 영토는:

(가) 제1조에 명시한 체약국의 영토는 그 국가의 한 영토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체약국이나 해당국가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당국은 그 국가의 한 영토 단위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당국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제8조 (1)항에 명시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은 문화재가 소재하는 그 국가의 영토 단위로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제8조 (3)항에 명시된 문화재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은 문화재가 소재하는 그 국가의 영토 단위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 제9조에 명시한 체약국은 그 국가의 영토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체약국가가 제14조 (1)항에 명시된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모든 영토 단위에 미치게 된다.

**제 15 조**

(1) 서명 당시에 이 협약하에서 한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뒤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선언과 선언의 추인은 서명으로 하여야 하고 또 공탁자에게 공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언은 당해 국가에서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공탁자가 이 협약이 발효한 뒤에 공식 통보를 받은 선언은 통보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첫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 조**

(1) 각 계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당시에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 국가가 반입한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 return) 청구는 다음의 절차중 하나나 그 이상에 따라서 그 국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선언한 국가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진 당국에 직접;
- (나) 그 국가가 지정해서 그런 청원이나 요구를 수납해서 그 국가의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는 당국에게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 당국자나 당국들을 통해서;
- (다) 외교 또는 영사 통로를 통해서.

(2) 각 계약국가는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의 반환(restitution, return)을 명령할 능력이 있는 법원이나 다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16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선언은 언제나 새로운 선언으로 수정할 수 있다.

(4) 제16조 (1), (2), (3)항의 규정은 계약국가 간에 존재하는 민사와 상업에 관한 법률적 원조에 관한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7 조

각 계약국가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공식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국가의 문화재 반출을 규제하는 법률에 관한 정보를 이 협약의 공식 언어중의 하나로 서면으로 공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유보권은 이 협약에 명백히 승인된 것 이외에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 제 19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한 날 뒤 공탁자에게 그런 취지의 증서를 기탁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폐기 문서를 공탁자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첫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이 폐기 문서에 길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폐기는 문서를 공탁자에 기탁한 뒤 정해진 만큼의 긴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3) 이러한 폐기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전에 제출된 문화재의 반환 (restitution, return)청구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 제 20 조

사법(私法)통일화 국제기구(유니드로와, Unidroit)의 장은 정규적으로 또는 5개 이상의 계약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협약의 실제적인 운용을 재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1 조

- (1) 이 협약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에 기탁한다.
- (2)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는:

(가) 이 협약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와 유니드로와의 의장에게 다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ㄱ) 새로운 서명국가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증서의 기탁과 기탁 일자;
- (ㄴ) 이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각 선언;
- (ㄷ) 선언의 철회;
- (ㄹ)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일자;
- (ㄹ) 제13조에 언급된 협정들;
- (ㅅ) 이 협약 폐기 문서의 기탁과 기탁 날자와 효력 발생 날자;

(나) 이 협약의 보증된 진본을 모든 서명 국가와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와 유네스코와의 의장에게 수교하여야 한다.

(다) 공탁자에게 관례인 다른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아래 서명한 특명전권대사들은 이 협약에 서명한다.

1995년 6월 24일 로마에서 서명한 유일한 원본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되었으며 이는 둘 다 동일하게 인증된 것이다.

♣ 부 록 ♣

- (가) 희귀 콜렉션과 동물, 식물, 광물과 해부학 표본과 고생물학적인 관심사가 되는 유물;
- (나) 과학, 기술, 군사,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예술가의 생애,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역사적 유품;
  - (다) (정규 또는 비밀을 포함한) 고고학적인 발굴의 산물;
  - (라) 해체된 예술적인 또는 역사적인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인 유적지의 일부분;
  - (마) 명문, 동전과 도장과 같이 100년 이상된 골동품;
  - (바) 민족학적인 관심사가 되는 물건;
  - (사) 다음과 같은 예술적인 관심사가 되는 문화재:
    - (ㄱ) 어떤 바탕이나 어떤 자료(산업 디자인과 손으로 장식한 제조품을 제외)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림과 덧상;
    - (ㄴ) 소재를 불문한 소상(塑像)과 조각 작품;
    - (ㄷ) 원본 조판(彫版), 판화와 석판화;
    - (ㄹ) 자료를 불문한 원본 예술적인 집합체와 몽따지;
  - (아) 유일본 또는 콜렉션 형태의 희귀 필사본과 고판본, 고서, 문서와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출판물 (역사, 예술, 과학, 문학등);
  - (자) 유일본 또는 콜렉션 형태의 우표와 수입인지와 그와 비슷한 스탬프;
  - (차) 음성, 사진과 영화를 포함하는 고문서;
  - (카) 100년 이상된 가구와 악기.

#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Rome, 24 June 1995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SSEMBLED in Rome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from 7 to 24 June 1995 for a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the draft Unidroi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CONVINCED of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of cultural exchanges for promoting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the dissemination of culture for the well-being of humanity and the progress of civilisation,

DEEPLY CONCERNED by the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and the irreparable damage frequently caused by it, both to these objects themselves and to the cultural heritage of national, tribal, indigenous or other communities, and also to the heritage of all peoples, and in particular by the pillage of archaeological sites and the resulting loss of irreplaceable archaeological, historic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DETERMINED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by taking the important step of establishing common, minimal legal rules for the restitution and return of cultural objects between Contracting State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interest of all,

EMPHASISING that this Convention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restitution and return of cultural objects, and that the provision of any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needed to effect restitution and return in some States, does not imply that such remedies should be adopted in other States,

AFFIRMING that the adop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future in no way confers any approval or legitimacy upon illegal transactions of whatever kind which may have taken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CONSCIOUS that this Convention will not by itself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s raised by illicit trade, but that it initiates a process that will enhance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nd maintain a proper role for legal trading and inter- State agreements for cultural exchanges,

ACKNOWLEDGING that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other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ng cultural object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gisters, the physical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and technical co-operation,

RECOGNISING the work of various bodi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particularly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illicit traffic and the development of codes of conduct in the private sector, HAVE AGREED as follows:

## **CHAPTER I - 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

### **Article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laim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for:

- (a) the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 (b)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removed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contrary to its law regulating the export of cultural obje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ultural objects are those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are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belong to one of the categories list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 **CHAPTER II -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 **Article 3**

- (1) The possessor of a cultural object which has been stolen shall return it.
-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cultural object which has been unlawfully excavated or lawfully excavated but unlawfully retained shall be considered stolen, when 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excavation took place.
- (3) Any claim for restitution shall be brought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claimant knew the location of the cultural object and the identity of its possessor, and in any case within a period of fifty years from the time of the theft.

(4) However, a claim for restitution of a cultural object forming an integral part of an identified monument or archaeological site, or belonging to a public collec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ime limitations other tha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claimant knew the location of the cultural object and the identity of its possesso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y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that a claim is subject to a time limitation of 75 years or such longer period as is provided in its law. A claim made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restitution of a cultural object displaced from a monument, archaeological site or public collection in a Contracting State making such a declaration shall also be subject to that time limitation.

(6) A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mad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7)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public collection," consists of a group of inventoried or otherwise identified cultural objects owned by:

- (a) a Contracting State
- (b) a regional or local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 (c) a religious institution in a Contracting State; or
- (d) an institution that is established for an essentially cultural, educational or scientific purpose in a Contracting State and is recognised in that State a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8) In addition, a claim for restitution of a sacred or communally important cultural object belonging to and used by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in a Contracting State as part of that community's traditional or ritual use, shall be subject to the time limitation applicable to public collections.

#### **Article 4**

(1) The possessor of a stolen cultural object required to return it shall be entitled, at the time of its restitution, to payment of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possessor neither knew n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that the object was stolen and can prove that it exercised due diligence when acquiring the object.

(2)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possessor to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reasonable efforts shall be made to have the person who transferred the cultural object to the possessor, or any prior transferor, pay the compensation where to do so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claim is brought.

(3) Payment of compensation to the possessor by the claimant, when this is required,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claimant to recover it from any other person.

(4) In determining whether the possessor exercised due diligence, regard shall be ha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including the character of the parties, the price paid, whether the

possessor consulted any reasonably accessible register of stolen cultural object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hich it could reasonably have obtained, and whether the possessor consulted accessible agencies or took any other step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taken in the circumstances.

(5) The possessor shall not be in a more favourable position than the person from whom it acquired the cultural object by inheritance or otherwise gratuitously.

### **CHAPTER III -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Article 5**

(1) A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o order the return of a cultural object illegal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2) A cultural object which has been temporari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for purposes such as exhibition, research or restoration, under a permit issued according to its law regulating its expor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cultural heritage and not return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at perm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llegally exported.

(3)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addressed shall order the return of an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 if the requesting State establishes that the removal of the object from its territory significantly impair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nterests:

- (a)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object or of its context;
- (b) the integrity of a complex object;
- (c) the preservation of information of, for example, a scientific or historical character;
- (d) the traditional or ritual use of the object by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or establishes that the object is of significant cultural importance for the requesting State.

(4) Any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ontain or be accompanied by such information of a factual or legal nature as may assist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address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to 3 have been met.

(5) Any request for return shall be brought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requesting State knew the location of the cultural object and the identity of its possessor, and in any case within a period of fifty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port 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object should have been returned under a permi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 **Article 6**

(1) The possessor of a cultural object who acquired the object after it was illegally exported shall be entitled, at the time of its return, to payment by the requesting State of fair and reason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possessor neither knew n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at the object had been illegally exported.

(2) In determining whether the possessor knew 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that the cultural object had been illegally exported, regard shall be ha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including the absence of an export certificate requir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State.

(3) Instead of compensation, and in agreement with the requesting State, the possessor required to return the cultural object to that State may decide:

(a) to retain ownership of the object; or

(b) to transfer ownership against payment or gratuitously to a person of its choice residing in the requesting State who provides the necessary guarantees.

(4) The cost of returning the cultural obje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Stat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at State to recover costs from any other person.

(5) The possessor shall not be in a more favourable position than the person from whom it acquired the cultural object by inheritance or otherwise gratuitously.

#### **Article 7**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where:

(a) the export of a cultural object is no longer illegal at the time at which the return is requested;  
or

(b) the object was exported during the lifetime of the person who created it or within a period of fifty years following the death of that person.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where a cultural object was made by a member or members of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for traditional or ritual use by that community and the object will be returned to that community.

### **Chapter IV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8**

(1) A claim under Chapter II and a request under Chapter III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cultural object is located, in

addition to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therwise having jurisdiction under the rules in force in Contracting States.

(2)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ny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r to arbitration.

(3) Resort may be had to the provisional, including protective, measures available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even when the claim for restitution or request for return of the object is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 **Article 9**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ntracting State from applying any rules more favourable to the restitution or the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an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2) This article shall not be interpreted as creating an obligation to recognise or enforce a decision of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at departs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Article 10**

(1) The provisions of Chapter II shall apply only in respect of a cultural object that is stolen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e State where the claim is brought, provided that:

(a) the object was stolen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or

(b) the object is located in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shall apply only in respect of a cultural object that is illegally exported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requesting State as well as the State where the request is brought.

(3) This Convention does not in any way legitimise any illegal transaction of whatever which has taken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is excluded under paragraphs (1) or (2) of this article, nor limit any right of a State or other person to make a claim under remedies available outside the framework of this Convention for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a cultural object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 **Chapter V - Final Provisions**

### **Article 11**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at the concluding meeting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the draft Unidroi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wi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t Rome until June 1996.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which have signed it.

(3) This Convention is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which are not signatory States as from the date it is open for signature.

(4)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s subject to the deposit of a formal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epositary.

### **Article 12**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 **Article 13**

(1) This Convention does not affect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by which any Contracting State is legally bound and which contains provisions on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unless a contrary declaration is made by the States bound by such instrument.

(2) Any Contracting State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ne or more Contracting State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States which have concluded such an agreement shall transmit a copy to the depositary.

(3) In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Contracting States which are Members of organisations of economic integration or regional bodies may declare that they will apply the internal rules of these organisations or bodies and will not therefore apply as between these State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which coincides with that of those rules.

### **Article 14**

(1) If a Contracting State has two or more territorial units, whether or not possessing different systems of law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it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its territorial units or only to one or more of them, and may substitute for its declaration another declaration at any time.

(2) These declarations are to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and are to state expressly the territorial units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3) If, by virtue of a declaration under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extends to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territorial units of a Contracting State the reference to:

(a)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Article 1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territory of a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b)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r of the State addressed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a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c)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cultural object is located in Article 8 (1)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d)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in Article 8 (3)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law of the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and

(e) a Contracting State in Article 9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a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4) If a Contracting State makes no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territorial units of that State.

## **Article 15**

(1) Declarations made under this Convention at the time of signature are subject to confirmation upon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2) Declarations and confirmations of declarations are to be in writing and to be formally notified to the depositary.

(3) A declaration shall take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its deposit with the depositary.

(4) Any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under this Convention may withdraw it at any time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notification.

## **Article 16**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claims for the restitution, or requests for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brought by a State under Article 8 may be submitted to it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 (a) directly to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declaring State;
- (b) through an authority or authorities designated by that State to receive such claims or requests and to forward them to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State;
- (c) through diplomatic or consular channels.

(2) Each Contracting State may also designate the courts or other authorities competent to order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cultural objects under the provisions of Chapters II and III.

(3) Declarations made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may be modified at any time by a new declaration.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o 3 of this article do not affec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n judicial assistance in respect of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that may exist between Contracting States.

## **Article 17**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 later than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provide the depositary with written information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export of its cultural objects. This information shall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as appropriate.

## **Article 18**

No reservations are permitted except those expressly authorised in this Convention.

## **Article 19**

(1) This Convention may be denounced by any State Party, at any time after the date on which it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epositary.

(2) A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with the depositary. Where a longer period for the denunciation to take effect is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uch longer period after its deposit with the depositary.

(3) Notwithstanding such a denunciation, this Convention shall nevertheless apply to a claim for restitution or a request for return of a cultural object submitte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 **Article 20**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may at regular intervals, or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five Contracting States, convene a special committee in order to review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 **Article 21**

(1) This Conven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2)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shall:

(a)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is Convention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of:

(i) each new signature or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gether with the date thereof;

(ii) each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ii) the withdrawal of any declaration;

(iv)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v)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3;

(vi)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the date of its deposit and the date on which it takes effect;

(b)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ignatory States, to all States acceding to the Convention and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c)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customary for depositar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Rome,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ive,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

## Annex

- (a) Rare collections and specimens of fauna, flora, minerals and anatomy, and objects of palaeontological interest;
- (b) property relating to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litary and social history, to the life of national leaders, thinkers, scientists and artists and to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 (c) produc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cluding regular and clandestine) or of archaeological discoveries;
- (d) elements of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ismembered;
- (e) antiquities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such as inscriptions, coins and engraved seals;
- (f)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 (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such as:
  - (i) pictures,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entirely by hand on any support and in any material (excluding industrial designs and manufactured articles decorated by hand);
  - (ii) original works of statuary art and sculpture in any material;
  - (iii)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 (iv) original artistic assemblages and montages in any material;
- (h) rare manuscripts and incunabula, old books, documents and publications of special interest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literary, etc.) singly or in collections;
- (i) postage, revenue and similar stamps, singly or in collections;
- (j) archives, including sound,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archives;
- (k) articles of furnitur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and old musical instruments.

## List of Participants

### PARTICIPANTS – Presenters

#### **Dr. Amareswar Galla**

Professor of Museum Studies  
School of English, Media Studies and Art  
History,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Brisbane 4072  
Qld Australia  
P. 61 7 3365 2590  
F. 61 7 3365 2799  
E-mail. a.galla@uq.edu.au  
<http://www.emsah.uq.edu.au>

#### **Mr. Andrew Horvat**

Visiting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Tokyo Keizai University, Tokyo Japan  
Apartment Jun C-2, 2-8-2 Mejiro,  
Toshima-ku  
Tokyo 171-0031, Japan  
T. 81-3-3971-5139  
F. 81-3-3971-5139  
E-mail. AndHorvat@aol.com

#### **Ms. Yoko Hayashi**

Art Historian, Art Management Consultant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program of  
Arts Management,  
Shobi University, Saitama Japan  
President, Artwoods Co., Ltd.  
P. 81-3-5394-5070  
F. 81-3-5394-5083  
E-mail. Artwoods2001@yahoo.co.jp

#### **Dr. CHO Boo Keun**

Executive Director,  
Korea Publishing Foundation  
Woobang Apartment 1-305  
Guro1Dong GuroGu , Seoul, Korea  
T. 81-2-732-1434  
E-mail. boocho2447@hanmail.net

#### **Rev. Hyemoon**

Bongseonsa Temple  
Executive Officer, Committee for the  
Restitution of Joseon Wangjo Sillok  
Mobile. 011-667-1645  
E-mail. doorskyj@hanmail.net

### PARTICIPANTS – Discussants

#### **Ms. CHAE Soohee**

Secretar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Dr. CHUNG Woo-taek**

Professor, Arts History, Dongguk University  
Pil-Dong 3Ga 26, Joong-Gu, Seoul  
T. 82-2-2260-3156  
E-mail. dalma4040@hanmail.net

#### **Mr. LEE Gwang-pyo**

Staff Reporter, Arts & Entertainment Desk,  
Dong-a Ilbo  
139 Sejongno, Jongno-Gu,  
Seoul 110-715, Korea  
T. 82-2-2020-0326  
F. 82-2-2020-1279  
E-mail. kplee@donga.com

#### **Dr. SUH Hun-je**

Director, The Legal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Heuksuk-Dong 221, Dongjak-Gu, Seoul  
T. 82-2-820-5435  
F. 82-2-816-6760  
E-mail. suhhunje@cau.ac.kr

#### **Dr. SUNG Jae-ho**

Professor,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Mido Apartment 210-1404, Daechi2-Dong,

Gangnam-Gu, Seoul  
E-mail. [jhsung@skku.ac.kr](mailto:jhsung@skku.ac.kr)

**PARTICIPANTS – Moderators**

**Mr. Andrew Horvat**

Visiting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Tokyo Keizai University, Tokyo Japan  
Apartment Jun C-2, 2-8-2 Mejiro,  
Toshima-ku  
Tokyo 171-0031, Japan  
T. 81-3-3971-5139  
F. 81-3-3971-5139  
E-mail. AndHorvat@aol.com

**Dr. LEE Keun-gwan**

Professor, Law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illim-dong, Gwanak-gu  
Seoul Korea  
P. 82-2-880-7555  
E-mail. [kglee60@snu.ac.kr](mailto:kglee60@snu.ac.k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Dr. Samuel LEE  
Secretary-General  
P.O.Box Central 64 Seoul, Korea  
T. 82-2-755-5668  
F. 82-2-755-7477

Mr. KIM Kwi-bae  
Head of Culture Team  
E-mail. [kbkim@unesco.or.kr](mailto:kbkim@unesco.or.kr)

Ms. SHIN Mia  
Programme Specialist, Culture Team  
E-mail. [mashin@unesco.or.kr](mailto:mashin@unesco.or.kr)

Ms. LEE Sunkyung  
Programme Specialist, Culture Team  
E-mail. [sklee@unesco.or.kr](mailto:sklee@unesco.or.kr)  
Ms. LIM Heejung  
Intern, Culture Team  
E-mail. [culture@unesco.or.kr](mailto:culture@unesco.or.k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r. YOU Hong-June**

Administrator  
139, Seonsa-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302-701  
T. 82-42-481-4731  
F. 82-42-481-4759

**Mr. LEE Chun-geun**

Director General  
Cultural Heritage Policy Bureau

**Mr. CHOI Jong-deok**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Cultural Heritage Policy Bureau

**Ms. CHAE Soohee**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Cultural Heritage Policy Bureau

**Mr. Ryu, Jae-Geol**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Cultural Heritage Policy Bureau